결재로

둘리스타 청색·녹 |을 인중 |도 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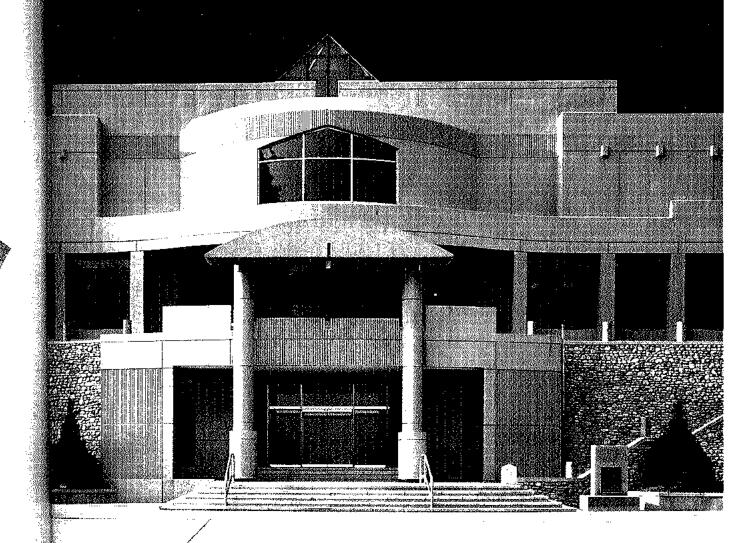
소화성 하고,무

1다.

|로폴은 |용으로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서울 라-26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나)급인가. ■ 우편번호/137-070
 ■ 1990년 5월 15일 발행. ■ 통권 253 호. ■ 발행/대한건축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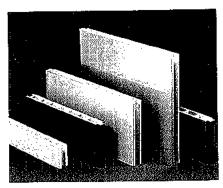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년 제조원 이**학 주 시호** 1917 여의 또동 43 * 191 대성암동 45-25 * 17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요。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랑성/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점성/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관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외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건축물의 외벽•캠막이•계단•모로변의 차율박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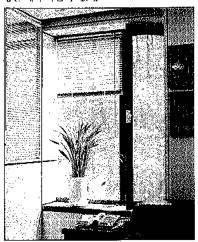


최고의 오피스빌딩을 만드는 명품창문,이건창호

시공사례 - 오피스빌딩편

빌딩 외관이 달라지고 있다. 독특한 조형미를 갖춘 빌딩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빌딩에서 받는 느낌과 기업의 이미지를 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까?

건물의 외관을 결정하는 주요소인 창문.
'그룹 조형' 빌딩은 독특한 창문 디자인으로
외관에 변화를 준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존 창문의 틀을 과감히 벗어난 자유로운 디자인-설계하는 사람의 요구 그대로를 수용해내는 이건창호의 가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이건창호는 최적의 사무공간을 만듭니다.

다자인·소재에서/이건창호는 형태와 크기, 소재 결합이 자유롭고 알루마늄칼라와 목재의 종류가 다양해 건물 분위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몸·보온에서/이건창호는 이중유리와 일뻐성높은 가스켓, 열전도를 차단하는 신소재를 사용하고 컴퓨터 정밀 설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온도 유지기능이 뛰어나고 특히 바깥 소음의 차단 효과가 큽니다.

환기·개폐에서/이건창호는 개폐방식이 독특하여 환기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에서/이건창호의 이중유리와 8개의 잠금장치, 독특한 기어시스템은 사무실 문단속을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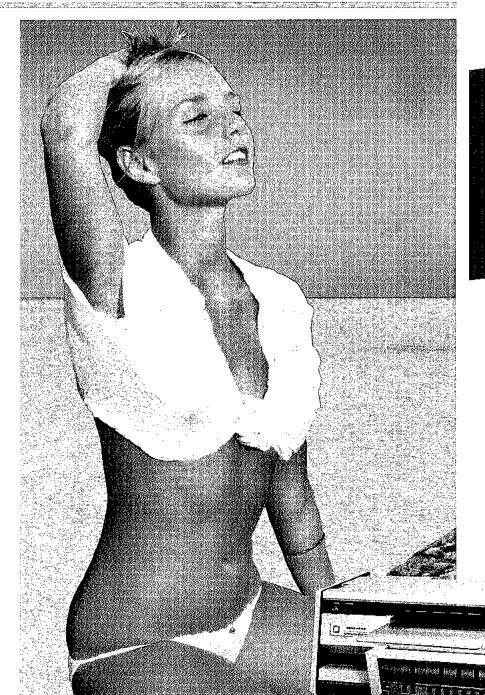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 강남구 논청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 540 − 2071 ~9 FAX : 540 − 2080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KOO YOUNG COPYLAND



좋은 설계를 위하여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정사전 복사기 pd 11801 인모나이에서 어러분을 해방사었습니다!!

Convenience Engineering
Copier with Automatic Original Print Separator

AMMONIA가 필요없는,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MECHANISM의 결정체입니다.

COPINICA PD 118은 종전의 AMMONIA를 사용하던 복사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System인 1R, 2B,P 현상방식과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건식 청사진복사기 입니다. (복사폭 680mm)

지금까지 청사진 복사기의 최대 난점이었던 AMMONIA 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스위치 한 동작으로서 작동되는 COPINICA PD 118은 어느 업종, 어느 장소에서나 효율적인 작업을 약속합니다.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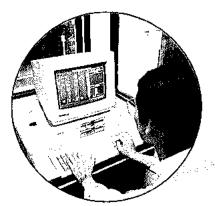
- Diazoprinter
- ◆ PD Copier
 ◆ Film Sepia
 ◆ Tracing Paper
- Sensitive Paper (blue, black line, PD, etc.)
- ALL REPROGRAPHICS EQUIPMENTS



(株) 亀 映

The Pros in Reprographics in Korea.

- 본사·공장 :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608-2☎ (032) 92-4167/8 서울영업소 : ☎ (02) 266-7416~8 울산영업소☎ (0522) 5-6620, 33-5045
- 부산영업소☎ (051) 556-8118~9 마산영업소☎ (0551) 41-3851,44-3851 대리점: 강서삼중비즈니스 (02) 694-8194 부산현대측기 (051) 245-8566/7
- 강동 구영상사 (02)419-0050 수원승화상사 (0331)36-3798 인천삼일사 (032)862-3961 대전신영상사 (042)626-5230 대한건축사협회 신용조합 (우신교역)(02)588-0772~3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 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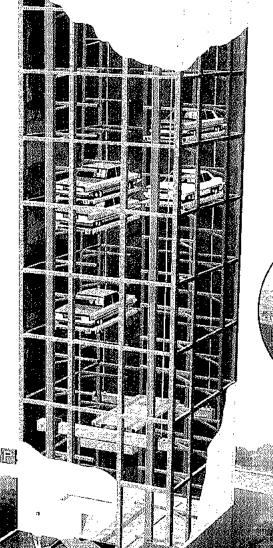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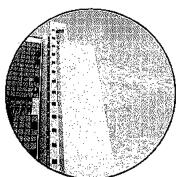
YOP-A연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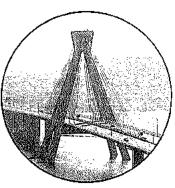
YOP-M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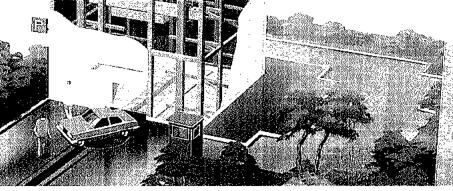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 서울 · 올림픽대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 1. 경제성~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 3. 신속성 상승속도 60m/min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 4. 간편성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조

7.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위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1기 40대
- ●부산고속터미날: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타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4기 200대



상담전화: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창간 15년의 결정! 정통의 주택전문지에서 폐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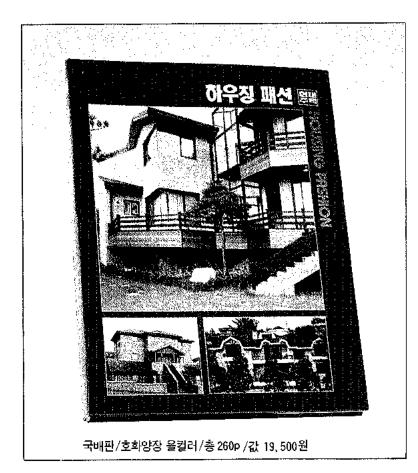
하우징 백선 HOUSING FASHION

세계 각국의 주택외관에서 부터 주택의 부위별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1천여컷의 다양한 스타일을 총망라한 주택패션 컬러화보집

1. 세계의 주택스타일 동남아 · 북미 · 유럽지역의 빼어난 주택들 2. 주택와관 비태일 대문 · 담장 · 자붕 · 창 · 차고 · 계단 3. 관병에리어 현관 · 거실 침실 · 욕실 · 주방 · 식당 · 아이들방 · 서재 · 취미실 4. 인테리어 조명 · 커튼 · 바닥재 · 쿠션 · 벽난로 · 수납가구 5. 실내외 조경공간 테라스 · 발코니 · 온실 · 정원 6. 목별부록 (명단) • 주택전문설계사무소 • 주문주택 전문시공업체 • 주택관련 인테리어업체 • 우수 건축 자재업체 • 우수중소주택 건설업체 • 주택건설 지정업체

월간 현대주택 정기구독자에게는 정가의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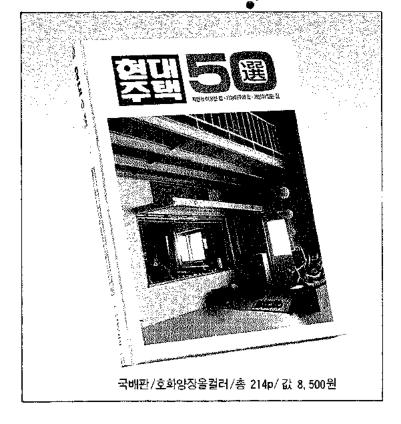




2U74 504

주택의 모든 유형이 다채롭게 담겨있는 컬러화보집, 미적이며 기능적인 집들의 내·외관과 관련 설계사무소 명단수록

1. 자연을 이용한 집 전원주택 · 별장주택 · 태양열주택 2. 개능위주의 집 복합주택 · 다세대주택 · 조합주택 · 증개 축주택 · 기능이 편리한 집 · 취락구조개선주택 · 조립식주택 복토주택 · 공동주택 3.개성이 있는집 건축가의 집 · 분위기 있는집 · 돌집 · 담장이 낮은집 · 외부와의 연계가 잘된집 경사지주택 · 오픈 스페이스가 풍부한집 부록 내집 짓기의모든것 · 설계사무소 명단



쮦**주택문화사**

서울·영등포구 당산동 4가 92 - 5 영등포 우체국 사서함 150 FAX,679 - 6145 TEL 671 - 3201~4/633 - 9256, 1106

실실 / 20세기 실진후문과 정조

입슈피넬시스템



Pre-coated Steel을 특수접착방식으로 라미네이팅한 Sandwich type 강도높은 조립식 단열 파넬입니다.

🜃 인슈파넴의 특장점

- ●에너지절감 / 붉은 벽돌의 21, 5째나 되는 단열효과로 병·난방비를 30%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선택 / 건물의 용도 기능 및 수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고하며 다양한 마**감 / 매우 가벼우면서도 장도가 강하고 난연성이 확월하며 간단한 기초 구조물로도 고강도의 견교성이 유지됩니다.
- ●공사기간 단축 / 완전조립식 구조로 신속한 설치, 해제 및 이동이 가능하므로 시공기간 및 시공미를 단축시킵니다.
- ◆완벽한 방수·방습 / 습기흡수율이 제로(0) 왜 가까운 EPS 를 사용 접합부분의 기밀이 절저하므로 완벽한 방습·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 고도의 위생성 / 표면에 독수처리가 되어 변하지 않고, 즉, 발레가 서살킬 수 없으며, 물세척도 가능하여 항상 깨끗합니다.

조 인슈파넬의 용도

- 1.일반 산업용 공장 일반공장 기계공업공장 점유방작공장 식풍공장 정밀기계공장
- 2.크린룸

무균·무진실, 항온향습실, 병원 수술실, 의약품 제소실, 전자반노체당장.

- 3.냉동·냉장 저온 창고
- 냉동, 냉장 급속 동결실, 방얼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식품저장교.
- 4.주거시설 | 조립식주택, 기숙자, 군막자, 별장및 방가로.
- 5.공공시설

화물터미널 채육관, 지하철역시, 강당, 복지시설, 각종 집회 시설, 위락시설.

6.기타시설

사무실 내무파티션, 도어, 상점, 이동사무설, 토근판매대, 장비초소, 화장실, 각종 건축물, 부속시설.



TEL (02) 745-0687, 의왕 (0336) 32-4635~ 6 서울자부소 : 서울지 강남군 역산동 773-6연합인슈빌딩 T E L : (02)555-6891, FAX:553-1651



신문지 한장에 자동차 한대씩

국내최초로 초고속형, 텐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피킹 개발/

10년전 국내에 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삼성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의 주차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1. 공간이용의 극대화 실현
- 2. 다양한기종
- 3. 컴퓨터로 제어되는 완전주차
- 4. 국내최고의 기술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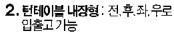
▩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싣는 상자(Cage) 를 매달아 순환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방식입니다.

1. 초고속형: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취급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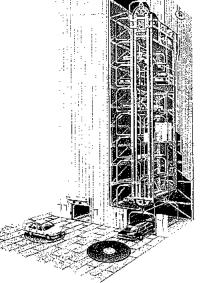
- 수직순환방식: 초고속형 턴테이블 내장형,이중탑재형 ◎엘리베이터방식 ◎다층순환방식 ◎ 2.3단주차설비
- e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3.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2대주차

▩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고속으로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방식 (횡식,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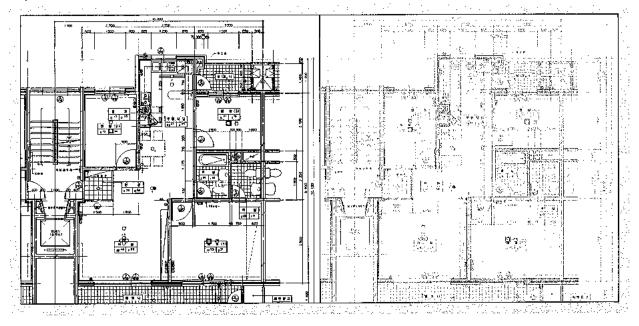






《XEROX 2510도면》

〈청사진 도면〉



ORE BHEN SURJE WALD?

도면복사의 혁신, **XEROX** 2510탄생



선명한 화질 도면의 세일한 부분까지도 선명하게 재현하고, 보통용지는 물론 트레이싱지 필름지등 어떠한 용지에도 선명한 복사가 가능하며, 변퇴색이 없어 서류보관이 용이합니다.

▲ ★ 까지 복사기능 기존 청사진기에서는 불기능한 A ★ 까지 복사가 가능해 어떤 크기의 도면도 단 1 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저가실현 기존의 대형도면복사기와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저가를 실현하였습니다.

간편한 조작 별도의 Operator 없이 초보자도 긴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버튼식 조작 및 사용시 냄새가 전혀 없고 주변이 청결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실현했습니다.

컴팩트타입 사무실 어디에 놓아도 알맞는 컴펙트 타입설계 이므로 최소공간에서 최대의 작업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별도로 복사실을 마련해야 하는 무답이 없습니다.

완벽한 서비스 7인의 제록스 맨으로 불리는 코리아 제목스만의 A/S시스템은 신속하고 완벽한 서비스로 항상 최상의 기기상태를 공 보장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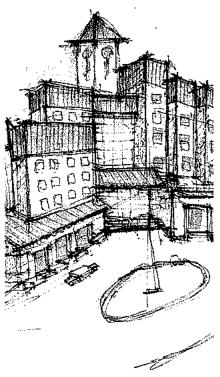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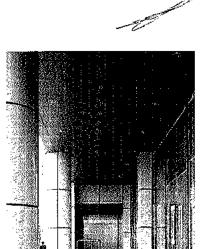
코리아 제록스(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0 TEL 777 - 5739

전국영업망

■서울지역 중앙: 2**75 - 8691 영동: 542 - 5643**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영남지역 ■호남자역 중부: 754 - 7821 서부: 809 - 4637 강남: 542 - 5643 인천: 426 - 9337 순천: 51 - 3870 대전: 253 - 5571 부산: 463 - 2531 출산: 72 - 3331 광주: 365 - 3500 종로: 737 - 6896 동부: 232 - 1551 남부: 782 - 1442 수원: 45 - 1821 강릉: 44 - 3870 청주: 55 - 5860 마산: 55 - 7845 대구: 423 - 0117 전주: 72 - 0551





차례/1990년 5월호 통권 제253호

press		경주 S씨주택/孫明文	12 15
		기독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金正澈	
		뽀빠이하우스/李珏杓	18
		별다래유치원/宋光燮	20
		신성극장/金永澤	22
		대광정밀 사옥/公日坤+文炳國	24
1,323 /	<u> </u>	J관광호텔 계획안/閔承烈	26
	KA KA	'90전국건축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에 대한 재고/金基斗	28
		천지는 말이 없는데 눈물은 두만강 되어/金榮洙	30
191	6.09 0.70	 한국의 전통건축(25) 朝鮮시대의 建築/張慶浩	32
		독일의 현대건축을 찾아서/閔相忠	42
		亭子建築의 實例와 현대적인 응용요소/張順鏞	52
		미관지구 제도와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宋昇鎬	58
		三角造形의 中國銀行/韓東洙	70
		共同社會를 위한 建築/李廷根	74
	[5]	1990년 3월분 도서신고현황	84
		주차장법충 개정법령률	86
5.Age			89
			94



표지 : 기독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

(설계 : 金正澈)

發 行 人: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 員 長:禹南龍

長 員:董政根,朴舒弘,呉澤吉,金基哲, 趙聖烈,崔正一,鄭正治,朴研心, 崔命喆,金周喆

編輯:出版事業部

發 行 處: 大韓建築士協會

主 所: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 話: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 (02) 586-8823 **텔렉스** : KIRAA 33550

登錄番號:서울 라-26(月刊)

登 録:1967年 3月 23日 U.D.C.:69/72(054-2):0612(519)

印刷人:全允珪/洗文精版社

Publisher: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eun/ Park, Seo-Hong/ Oh, Teuk-kil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 Park, Yeon-Sim/ Choi, Myung-

Chul/ Kim, Joo-Cheo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137-071

TEL:(02) 581-5711, 581-5712-4 FAX:(02) 586-8823

TLX:KIRAA 33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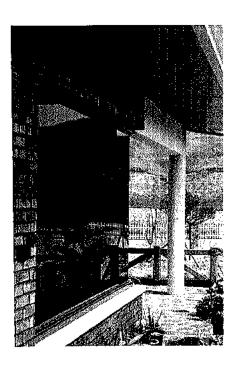
Registered Number: Seoul Ra- 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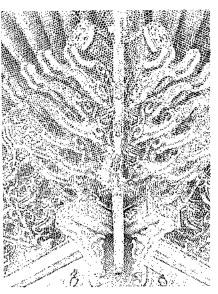
U.D.C.:69172(054-2):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53, MAY 1990

WORKS	Kyeongju S's Residence/Son, Myung–Moon Centennial Hall Martyry/Kim, Jung–Choul Popey House/Lee, Kak–Pyo Byuldare Kindgarten/Song, Kwang–Sub Sinsung Theater/Kim, Young–Taek	12 15 18 20 22
·····	Daekwang Precision Co. Bldg./Kong, Il-Kon & Moon, Byung-Kook	2 4
MY SKETCH	J Hotel Site Plan/Min, Seung-Ryeol	26
FEATURE	/Kim, Kee-Doo	28
FSSAY	/Kim, Young-Soo	30
REPORT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Chang, Kyung-Ho Moden Architecture in West Germany/Min, Sang-Choong	32 42
	Example of Arbour Architecture and It's Contemperary Application/	
	Chang, Soon-Yong	52
	An Inquiry on the System of Esthetic Area Management/	
	Song, Seoung-Ho	58
	Triangularity Moulding Bank/Han, Dong-Soo	70
	Community Architecture / Lec, Jeong-Ke un	74
MATERIALS		84
NEWLY ADMI	TTED MEMBER	89
KIRA NEWS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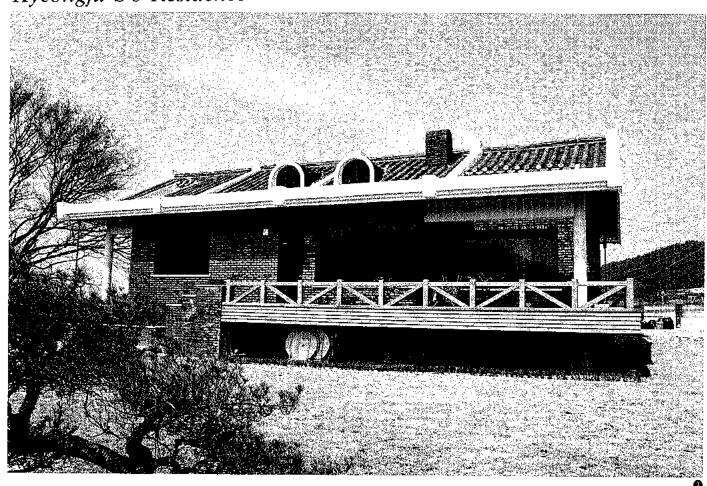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단인회룡169—25, 333—641 · 관약분소 / 간약단신림룡1422—17, 882—6744 · 도룡분소 / 도룡무수유룡191—13, 903 =3425 · 양등포문소 /영등포구당산3기81, 634=2143 · 강동분소 / 강동구성대통317=4, 484=6840 · 강서분소 / 강서구화목동1105=05, 604=7168 · 상동분소 / 상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 문소 / 동대문무진설등101-7, 923-6313 · 종로분소 / 종로구청잔동201-1,738 - 5416 · 마포분소 / 마포부 장산동275-1,333-5251 ·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소 / 송무로 2 기 49 - 11,279 - 1415 +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교171729-22, 712-7647 ·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587 - 9760 · 윤병분소 / 은평푸녹변동79-32, 352-6720 · 종작분소 / 동작구시당동206 - 6, 815 - 30 26 ㆍ 장남분소 / 강남구문활동241-6,511-8515 ·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등1049-79,992-8076 · 양천분소 / 양천부신청동1027-9, 646-7172 · 중광분소 / 중량구목 1 등 171-12,973-4921 · 성복분 소 / 성복구참전5가(10, 923-440] · 구로분소 / 구로구구표동86-4, 853-4084 정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7)(부산대파트대)(051) 246-6284~5 図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롱3 가! ~8, (053) 72-5|41~2;%인천작활시지부 / 인천직할사님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년호) 협망주직활시지부 / 광주직활시북구 중흥동 894-16, (062) 521-0025 (FAX)521-0026 [양대전 직합시지부 / 대전시중구대통통437-1, (842) 254-2441 整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8331) 47-6129~30 · 작합분소 / 경기도수원서매산로37·11-8, (8331)42-6690, 7072 · 안양분소 / 안양 지안양동719-9, (0343)2-2698, 2-0012 + 부천문소 / 부천시원미동74-6, (032)63-3144 + 정남분소 / 성남시신용동5512, (0342)2-5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부의정부동182, (0351)2-1083 + 송만분 소 / 송탄자신장동21, (0333개-6153 - 고양분소 / 고양군원양음주교리38블릭16로토, (0344)63-8902 - 구리분소 / 구리시수백동409-2, (0346)63-8112 - 이천분소 / 이천군이철음중리216-8, (0336)2-3 396 • 광망분소 / 광명시철산동464 - 7, 682 - 2875 • 안산분소 / 안산시고간동531 - 5, 82 - 2820 **강원도지부 / 강원도훈천시옥천동39 - 5, (0361)54 - 2442** • 원주분소 / 원주시월산동206, (0371)42 - 3257 • 강동 분소 / 강릉시장대통6-14 (0391)2-2262 · 속초분소 / 속초시동명동466-33, (6392)33-5081 · 삼최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소 / 영월군영원읍영흥1리960-12, (0372)43-2659 📾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116-168. (0431) 56-2752, 53-7342 ·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통673-1, (0441)2-3062 · 제천분소 / 제천시의림동8-8. (0443)2-6253 · 옥천문소 / 옥천군옥천유산 양통222-206. (0475)32-9997顯**출천남도지부/충천남도대전시중구대총통473-1, (042)256-4088**・천안분소 / 천안시문화통160-1, 4. (0417)2·4551・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유오관리239-1, (0451)32-28 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유동남리703-1, (0463)2-2217 ·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 ~ 3367 國전리북도지부 / 전리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별당508), (0652) 87-6007 · 이리분 소 / 여러시당중동(2/77-22, (0653)52-33)의 - 군신원소 / 군산시중앙로1가10-11, (0654)2-4069 - 남원문소 / 남원시화장동106-2, (0671)2-6002 **짧전리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장동780-23(추선회관) (**0 62) 364~7567, 33—9944 -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1동1, (0631) 43—3348 - 순천분소 / 순천사장천동51—11(0661) 3—2457 - 여주분소 / 여주사관문동441번지, (0662 :64—7023 鹽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합시중구 <mark>동인동(17)285번지, (053)425-4904</mark> · 포항분소 / 포항시축모등43-22, (0562)44-6029 · 경주본소 / 경주시노동동42-2(0561)3-9638 · 구메분소 / 구메시원평동964-361, (0546)52-635**)** · 안동분소 / 안동 지서부동157-4, 10571)2-5703ㆍ감천분소 / 김취사평화동280-1, (0547)2-2541ㆍ영주분소 / 영주시효천2동295-2, (0572)2-4566ㆍ점촌분소 / 점존시중앙동280-3, (0581)2-2706ㆍ상주분소 / 상주사 남성봉36-23. (0582)2-4306 **应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몽3가(3-47. (0551)46-4530~1** · 울산분호 / 울산지남구선정동585-6. (0522)74-8836 · 전주분호 / 원주시본성동7-20. (0591/2 · 6403, · 용무분소 / 충무시서호통163-18, (0557)43-3577, 2-7420 · 김해분소 / 김해서부원통24B-10L, (0594)2-6114 · 말양분소 / 말양분소 / 말양군삼분통184-108, (0527)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유동양리274 -3, (059812-7090·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22-4, (0523)84-3050·기재분소/기재분소절읍고현대139-2, (0558)84-3432, 2-3372·삼천포분소 /삼천포시동급동91-6(0593)2-3591殿제 주도지부 / 제주도제주시2도(통1289-6,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299-6, (064) 32-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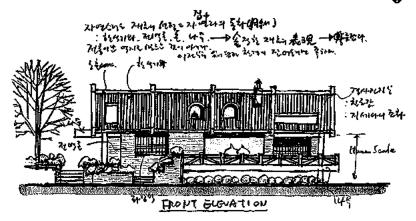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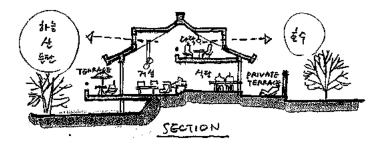
경주 S씨주택

Kyeongju S's Residence



대지위치/경북 경주시 천린동 940 대지면적/659.0mi 건축면적/129.9㎡ 연면적/153.0㎡ 1층-122,9㎡ 지하층-30,1㎡ 외장재료/지붕-한식기와 엇기 외벽一전벽돌치장쌓기 설계담당/임일중





孫明文/건축사사무소 건 · 환 Designed by Son, Myung-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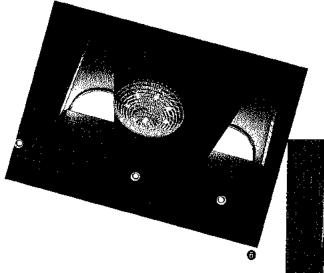
테라스

보문호수가 바라보이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언덕 위에 본 주택은 자리잡고 있다.

외장재료는 전통을 고집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보는 한식기와, 전벽돌, 목재들이 자연스럽게 선정되었고 외부형태는 지세의 흐름에 순화되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40평 한도내의 단순한 평면이 이루어졌고 2세대 공존의 생활구조를 만족시켰으며, 주변 질서에 순환되고 친근감을 주는 요소로씨 경사진 지붕형태가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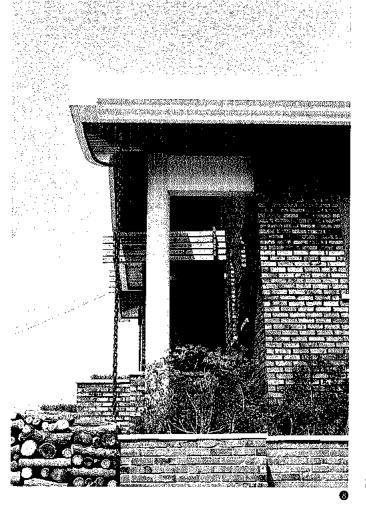
외부공간의 자연 요소를 깊숙히 끌어들여 쾌적한 내부공간이 되도록 구성하였으나 구석 구석에는 도면과 상관없이 처리된 아쉬움이 남는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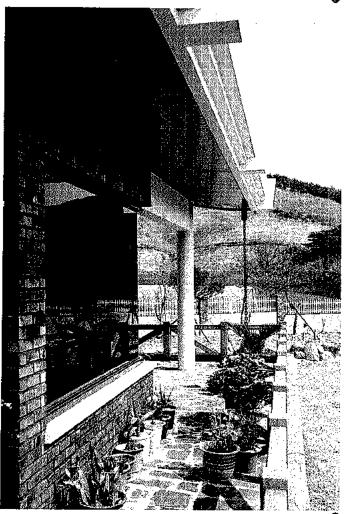
- 전경
- 🕢 개념도
- ❸ 주출입구측 상세
- ❻ 거실(천창이 보인다)
- 🚯 1층 평면도



- 전창상세
- 🚱 거실
- 🔞 남서측 외벽상세
- ⑤ 테라스 부분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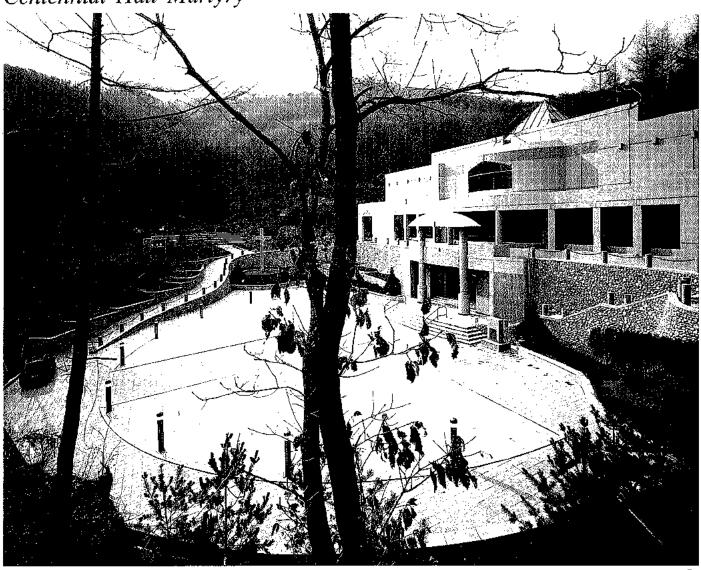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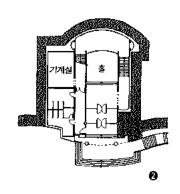


기독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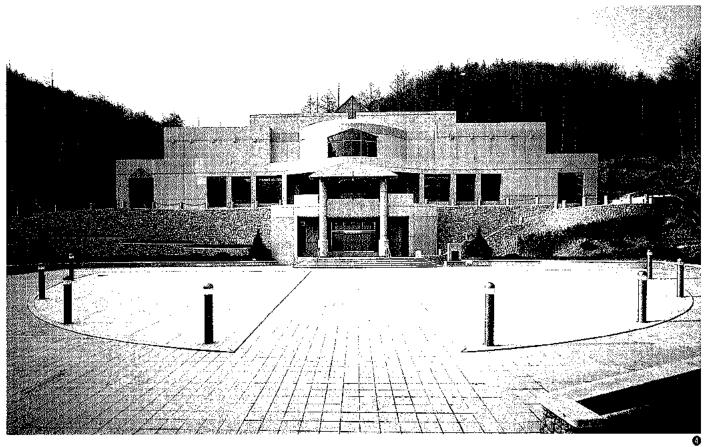
Centennial Hall Martyry



대지위치/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대지면적/55,070㎡ 건축면적/546㎡ 연면적/1,107㎡ 규모/지상 3층 구조/칠근콘크리트조 외장/제물치장콘크리트



金正澈/(주)정립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ung-Choul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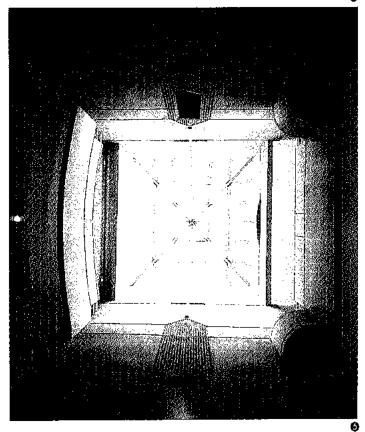
본 건물이 자리잡은 지역은 용인군내로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산지지형을 이룬 곳이며, 약 1.5km의 골짜기 진입로를 지나야 비로 소 건물이 보이게 되는 조용한 산속이다. 이 지역은 종교적 의미에 서의 장소성을 가진 곳은 아니며 과정적 공간으로서의 진입로가 형 성되어 기념관 건립지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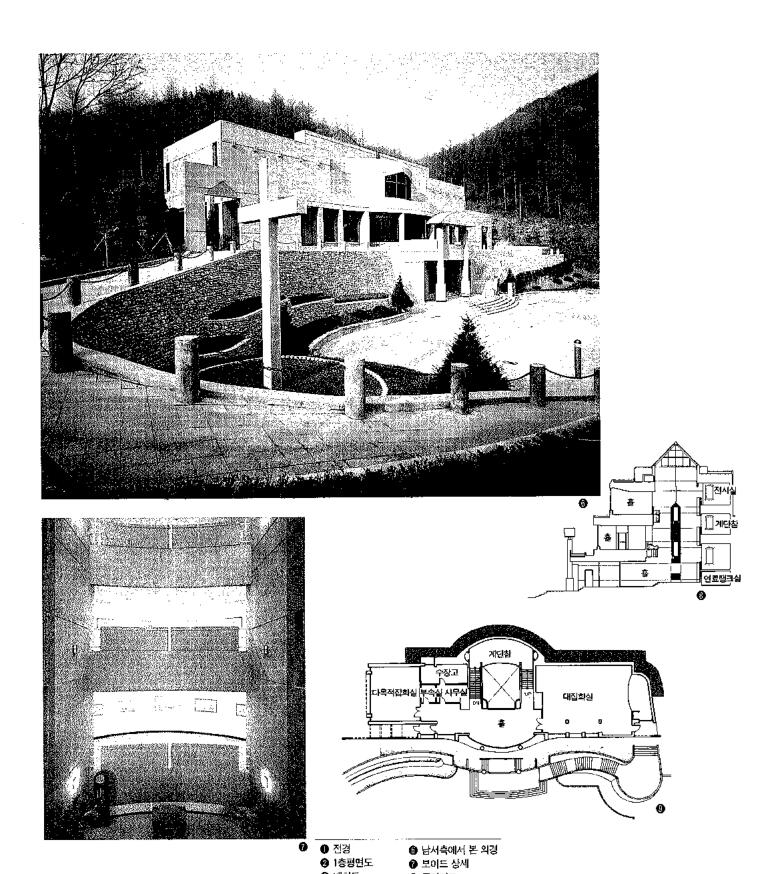
건축계획의 기본목표는 순교신앙의 전승이라는 건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장소가 종교적 잠재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건축적으로 집약적 표현성(기념성·상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건축계획의 주제는 漸增의 개념과 구심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점증의 개념은 공간적 표현으로는 완만한 오름경사를 갖는 진입 로를 전이공간으로 하여 전면광장에 이르게 되며 이어지는 축선상 의 입구를 통해 진입하게 되면 건물의 중심부인 홀이 나타나며, 이 공간은 수직적 형태를 가지면서 위로 열려 하늘과 만나게 된다.

또한 이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건물내부의 모든 공간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하나로 엮는 구심적 공간이 되며 단순한형태로 비어있게 함으로써 순교정신을 암시적으로 표현토록 하였다. 조형에서의 점증개념은 자연적으로 마무리된 기단에서부터 상부의 천창에 이르는 과정은 모든 벽면이 뒤물림과 점차 작아지면서하나로 모아짐으로 표현하였으며, 각 위상에서의 벽면이 순교자 기념관으로서의 어떤 매세지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배치도

● 정면전경

중앙부 천창상세

❸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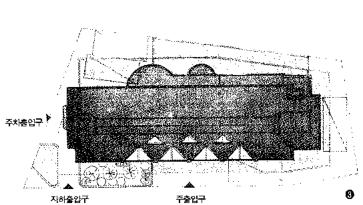
②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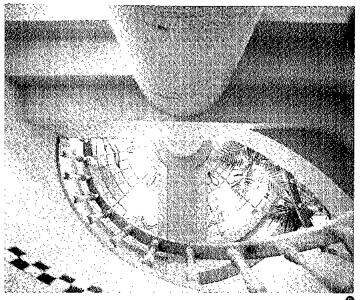
뽀빠이 하우스 Popey House

대지위치/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79~4 지역 \cdot 지구/일반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440.8㎡ 건축면적/200.21㎡ 건폐율/45.4% 연면적/1,087.19㎡ 용적률/111.35% 규모/저하 2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아스팔트 슁글, 적벽돌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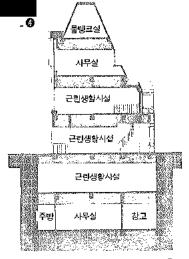
李珏杓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ak-P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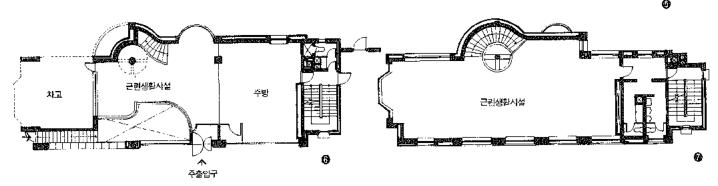
- 나선형 계단측 양각상세
- 🚯 배치도
- ❷ 1충 실내전경
- ❷ 단면도
- 📵 1층평면도
- 2층평면도



□설계소묘

점은이들의 꿈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동숭동 대학로의 동숭아트센타 결목에 위치한 본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소별당으로서 주변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주변건물과 찰이우러지는 형태적 조형미나, 공간적 특성을 살리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면도로로부터의 진입을 위해 도로면에 배치시켰으며, 지하로의 진입 또한 전면도로부터 내부 Sunken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1층내부 계단상부에 Top Light 를 설치하여 내부로 빛을 도입하여 심리적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공간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외부형태는 장방형의 주 Mass 에 좌우의 Mass 와 후면의 작은 등근 Mass 가 조화되어 Volume 감과 정북방향으로서 사선제한으로 인해 급경사의 지붕면과 4개의 큰 돌출창과 3개의 작은 돌출창을 가미함으로써,지붕의 단조로움을 탈하였고 전면의 파사드를 친근감있는 재료와 색상을 사용하여 도시미관의 시각적 이미지에 조화시킴으로써 장래 지역발전의 일익이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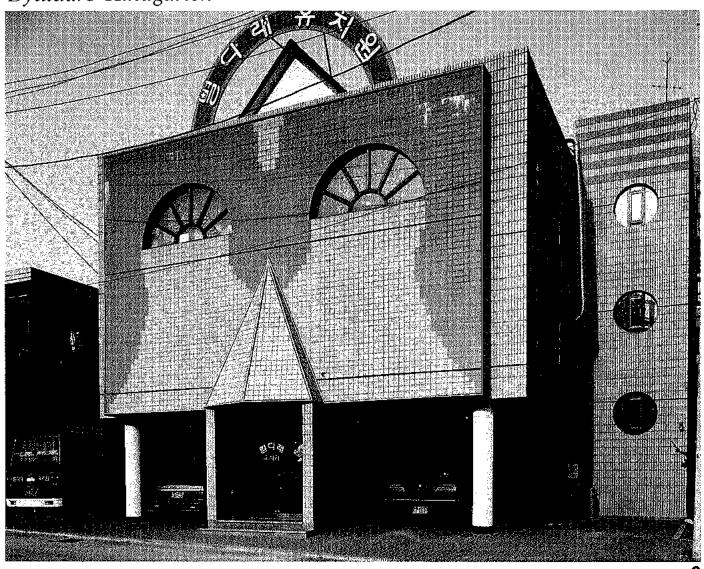






별다래유치원

Byuldare Kindgar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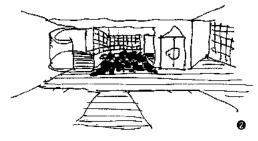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대지면적/542.0㎡

연면적/933.47㎡ 지하층-28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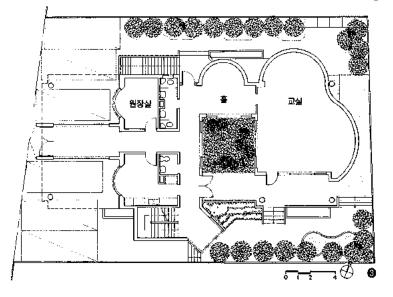
1층--273, 59㎡ 2층--24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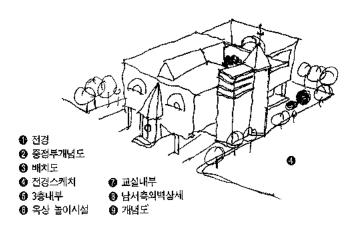
3층-163.8㎡

건폐율/48.46%
구조/철근콘크리트 라엔조
주요재료/외벽-지정색파스텔타일
내벽-지정색 W, P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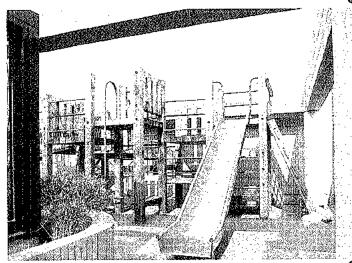


宋光燮/종합건축시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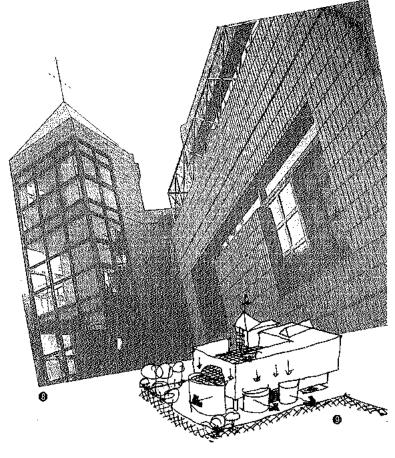












□설계소묘

홍제천을 끼고있는 낙후된 주택가-낮고 오래된 주택들이 바래져 무심하게 활기가 없는동네. 건축주는 이곳에 오래 산 고장에 대한 애착심으로 마을에 필요한 비영리업의 어떤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 그러한 장소성에 대한 애착은 어린이를 위한 집과 마을 사람들이 모일만한 회관 같은 필요성이 요구 되었다.

좁고 긴 대지와 유난히 후미진 곳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알림과 사용목적에 따른 건물에 대한 알림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단층집들의 붉은벽돌 나열에서 표정있는 파사드와 말끔한 타일같은 재료선택으로 가로문맥의 변화를 단절시켜 활기있는 장소성으로 바꾸려 했다. 산뜻한 색깔의 배합과 친근한 곰인형 같은 표정이 어린이와 마을 사람들에게 정겨우며, 친근감이 가도록 직설적인 표현방식을 채택하였다.

필로디로 띄어진 전면의 주차장과 주출입구가 도로면에 접근하여 어린이의 적극적인 유도를 꾀하였으며, 중정을 바라보며 유리통로 통과하는 어린이들의 시각적 변화는 어떤 새로움과 자연에 대한 강한 감각을 줄 것이다.

사랑 유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실은 어린이들의 놀이의 연속이며, 행태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연스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이곳 주변에는 전혀 자연적 경관을 즐길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의도적인 조그만한 충성을 만들면서 자연의 호흡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것은 시각적, 공간적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정은 사면이 폐쇄된 직육면체의 긴 공간을 밝은 빛과 더불어 팽팽하게 긴장된 질시를 부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한 1・2층의 교실, 다목적용 교실, 유원장 등은 각기 변화있는 질서를 갖게되며 다양한 용도를 꾀할 수 있게된다.

2 t

신성극장

Sinsung Theater



대지위치/서울사 도봉구 수유동 168—12 대지면적/841.7㎡ 연면적/2,208㎡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재료/외벽—1.6㎜법랑강판+아이소코트 유리—18㎜ 복층반사유리 창틀—알미늄 분채도장

金永澤/종합건축사사무소 디원건축 Designed by Kim, Young-T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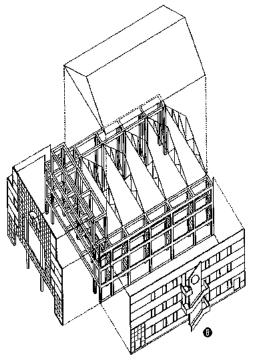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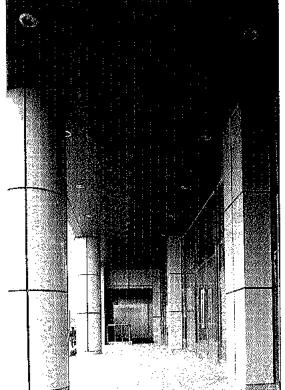
본 대지의 기존건물은 1970년에 건립된 극장전용 건물로서 오랜동안 그 지역의 Land Mark 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나 4~5년전부터 주변에 소규모 빌딩들이 들어서면서부터 대지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지역의 상징적 건물로서의 Image 를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극장 관람객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여서 극장전용 건물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이고 근래에는 관람객수입으론 운영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극장 규모를 가능한한 최소화하고 일부 내부중축을 통해 임대공간의 규모를 최대로 하는것이 건축주의 절대적인 요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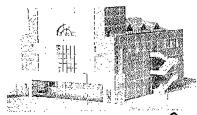
중축에 있어 가장문제가 되는점은 구조적인 불확실성인데 다행히 현장조사를 한 결과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서는 구조적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내부에서는 기초보강을 하고 일부 신설기등을 설치했으며 최상층의 지붕은 하중을 줄이기 위해 기존건물의 트러스를 그대로 사용했다. 기존건물의 외벽은 단열재 사용이 전무한 상태이고 도로족 정면을 제외한 3면이 소규모 필지의 주택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외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단열과 마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는 Isocoat 를 선정했다.

입변구성은 도로축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측면과 배면은 단순하게 처리하였으며 메끄러운 면의 법량과 부드럼고 거친면의 아시소코트를 사용하여 재료의 절감을 강하게 대비시켰다. 건물을 Renovation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의 신축에 비해 설계과정이나 시공과정 모두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된다는 점을 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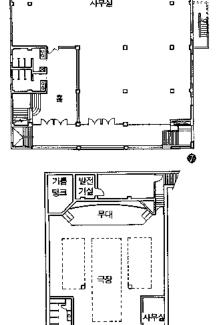








- 전경
- ② 기존건물 전경
- ③ 극장 휴게실④ 주출입구측상세
- ⑤ 초기안모델
- ③ 엑소노매트릭
- 1층평면도3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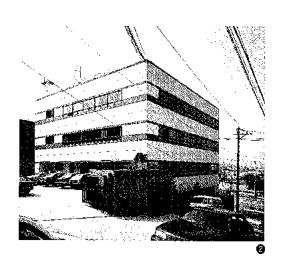
ㅁ 휴게실 ㅁ

문매표소

대광정밀 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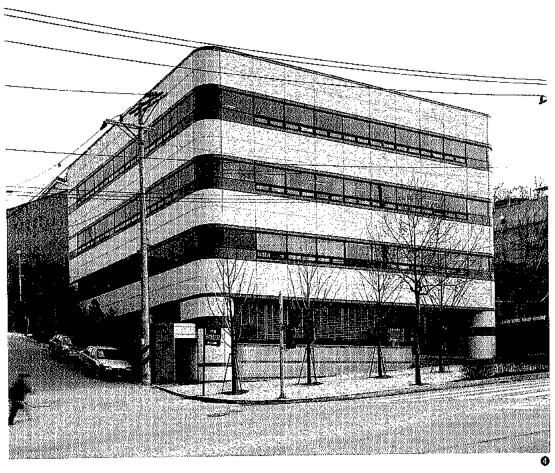
Daekwang Precision Co. Bl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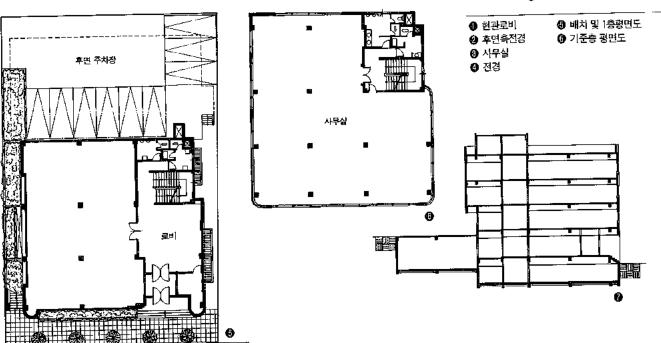






公日坤十文炳國/항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ong, II-Kon & Moon, Byung-Kok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1 대지면적/829㎡ 건축면적/392㎡ 연면적/2,090㎡ 구조/철근콘크리트조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조립식 G,R,C패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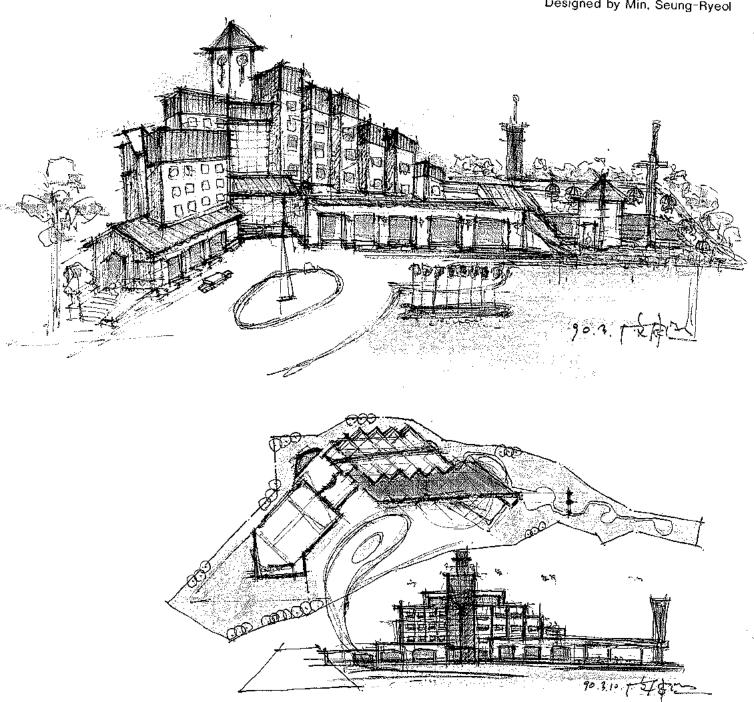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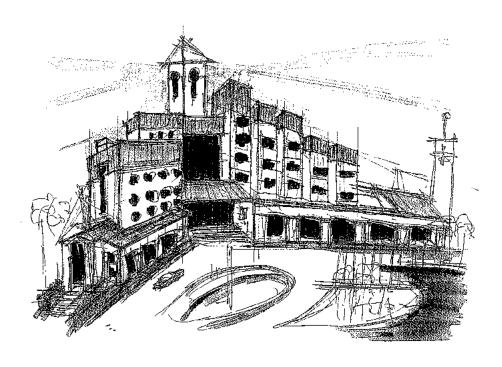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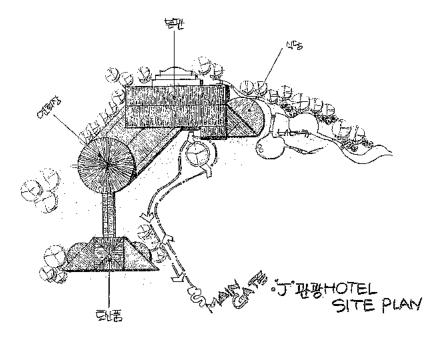
4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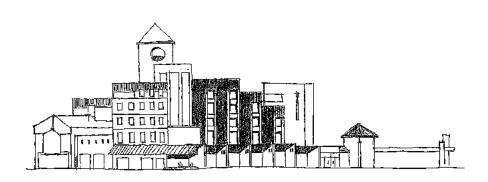
JIBSE 7150k

閔承烈/종합건축사사무소 및 Designed by Min, Seung-Ryeol









고향을 떠난지 가 벌서 20년이 되었네. 작업실에 앉아 국민학교 소풍날을 생각한다. 직지사. 왕복 4시간을 걸었어도 즐거웠던 그날 시냇가에 발담그며 김밥 먹고 아이스케이크를 사먹던 점심시간 보물찾기와 수건돌리기를 하던 오락시간 직지사의 소풍날 그립기만 하다. 수백년 묵은 아름들이 소나무 그 사이를 날아 다니는 백로들 시냇물이 흐르는 청명하고 우렁찬 소리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구나. 이제 나의 어린시절의 꿈을 작품속에 마음껏 펼쳐 보련다. 보다 아름답게…….

'90全國建築士大會의 成功的 開催의 200萬戶 住宅供給政策에 대한 再考

金基斗 대영건축사사무소 전국건축사대회 기획의원 by Kim, Kee-Doo



'90全國建築士大會가 막을 내린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建築士協會가 탄생된 지 24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건만 全國大會는 이제 두번 치투어졌다.

大會場에는 建設部관계자와 民主自由黨 최고위원을 대신한 朴俊炳사무총장음 비롯해 國會建設委員長을 대신한 李麟求의원이 参度하였고, 平和民主黨 金大中총재, 朴胤成 大韓建築學會長, 尹道根 韓國建築家協會長、日本 建築士會 聯合會 熊谷兼雄 부회장 등 各界 代表들과 國會議員 등 많은 관계인사들이 참석하여 本 大會를 祝賀해 주었다.

특별연사로 참석한 金東吉 교수는 "史學家가 보는 建築"이라는 題目의 투별강연에서 建築과 建築士의 관계를 諧謔的으로 풀이하여 건축사의 使命感을 鼓吹시켰으며, 뿌리를 가진 建築으로서 후세를 위한 文化的 遺品을 創造할 것을 督勵하였다. "建築人의 밥"축하공연은 평소 作品活動에 몰두하여 心身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잠시나마 破顏大笑름 안겨준 즐거운 한 때였다.

한편, 建設部長官은 致辭를 통해 "協會가 創立된 지 24년반에 3천3백여 회원을 포용하게 되었고 전국 규모의 성대한 行事를 개최할 수 있는 力量을 가진 建築界의 代表的 職能團體"라고 致賀하는 한편 "建築物은 人間生活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우리시대의 거울로서 한 국가의 文化水準을 재는 尺度 로建築士의 社會的, 歷史的, 文化的 役割의

막중함"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建築士는 국민생활의 質的 向上과 民族文化 帳達에 先導的 役割를 하게 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宋基德 회장은 開會辭에서 "全國建築士大會는 건축사가 협회를 中心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힘을 지키고 共同體的 一體感 속에 '대화합의場'으로 이어져 協會의 발전을 도모하는 觸媒劑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커다란 장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면에서 宋基德 회장과 朴成圭 大會執委員長을 비롯한 委員들과 協會 任職員들의 渾然一體된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結實을 이룰 수 있었으며 우리 建築士들은 國家建設의 先行者이며 國家建設의 役軍임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90全國建築士大會 公開討論會의 主顯인 "200萬戶 住宅供給정책을 위한 建築界의 提案 "은 시국과 밀접한 課題로 政府나 國民 모두의 관심사였다. 發表者나 討論者 모두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들을 披羅하였고, 거침없는 討論과 새로운 方向의 開陳이 있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다소 미흡했던 점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부는 200만호 주택건설의 목표달성에 온갖 힘을 答고 施策方向과 建設理念을 汎國民的으로 具現하고 住宅供給 圓滑을 위한 支援강화에 行政方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建設部 集計에 의하면 1989년말 현재 5백4만7천 가구가 집을 갖지 못한 채 전ㆍ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ㆍ 국민의 절반 정도가 샛방살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250만 기구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으며 그중 생활보호대상 가구도 1백만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만호 주택건설의 목적은 住宅供給의 圓滑, 서민 및 근로자들을 위한 政策 配慮와 부동산거래의 安定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만호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都市人口의 集中, 宅地문제,

資材需給,人力,高勞賃문제,그리고 사업수행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問題들이 散積해 있다.

세상살이의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집없는 설움이 가장 큰 서러움이란 옛 말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 집에 대해 간한 愛着心을 갖고 있으며 알뜰하게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平生의 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즈옴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전・월세가의 暴騰을 비롯한 不動產價格의 上昇은 이같은 庶民들의 소박한 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집없는 아픔을 더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가의 暴騰 등 不動產 問題는 物價 불안정이라는 차원을 떠나 國民들의 一次的인 生活의 安定을 破壞하며 경제 안정을 위험하고 나아가 社會不安을 가져오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 政府에서는 土地公概念의 도입, 新都市 開發 및 不動產投機에 대한 重課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1천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首都圈의 인구는 1천7백만명으로 集計되고 있다. 일개 都市의 人口가 1천만명이 넘으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複合的으로 發生하고 있으며 특히 首都圈의 交通問題는 그 限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人口集中의 原因으로는,

첫째, 首都圈8에 직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둘째, 모든 생활용품이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셋째, 중학교 이상의 學校施設이 지방에 비해서 월등히 좋고

네째, 일용노동이 수월하고 서울 생활환경이 지방보다 낫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人口集中에 대한 效率的인 對策으로는 地方發展을 위한 政策이 先行되어야 하겠다.

분당, 일산, 산본, 평촌 등 新都市들은 自生都市로 볼 수 없다. 도시의 형성은 첫째 대중교통인 철도가 가설되어야 하는데, 분당의 경우 심한 交通難이 예상되고 더구나 學區가 定立되지 않아 중ㆍ고등학생을 둔 中流이상의 家庭에서는 분당으로의 이사를 기패할 것이므로 假需要者나 老後生活을 목적으로 하는 세대들로 도시가 채워진다고 생각되어져 분당이 自生都市로서의 規模와 成長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접값 안정을 위해서 供給을 늘리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지만 住宅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에 병행한 宅地供給의 問題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너부 서두르다보면 資材의 品貴, 人力難 동이 겹쳐 오히려 부동산 시세를 부채질하는 격이 된다.

또한 200만호 주택건설은 아파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田園住宅도 아울러 생각해 나가야 하겠다. 21세기에는 國民所得이 1만5천불에 이른다고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生活水準이 올라가면, 庭園이 있고 展望이 좋고, 空氣가 맑은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자하는 欲求가 강하게 擡頭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것이다.

생가포르 정부는 國土擴張을 위해 인접 인도네시아에서 흙을 사와 기차로 실어 바다를 메우고 공장을 지었다는 현지 안내원의 설명이 기억난다. 야산과 구릉지를 자연 그대로 田園住宅을 建設하고 야산을 바다로 옮겨 공장 부지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은 國土開發 次元에서 實效性이 있다고 전망된다.

특히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철거민의 아파트 입주권은 殘金支拂 能力不足으로 기백만원의 웃돈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事例가 허다했다.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이라면 資金支援도 아물러 考慮 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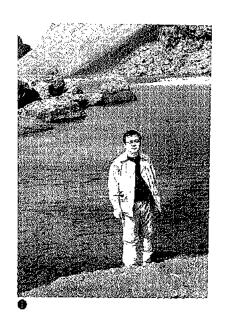
200만호 주택건설의 목적은 住宅供給의 圖滑, 서민 및 근로자들을 위한 政策 配慮와 부동산거래의 安定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만호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都市人口의 集中, 宅地문제, 資材開給, 人力, 高勞資문제 그리고 사업수행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問題들이 敵病해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하였고 계속 건설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의 범위를 넓혀 우리 모두가 주택에 대한 所有愛着心과 주택을 財產增殖의 目的에서 멀리하는 國民啓導方法도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200만호 주택건설은 新規住宅建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不良住宅 및 密集地域의 住宅環境 改善과 서민을 위한 住宅供給에 있다면 전국적으로 劃一化되어 建設法, 都市計劃法 등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規定을 改正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法 和政策을 施行할 때 住宅8이 財產增대의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의 衣, 食, 住가 함께하는 참다운 福祉國家 建設의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天池는 말이 없는데 눈물은 두만강되어

金乗洙/ (株)建築國 答替건축사사무소



- ❶ 天池에서 보석천쪽을 배경으로 선 필자
- ❸ 요염은 심하지만 유유해 호르는 두만강 (모탁보트 위에서)

작년 8월 31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도착한 天池貧館이다.

16시간이나 자동차를 달려 감격에 못이겨 밤을 지새운, 백두산 아래에 있는 종착지의 빌라다. 長春에서 延邊을 가로질러 밤길을 달렀는데, 비까지 억수처럼 쏟아붓는 초조와 고독의 여로였기에, 더욱 더 마음속 깊이 새겨진 추억이 된것 같다.

가도 가도 막막한 기다림과 외로움이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정말 멀고도 지루한 산길 빗길이였다. 동포애가 가득한 조선족 飯店들에서 한기와 히기를 달래는 것도 잠깐, 착안에서는 졸다가 깼다가 하면서 행여나 길이라도 잘못든 것이 아닌지 물어보다가는 또 잠들어 버리기가 일쑤였다. 다 왔다고 함성을 지르다가 다시 차에 올라 한시간을 더 달려야 했던 二道鎭, 심야의 빗속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美人松들의 마을이 너무나 인상적이였다.

아침 9시.

그렇게도 짓궂게 내리쏟던 칠흑속의 소낙비였는데, 어떻게 된 기적인지 아침햇살이 한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간밤의 비대신 아침의 햇빛이 쏟아지는 길건너 원시림은 더욱 높이 솟아 보였고, 빌라의 뜰과 앞 찻길은 가랑비가 내리다 멎은 것처럼 촉촉히 젖어 있을 뿐, 非鋪道의 노면과 배수는 임산물의 수송로답게 훌륭한 것이었다. 바로 옆의 白山管理站(길림성 장백산 자연보호구 관리국)에서 입산수속을 하는 동안 무료하고도 긴것만 같은 1시간을 보냈다. 10시.

드디어 백무산 천지로 출발한다. 마당을 벗어나 잘 닦아놓은 산길로 차가 달린다. 빽빽하게 늘어 선 자작나무의 흰둥치가 햇살속에 눈이 부시다. 바닥에 깔린 고사리의 잎새들은 투명한 녹색으로 한없이 싱싱하다. 갈수록 하늘을 찌르는 침엽수들이 흘러가는 구름을 잡을듯이 키재기를 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노랑과 자주색 들꽃이 바람에 하늘거리며 쓰러진 고사목의 등걸사이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마무리 공사중인 '장백산 公路 지휘부'의 가건물 옆앤 조그만 붉은 열매들이 주렁주렁한 이름모를 나무가 널려있어 원시의 적막을 깬 인간들을 오히려 반기는 듯 눈밧춤이 강하다.

40분을 달렸을 때다. 침엽수 사이로 하늘이 확 트이면서 雲峰능선이 시야에 나타났다. 백두산, 한여름이라 눈대신 흰구름을 머리위에 이고있는 長白의 우람함이 신비로운 감격으로 가슴을 파고든다. 차에서 내려 백두산 영봉을 우러러보며 한참을 걸었다. 정말 내가 백두산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순간 모든 상념조차 다 가셔버린 무아경의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다시 차에 오른다. 조금을 달리면 왼쪽으로 또 한갈래의 등산길이 보이는데 얼마를 가다보면 산봉우리가 보이질 않는다. 한참후에야 누런 갈색의 몸체를 지닌 기이한 봉우리가 다시 나타나면서 흰 폭포의 줄기가 백두의 仙境을 수놓고 있다. 또 사라졌다가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는 비룡폭포(중국선 장백폭포)가 그야말로 아름답다.

오른쪽 계곡으로는 저멀리 岳樺의 숲이 林海처럼 잔잔이 깔리고 길아래엔 白河가 장백의 화신인양 소용돌이치며 힘차게 흘러 내린다.

스키장을 위한 새 빌라가 지어지고 있는 大池水文站 근처를 지나면, 찍고 깎은듯한 검은 절벽산이 코앞에까지 와 닿는듯 하다. 11시 30분.

창길이 끝나고 천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백하의 뚝길을 내려서서 흰 수증기가 뒤덮고 있는 왼쪽편의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온천장을 지난다. 조그만 다리를 건너 악화숲밑을 돌아나오면 바윗들 능선 저앞에 비룡의 장관이 크로즈엎 되고 물소리까지 요란하기 그지없다. 저 뒤의 천지가 쏟아내는 68m의 비룡폭포는 민족의한이 흘러 송화강의 원천이 된다.

태고가 숨쉬고 있는 단애는 하늘에 걸린듯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것만 같은데, 굴러내린 돌더미를 건너 뛰어오르다보면 호흡은 목끝까지 와닿고 땀은 온몸을 적시며 흘러 내린다. 절벽사이에 걸린 외길은 물에 잦어 있었고, 왼쪽 귀를 더욱 때리는 폭포의 굉음은 아찔하고 이슬함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용케도 빠져나왔다 싶으면 폭포 뒤쪽으로 천지에 이르는 평원이 펼쳐진다. 산용담을 비롯한 갖가지 희귀식물들이 꽃을 피운 채 산바람에 흩날리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나무도 자라지 않는 이 고지대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 추위와 강풍을 몰아친 백두의 시련이 오죽했을까 싶다.

12시30분.

폭포로 이어지는 백하의 물줄기따라 좌우로 차차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전지. 감격에 겨워 함성을 울리면서 힘껏 달려가서는 펼쳐진 천지와 이를 감싸고 있는 백운봉, 장군봉 등 영봉들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으며 정성껏 禮를 나해본다. 개인엔 정기를, 나라엔 통일을 벌어보면서 마음껏 애국가를 불러본다. 어느새 목은 메이고 눈물이 고였다.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고향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천지에 손을 담그고는 물밑의 흰돌을 손안에 모아본다. 사진의 천지보다도 꿈속의 백두산보다도 훨씬 크고 높은 그 수려한 장관에 새삼 놀란다. 한낮의 태양은 천지의 잔잔한 파도위에 부서지고, 천자에 몸을 담근 저 구름은 조국하늘쪽으로 바삐 홀러가고 있다.

천지는 조용하고 백두는 말이 없는데 저건너 이북초소는 무엇이고, 내가 선 이자리는 중국이니 어쩌된 일인가.

한모통이 돌아 補天石에 이르면 국경을 고집한듯한 낡은 철대가 또 나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

2백년전(서기 1702년)에 마지막 불을 뿜었다는 천지, 통일이 되고 국경을 찾을 때까지 참고 견딜 수는 있을 지가 궁금하다. 오후 2시 15분.

천지 주위는 바람이 거세지고 추위를 느끼기 시작한다. 모두들 앞서 내려가고 우리 일행이 마지막 아쉬움을 달래며 뒤를 따르고 있다. 그 마지막을 또 내가 혼자 걷는다. 일행과 뚝 떨어져서 바람소리와 물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도 없는 빈 백두산을 뒤로 돌아보면서 영접속에 살고있는 한 인간의 외로움을 마음껏 되씹어 본다.

지금은 이북땅인 백두산, 한참 저 아래에 주울은천이 있고, 부모님은 이곳까지 와서야 아들인 나를 낳지 않았던가. 산좋고 물좋은 곳을 찾아 신령님을 만나고자 했다면 백두산 이곳과는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하고 나 또한 이렇게 달려와서 흐느끼며 뉘우치고 있지 않는가. 백두산 봉우리위에 걸려있는 저 태양도, 바람과 구름이 빨려들어간 저 천지도, 내 몸과 마음의 한 구석일수도 있다는 오묘한 감정속에 스스로 깊숙이 빠져 버린다. 퉁기는 물거품 사이로 연하디 연한 옥빛이 흩어지고, 그 아래 물살에 나부끼는 초록이끼는 곱디 고운 비단결처럼 빛나 다시는 못볼 이곳의 조화같다. 신비로움에 떨며 생의 원점을 찾아 나선 한 나그네의 빈 마음을 여기에서 읽는다.

그 이튿날.

반새 또 비가 내렸다. 두만강까지 강행군이다. 아침 8시에 천지빈관을 떠났는데 松江鎮을 거쳐 정오에는 鷄南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냇가가 좋아 점심식사차 차를 세웠는데 그 마을은 조선족 70여호가 살고있는 전형적인 초가마을이었다. 벼가 익어기는 논옆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소달구지 뒤를 따르는 멍멍이하며, 초가집 처마빝의 고추와 옥수수에 돼지우리 위의 호박넝쿨과 나무단장의 나팔꽃 등이 완연한 우리의





옛고향 풍경 그대로다.

어랑촌 항일유적지를 둘러서 용정마을을 지나 혜란강을 끼고 달려 延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좀 지나서였다. 백산호텔에 짐을 푼 후 곧장 圖們으로 직행이다.

뿌르하통강이 굽이쳐 흐르는 아름다운 풍광이 너무나 어국적이었고, 자주색 들국화가 이어지는 산길위로는 흰염소가 한가로이 방목되고 있었다. 차가 겨우 비켜가는 낡은 다리를 건너 圖們口岸에 도착한 것은 5시 5분전. 이북으로 통하는 인도교 입구는 구안 건물이 가로막고 철문으로 막혀 있다. 제방에 올라서면 이북의 산하가 한눈에 들어 오는데, 철교의 가운데가 국경선이라 색깔까지 틀리게 구분한테는 아파오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백두산 천지로 두만강도 우리의 땅인데 이처럼 갈라놓고 말았으니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목가적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시커먼 두만강물을 보고는 상처뿐인 발길이었다. 사공도 없는 빈배(모터보트)에 올라 김정구의 눈물젖은 두만강을 몇번이고 불러 본다.

어둠이 깔려오는 두만강은 석양에 더욱 외롭고, 이북땅의 기적소리를 듣는 나그네의 서러움은 어느덧 눈물이 되어 흐른다.

언젠가 통일의 그날. 내가 태어난 주을온천을 거쳐 우리땅을 밟아가며 다시 어자리에 서서는 오늘의 이 감회를 다시 새겨보리라 마음 먹으며 두만강을 떠난다.

천지는 떠날 때 아무말도 없었는데 눈물은 이미 두만강되어 이렇게 울고 있다.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4. 朝鮮時代의 宮闕

李太祖는 漢城에 천도함과 동시에 同王 3年(1394) 權威의 象徵과 백성의 統率을 위하여 景福宮을 창건하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 9월에 일단 준공을 보았다. 또 昌德宮은 정종이 개경으로 還宮했다가 태종이 재천도를 하면서 1405년에 離宮으로서 낙성을 본 곳이다. 한편 성종은 세종때 別宮으로 세운 壽康宮을 크게 修築하여 창경궁을 1484년에 세웠다. 德壽宮은 임진왜란 이후에 임시 行宮으로 사용하다가 광해군때에 정식의 궁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광해군때 세워진 慶德宮(慶熙宮)과 仁慶宮이 있고 諸宮으로서 安洞別宮(안국동 풍문역고 자리), 明體宮(현 덕수궁 북쪽), 彰義宮(현 통의동 부근), 祈禧宮(현 연희동 부근), 於義宮(현 사직동 부근), 龍興宮(현 효제동), 梨峴宮(현 인의동 부근), 雲峴宮(현 종로 운니동) 등이 있다."

이상의 열거한 조선의 宮은 그동안 많은 내외 재난을 받으면서 변하였지만 현재 유구가 보존된 것과 그 遺址마저 없어진 것들이 있다. 어들 중 중요한 궁궐건축만을 개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1. 景福宮

이 궁은 조선의 正宮으로 제일 먼저 세원전 궁이다. 원래 고려 三京中 南京이 이곳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현 청와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조는 1394년 8월 중신들을 거느리고 한양에 와서 도읍을 직접 결정하고 '新都宮闕造成都監'을 임시로 조직하여 심덕부, 이직 등으로 하여금 궁궐을 조성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1394년 12월 3일 開基祭를 지낸 후 그 다음해 9월 25일 준공을 보게 되고 정도전에 의하여 '景福宮'이라 이름하고 1397년부터는 이곳에서 정식집무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경복궁은 배후에 白岳山을 主山으로 넓게 펼쳐진 평지에 子坐午向을 하여 그 중앙부에 정전인 勤政殿을 중심으로 內外朝와 燕朝를 배치하고 주위에는 園園를 비롯하여 부속殿閣을 배치하였다. 즉 이들 殿閣은 正殿과 東西南北의 行廊을 비롯하여 東樓・西樓・燕寢・東小寢・西小寢・報 平廳・內侍茶房・中樞院・三軍部・東・ 西樓庫 등 총 390 여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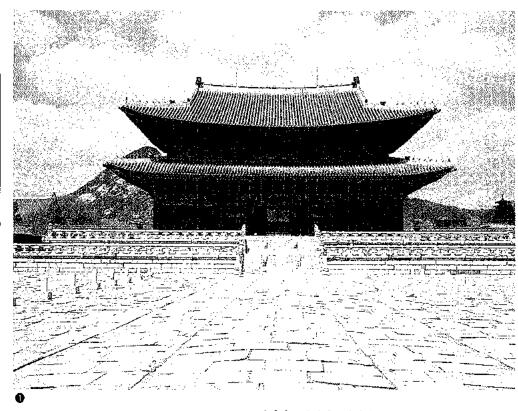
그러나 1398년에 소위 '王子의 亂'이 일어나 芳遠(후에 태종이됨)의 손에 배다른 동생 芳碩과 芳蕃이 죽음을 당하게 됨을 계기로 대조 뒤를 이은 정종이 개성으로 환도하게 된 것을 다시 태종때(1406)에 再遷都하여 경북궁은 正宮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1418년 세종은 勤政殿에서 등극하여 집현전을 두어 고금의 학문발전에 힘을 기울이는 등 한동안 경복궁에서 태평성대를 누리었다. 이때 경복궁의 외담은 높이 20尺 1寸이고 둘레가 1,813步(1步=6尺) 즉 10,878尺이나 되는 궁성이었고 東西南北의 宮門도 建春門・迎秋門・光化門・神武門 등으로 명명하고 또 광화문 북쪽에 弘禮門과 근정전 앞에 근정문, 그 양옆 동 협문을 日華門, 서협문을 月華門이라 하였다. 또 1434년에는 慶會樓 남쪽에 報漏閣을 세우며 궁 서북에 簡儀臺 등과 1438년에는 침전인康寧殿 서쪽에 欽敬閣을 짓고 시각과 계절을 나타내게 하여 천문기기를 발명케하였다.

그 후 1443년에 궁내 諺文廳을 두어 한글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이곳의 정전인 근정전에서는 세종 이후 역대 왕중 端宗・世祖・睿宗・成宗・中宗・明宗・ 宣祖 등이 등극하기도 하였지만 임진왜란때 외병에 의하여 잿더미가 된 이후 270년이 지나도록 경복궁은 황폐된 채로 있다가

張慶浩 문화재<mark>연구소장</mark> by Chang, KyungーHo 1865년(고종2년)에 정권을 장악한 홍선대원군에 의하여 재건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져 1867년 중요건물인 勤政殿을 비롯하여

修政・思政・康寧・交泰・含元・慈慶・ 萬慶・興福・慶成・延生 등의 殿과 麟趾・紫薇・萬和・資善・敬安・咸和堂 등의 堂과 慶會樓・淸讌樓・香遠亭 등의 누정과 齊壽閣・欽敬閣・多慶閣 등, 또 光化門・弘禮門・勤政門・日華・月華・ 建春・迎秋・神武門 등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1873년에는 신무문안에 乾淸宮을 더 세웠다. 이렇게 하여 궁궐의 주요요소인 燕朝・治朝・外朝를 가진 정궁으로서 면모를 갖춘 것이다. 그러다가 1895년에는 외세의 침략에 편승한 일본인의 만행으로 명성황후 민씨가 시해당하고 1910년 日人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일인들야 의하여 殿・堂樓・亭・臺 등 4,000 여칸을 헐어서 민간에 방매하고 1917년 창덕궁에 불이 난 것을 복원한답시고 이곳의 교태전 · 강녕전 · 동행각 · 서행각 · 연결당 ·



● 景福宮 動政殿 全景

朝鮮初期 行政區域과 邑城(국시편찬위원회, 한국시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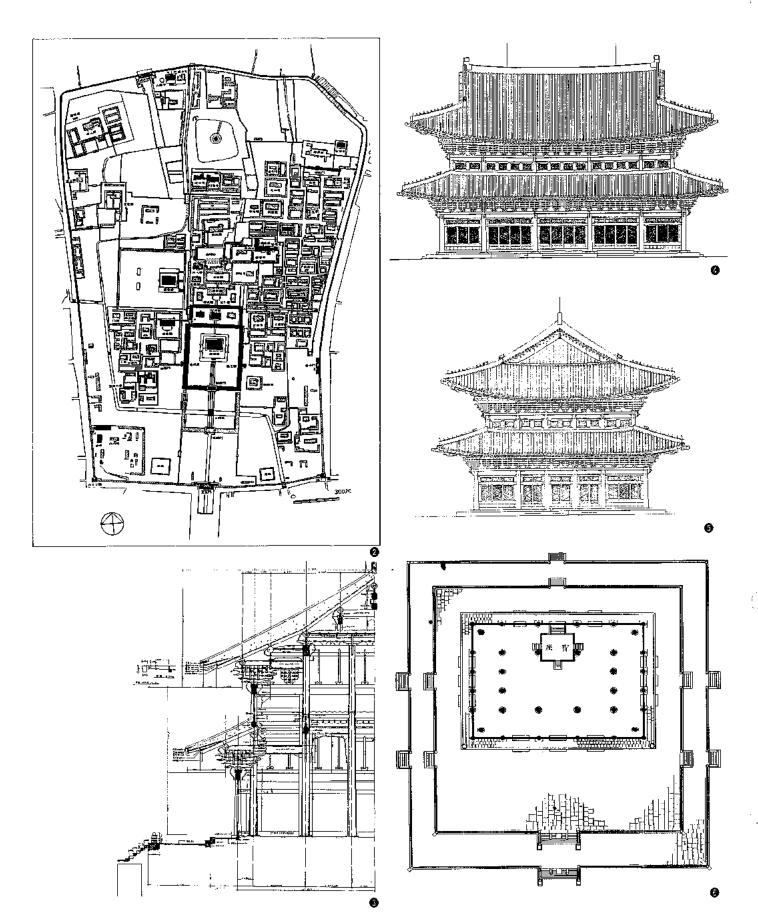
	地域	行政區	邑域이 있는	18 0	城	數	備考
		域數	郡縣數	計	石築	土築	HIN TS
漢	漢 城 府		1	1	1		都城
開步	開城府		1	2	2		内・外域
京畿	左道	22	1	1	1		水原道護府
	右道	15	1	1	1		喬桐縣
	左道	21	5	5	5		
忠清	右道	33	19	20	19	ļ.	乾至山城(韓山郡)
经工工	左道	35	20	23	23		慶州, 梁山, 寧海의 山城포함
慶尚	右道	31	21	22	19	2	咸陽 沙近山城 포함
全羅	左道	21	8	13	1 1		南原 蛟龍山城,寳城의 兆陽縣城。 興陽의 南陽縣城 포함
	右道	36	2 5	28	26	2	長興의 會寧浦城과 珍鳥의 金甲島, 南桃浦城 포함
	左道	14	2	2	2		
黄海	右道	10	6	6	6		
江原	資東	9	9	11	9	2	三陟의 沃原城,通川의 北山城 포함
1 54.75	嶺西	17	1	1	1		
咸鏡	南道	13	8	11	11		永興의 山倉洞城, 甲山의 外城, 三 水의 鴨綠江行城이 포함됨
	北道	9	9	12	10	2個處 七米詳	鏡城의 南山城, 會寧의 行城, 鍾城 의 行城이 포함됨
平安	西道	21	12	18	17	1	平壤外城, 昌城의 青山城의 行城, 塑州의 大塑州城 行城, 延坪嶺行城 포함
	東道	21	11	15	14	1	渭原의 加乙罕洞行城,洞口行城과 理山의 行城,碧潼의 行城 포함
[출l·		330	160	190	179	11	

경성전 • 연생전 • 인지당 • 홈경각 • 함원전 • 만경전 · 홍복전 동을 헐어 창덕궁의 大造殿과 熙政堂을 짖고 광화문을 建春門 북쪽에 옯겨 세우고 홍례문을 할어 소위 總督府廳舍를 지었으며 건청궁을 헐어 없애고 美術館을 지었다. 이후로도 6.25동란때 광화문이 불타서 1968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었다. 그러므로 이후로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근정전과 근정문을 비롯하여 思政殿・修政殿・千秋殿・萬春殿・慶會樓・ 集玉齊・協吉堂・八隅亭 등만 남아있다. 이렇게 日帝는 우리의 민족혼을 없애려 경복궁을 파괴하였지만 해방후에도 경복궁 경내에 국립박물관을 세우는 등 無知한 정책이 이루어져 그나마도 더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은 경복궁 내에 중요한 건물을 개술하고자 한다.

1. 勤政殿

이곳은 경복궁의 정전으로서 신하들의 朝禮를 받고 국왕의 공식적인 행사를 거행하던 곳이다. 1867년 재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중으로 마련한 月臺와 외벌대의 기단 위에 정면 5칸, 측면 5칸 건평 약 197평의 2충건물을 세웠는데 내부는 通層으로 되어있다. 북쪽에 백악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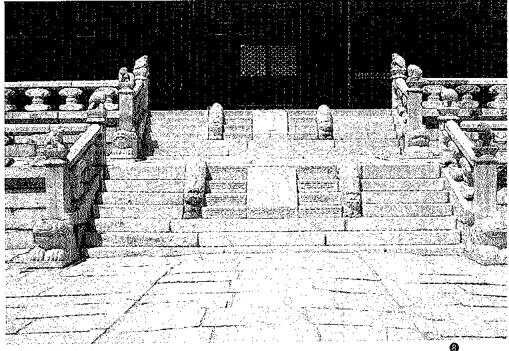
背山으로 남향하고 있으며 앞에는 근정문과 그 양협문이 있고 뒤에는 사정전으로 통하는 삼문을 두었으며 이 문을 연결하여 前後左右에 행각을 돌리어 동쪽행각에는 降文樓가 있고 서행각에는 隆武樓가 있다. 이 행각으로 둘러쌓인 내정 정진 앞에는 근정문까지 三道가 있고 그 양옆에 品階石8이 12개씩 있어 동쪽에는 문관, 서쪽에는 武官이 배열하도록 되어 있다. 내정의 전면바닥은 넓고 얇은 薄石을 깔아 건축 내부공간의 위엄과 조화를 꾀하였다. 2중월대 4면 중앙부에는 계단을 두었는데 남쪽에는 그 폭을 三道에 맞추어 중앙 踏道와 兩側 계단을 구확하고 있고 답도 계풍면에는 구름 속에 여외주를 회통하며 노니는 鳳凰 2마리가 세겨져 있고 계단 踏高면에는 당초무늬가 부조되어 있다. 또 중간 마구리돌에는 해태가 길게 엎드린 듯한 조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上下월대의 계단에서 같다. 월대의 東西側의 계단은 약간의 간격을 누어 2개소씩 폭이 좁은 계단을 두었고 후측에는 1개소 만을 두었다. 上下월대에 화강석재의 華葉童子柱를 배열하고 난간석을 돌리었는데 난간이 끊기거나 꺾인 부분에는 각 방향에 따라 12支像을 조각한 石柱를 돌리었다.

건물은 2층의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데 1 · 2층 다 벽없이 창호를 꾸비었다. 특히 1층의 창호는 꽃살창의 분합문을 두고 그 위에 광창으로 빗살창을 꾸몄다. 기둥의 배열은 內外陣을 두고 내진은 고주로 2층의 내기둥을 겸하여 가구되어 있다. 2층의 邊柱는 1층의 툇보 위에 놓이는데 대략 툇보길이의 4분의3 밖으로 내밀어져 내출목 행공첨차 위에 놓였다. 공포는 조선후기 나포계의 섬세하고 장식적인 포작을 꾸미었는데 1·2층 다같이 內4出, 外3出目을 짜았다. 특히 살미 外端에 仰・垂舌과 內端의 雲工 그리고 내부 뜬창방 밑에 화려하게 꾸민 落陽 등 실로 화려하고 장중하게 꾸미었다. 건물내부 후측고주사이에는 왕이 정좌할 龍床壇을 나무로 높이 짜고 그 위에 御座를 마련하고 그 뒤에는 나무로 투각한 병풍과 日月五岳圖가 있고 용상 위에는 화려하게 꾸민 닷집 寶蓋천장을 짜았다. 그리고 건물의 상부에는 보와 도리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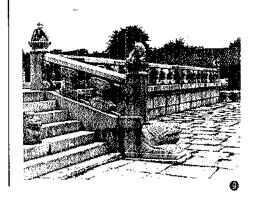


소란반자를 아름답게 꾸미고 천장 중앙부에는 嵌入천장을 하여 작은 包作을 짜고 龍 2마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如意珠를 가운데 두고 꿈틀거리는 조각을 올려 달았다. 지붕의 종마루에는 양성을 바르고 그 양끝에는 驚頭를, 내림마루 끝에는 能頭를 얹고 추녀마루에는 잡상을 올려놓아 잡귀와 재난을 피하는 벽사의 뜻으로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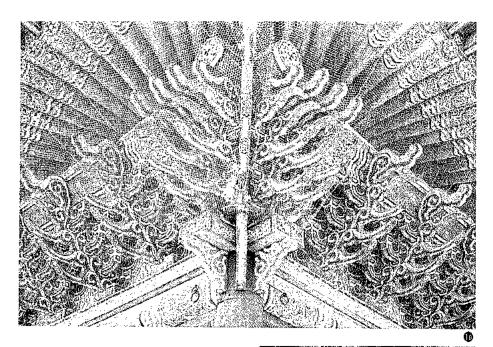
「勤政醫質正儀軌」에 나타난 '景福宮饌圖'에 의하면 근정전을 중심으로 그 내외에 신하들이 拜伏하고 행렬을 이분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월대 위에는 차일을 치고 건물 내부와 바깥에 많은 중신들이 격을 맞추어 배열하고 의식용 旗를 세우고 행렬의 외곽과 근정문 그리고 행각



- ② 桑福宮 配置圏
- ❸ 勤政殷 総斷面圖
- ❷ 勤政殿 正面圖
- 母 勤政殿 側面圖
- 6 勤政殿 初層平面圖
- 動政殿 育蓋와 玉座
- 動政殿 越臺前面石階
- ④ 勤政殿 越髮詳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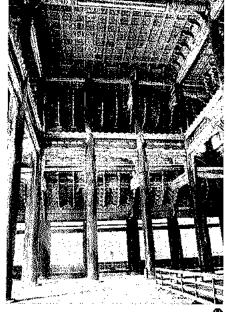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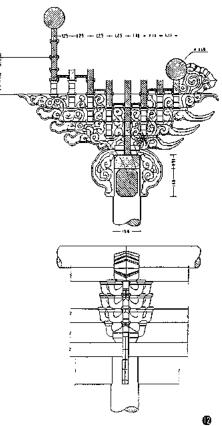
- 勤政殿 天障과 內部架構
- ❷ 勤政殿 栱包圖
- 砂 初層供包内部
- 🜓 勤政殿 上層으로 오르는 階段
- 🚯 勤政殿 行閣內部
- 動政殿에서 본 動政門舊總督府 應舍가 앞을 기로 막았다.
- **①** 勤政殿 初唐 平面圖
- 🚯 勤政殿 正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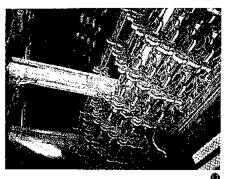


밖으로는 護衛를 위한 군사들이 열을 지어서 있다. 즉 이 그림을 보면 당시에 엄격한 궁중의식이 잘 나타나 있고 지금도 그 유구로서 발을 쳤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2. 勤政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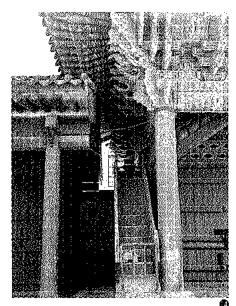
근정전 앞에 있는 2층문으로서 원래 그 남쪽으로 永濟橋와 弘禮門 그리고 광화문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앞을 절벽같이 막은 석조의 舊충독부(현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근정문은 나지막한 기단 전면에 제단을 폭넓게 놓고 그 중앙부에는 별도로 해태조각을 한 소맷돌과 雲鳳紋을 조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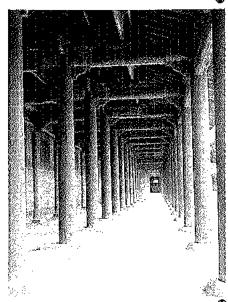




踏道를 두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多包系 우진각지붕을 한 이문에는 2짝 널판문을 3개소에 달고 있지만 그 양옆 동ㆍ서에는 일화문과 월화문을 단칸씩으로 두어 신분지체에 따라 출입을 별도로 하게 하였다.

이 문과 양측 행각과의 연결은 지붕에서 이이지도록 하였고 이 동쪽 이어진 부분의 처마밑에 계단을 두어 2충문류로 오르도록 하였다. 건물의 공포는 근정전과 같이 조선후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 雲工・앙서・수서 동을 섬세히 꾸몄고 2층의 기둥은 역시 보나 포작의 위에 세워졌는데 남대문이나 동대문처럼 2층의 귓기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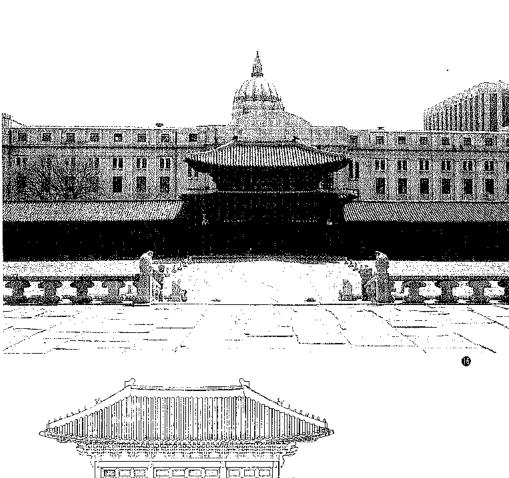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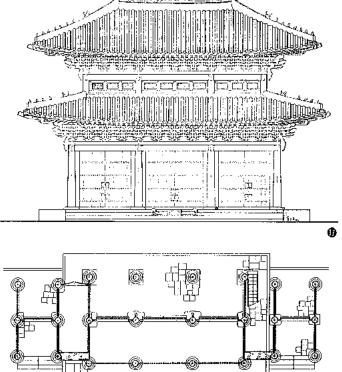
밑에서부터 고주로 세운 것은 아니다. 여하간 이 문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궁궐의 正殿 출입문으로서는 단 하나 남은 중층의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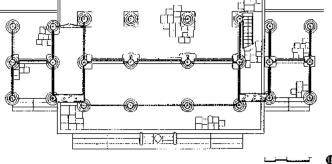
3. 思政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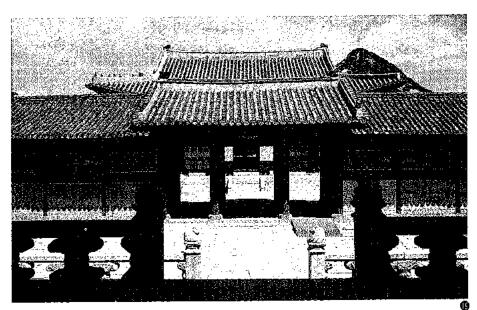
근정전 북쪽 思政門을 지나 근정전과 같은 축선상에 놓인다. 버교적 높은 기단을 꾸미고 그 위에 정면 5칸, 측면 3칸의 多包 팔작지붕을 한 건물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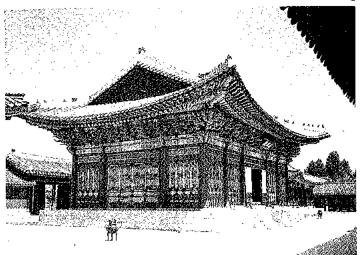
1867년 근정전과 같이 계획되어 재건된 건물로서 이 동쪽에는 萬春殿과 서쪽에 千秋殿이 對稱을 이루고 있다. 사정전은 正宮의 便殿으로 왕이 공식적인 큰 행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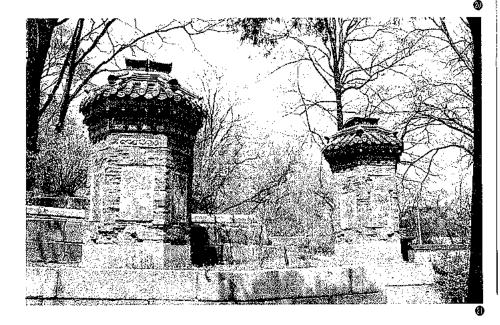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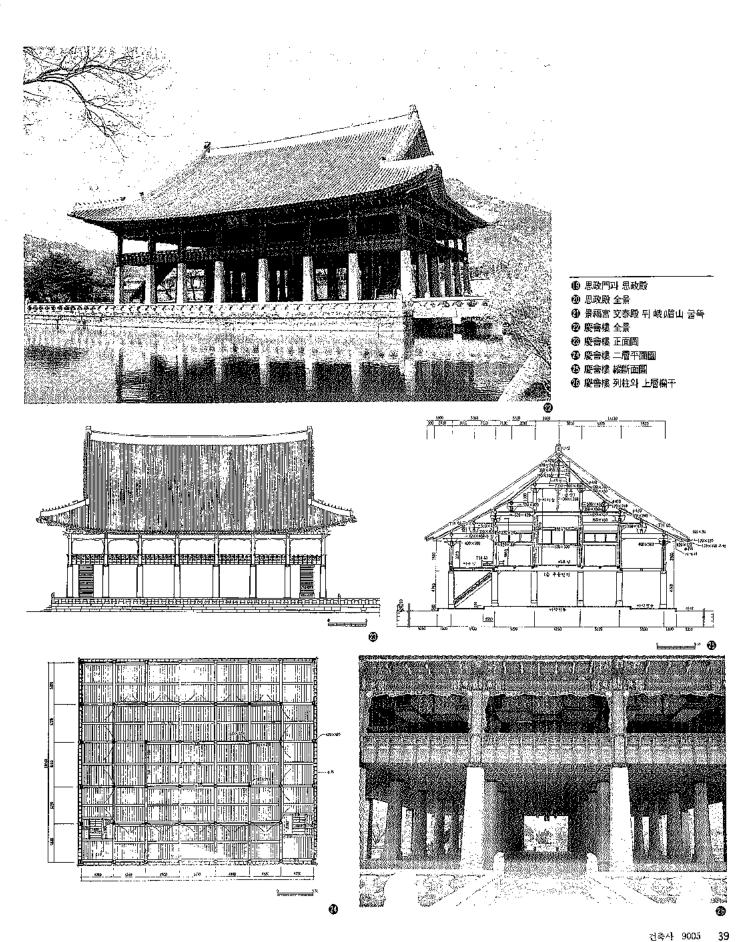
아닌 일상업무를 이곳에서 한 執務所이다. 宮制로 보아 근정전과 이 사정전을 합한 일곽을 治朝라 할 수 있고 여기서 衙五門을 지나 寢朝구역으로 들어가면 康寧殿과 交泰殿에 달하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공지로 남아 있고 이들 침전의 굴뚝이었던 峨嵋山의 굴뚝만이 아름다운 자태로 여운을 남기며 서 있다.

4. 慶會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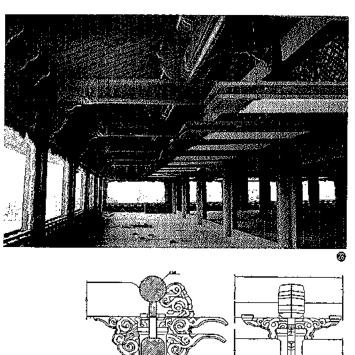
이 건물은 원래 태종 12년(1412)에 朴子靑에 의하여 개축하여 세워졌다. 네모 반듯한 연못에 장대석 기단을 한 섬을 만들어 그 위에 누각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48개의 돌기둥에 용을 새기고 물속에 當洲(섬) 2개를 더 만들었고 건물로의 출입을 위한 돌다리를 화려하게 꾸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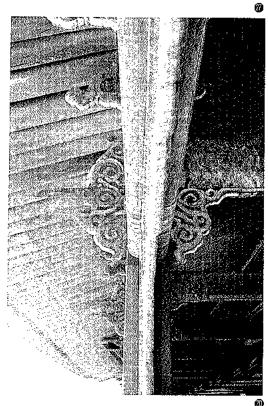
그러다가 임진왜란에 불타 1867년에 재건하였는데 연못의 규모는 남북이 113m, 동서가 128m인 方池에 樓건축은 정면 7칸, 측면 5칸의 2翼工形式의 팔작 重層건물이다. 건물의 동측에는 밖에서 출입할 수 있는 3개소의 돌다리가 놓였는데 다리의 양측 난간 동자주에는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石獸像을 조각하였고 화옆동자 위에 올려진 8각의 돌란대는 기단 전체를 돌리고 있다. 또 서쪽의 연못쪽으로는 배를 接岸할 수 있게 계단을 두어 뱃놀이를 즐길 수 있게 계획하였고 기단의 바닥은 外陳柱列部와 內陳柱列部에 段着를 두어 내진쪽을 한 단 높였다. 1층 반자는 우물반자를 꾸미어 화려하게 단청을 하고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건물 남쪽 양측칸에 시설하였다.

2층으로 오르면 바닥에 장마루를 깔았는데 툇칸 柱列部와 다음 內陳列部, 그리고 중앙부를 구획하여 마루의 높이를 다르게 하였거나 들어열개창을 두어 필요에 따라 공간의 구획을 이루어 사용할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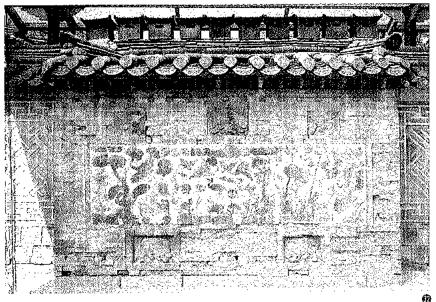












- ② 慈慶殿과 清護機
- ☞ 慶會楼 上層架構
- ④ 廃棄楼 紫工
- @ 慶會複 上層拱包
- ① 慈慶殿 萬歲門
- ② 慈慶殿 꽃담상세
- ❸ 慈慶殿 平面圖

또 2층마루 주위에는 鷄子脚欄干을 돌리었다. 건물의 규모가 크므로 11樑架불 이루고 전형적인 2익공의 출목없는 포작을 꾸미고 기둥 옆과 창방 밑에 낙양각을 달아 조선후기의 형식을 뚜렷이 나타낸다.

5. 慈慶殿

이 건물은 1865년에 중건한 것이나 후에 화재를 수 차 입어 결국 1888년에 재건된 것이다. 자경전은 아름답게 꾸며진 경복궁의 燕寢의 하나로 協慶堂, 淸燕樓와 일곽을 이루어 전면행각 중앙에는 정문인 萬歲門이 있고 후정의 담장에는 十長生 굴뚝이 있고 서측담은 花紋墻을 꾸미고 그외의 담은 塼築담을 하였다.

건물은 높게 마련한 장대 기단 위에 네모초석을 배치하여 세웠고 공포는 출목없는 2억공을 하고 있다. 자경전과 협경당의 전면 중앙御間에는 前退間을 개방하여 대청으로 통하게 하고 청연루는 건물에서 2간을 돌출시켜 높은 돌 기둥을 받친 누마루 형식을 하고 있다. 앞에 'ㄴ'자로 놓인 행각은 납도리집으로 소박하게 꾸미었으나 그 외부로 사고석과 벽돌을 잘 쌓아 火防壁을 이루었다.

경복궁에는 이외에 중국 淸風의 건물인

集玉齊가 있고 協吉堂과 香遠亭 등이 있고 또 建春門과 神武門이 남아있고 콘크리트로 복원된 光化門과 迎秋門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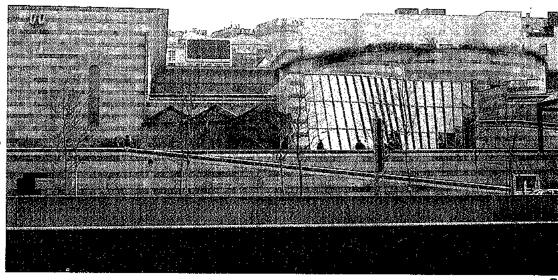
註)

 付金 特別市, 村金 六百年史, 文化史蹟篇, 1987.

獨逸의 現代建築을 찾아서

슈트트가르트 국립미술박물관과 칼스루에 주립도서관

Modern Architecture in West Germany



James Stirting

1926년 영국 Glasgow 에서 출생하여 리버풀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기술자였으며 이같은 사실은 그의 초기 건축시절의 철저한 배모양의 형태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후 그의 후반기 작품은 다소 고전적이며 인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의 대학동창인 Coin Rowe 의 영향을 받은데서 비롯된다.

1953년 이스라엘의 Lyons 설계사무실과 런던의 Ellis 사무실에서 건축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James Gowan 올 알게 되었다. 1956년 그와 함께 J. Stirling 은 런던에 사무실을 개업한 후 근대건축과 국제주의 양식에 다소 영향을 받은 많은 건축작품을 통하여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와 대표작품으로 Ham Common 의 주택들(1955~58), 처어칠대학계획(1958), 캠브리지의 Selwyn 대학(1959) 및 Leicester 대학의 공과대학건물계획(1959~63)을 들 수 있다. Leicester 대학건물계획은 붉은색 벽돌과 온실의 유리마감부분사이의 극적인 대조, 대담하고 정확한 형태를 통하여 전세계로 부터 주목을 끌게 되었다.

1963~71년까지 J. Stirling 은 개인설계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이 시기에 캠브리지대학 역사관(1964~67), St. Andrews 대학 기숙사(1964~68), Middlesbrough 의 Dorman Long 본부계획(1965), 옥스포드 Queen 대학 Florey 건물(1966~71), Runcorn 신도시외 주거단자계획(1967~76), Haslemere 의 Olivetti 교육관(1969~72), 독일 뮌헨의 Siemens 사 건물(1969), Derby 의 공회당(1970) 등 수많은 건축작품을 실현시켰다.

1971년 Strling 은 Michael Wilford 와 동업을 시작했으며 초기 공동작품으로서 Milton Keynes 의 Olivetti 본부건물(1971), 서독 뒤셀도르프의 Nordrhein - Westfalen 미술관(1975), 쾰른의 Wallraf - Richartz 박물관(1975), 서독 쉬트트가르트의 국립미술관 확장 및 주립극장신축계획(1977~83) 등이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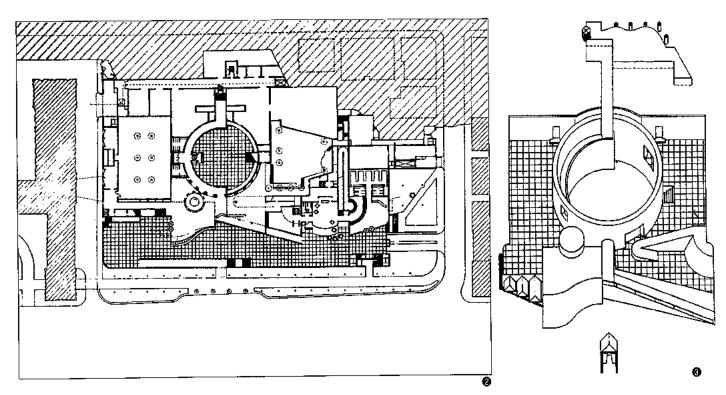
1960년부터 New Haven 예일대학의 오랜 강의활동을 통하여 그는 미국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그의 미국에서의 작품으로서 휴스톤의 Rice 대학 건축판 확장계획(1979~81), 캠브리지 Fogg Art 박물관 신축계획(1979), 뉴욕 콜롬비아대학의 화학관계획(1981)을 들 수 있다.

그후 10년 동안의 중단된 건축활동 이후에 그는 다시 모국으로부터 여러 중요한 설계프로젝트, 예를 들면 런던의 Tate 갤러리 증축계획(1980)을 맡게 되었다.

건축비평가들은 1970년 이후의 Stirling 의 작품이 매우 형식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서독 슈트트가르트의 국립미술관과 런던 Tate 갤러리건물은 모두 포스트모더니즘건축으로서

閔相忠

(주)공간연구소연구실 by Min, Sang—Choong



규정했다. Stirling 은 그의 전체 작품속에서 일련의 통일성을 추구하였으며 거의 건축의 말년에는 매우 표현성이 강한 작품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건축적 특성으로써 모든 예술적 창조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 역사성을 들 수 있다.

2. 서독 슈트트가르트의 국립미술박물관

James Stirling 은 서독에서 두가지 비성공적인 출발을 시작했다. J. Stirling 과 Wilfort 는 쾰른의 Wallraf - Richartz 박물관과 뒤셀도르프의 Nordrhein - Westfalen 박물관의 두 현상설계에서 그들의 안이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획안 도면참조) 그리나 1977년 슈트트가르트 국립미술관 현상설계에서 9명의 독일건축가와 3명의 외국건축가를 물리치고 1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전후 재건에 의해 유럽도시에서 야기되었던 건축적 손실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70년대의 시대적 상황속에서 여러모로 슈트트가르트 계획안은 Stirling 에게 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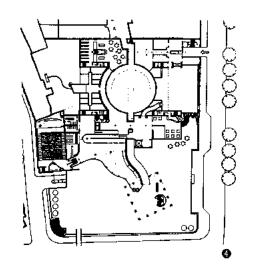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초기 두가지 계획안은 기존 건물의 보존과 함께 기념비적 건물을 창조하려는 시도에 의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들의 도시계획적 해결에 의해 새로운 질서감과 도시의 인간미가 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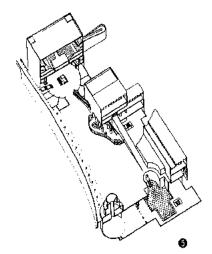
뒤셀도로프 프로젝트는 건축적으로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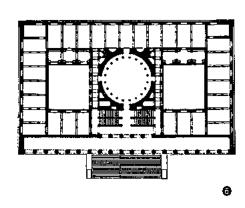
실패하였으나 슈트트가르트 설계에 있어서는 메우흥미있는 건축적 형태가 야기되었다. 즉 옥의공간과 동선연결을 위한 구조물로써 거대한 원통형건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설계이번에는 한때 비평이 있었다. 즉 몇몇 단체로부터의 반작용의 유발과 그 자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실제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뮌헨을림픽 경기장 설계건축가였던 Gunther Behnisch 와 슈트트가르트현상설계에서 낙선된 한 건축가는 Strirling 의 설계에 있어 대단한 이의를 제기했다. Frei Otto 를 비롯한 다른 건축가들과 함께 Behnisch 는 매스컴을 통하여 반대운동을 선개하였다. Stirling 은 1824년 Karl Friedrich Schinkel 의 배를린의 옛 박물관의 논평내용에서 보다도 더욱 강하게 한 평면에 의해 정해진 건축적 세부디태일의 꼴라쥐를 창조해 냈다.

수트트가르트의 한 공청회에서 본 계획안은 모더니즘의 정통성에 대한 Stirling 의 재구성으로써 간주하는 것에 의하여 위협을 느끼는 건축가들에 의해 다소 시대에 뒤지고 매우 기념비적이며 파시즘적이라고 공격을 받았다. 한때 영국의 전쟁포로였던 Behnisch 는 권위주의적 상징주의와 고전적 형태와의 방정식내에서 가장 솔직한 건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건축가였다. 그는 Stirling 의 디자인을 비실제적이며 비 인간적이라 평했으며 한 자유개방사회의 민주적 가본이념에 적합한 건축은 권위적인 대표성과 기념성, 예술작품의 추구를 떠난 매우 추상적이며 다소 비결정적인 성격(모호성)을

- 전면도로에서 본 슈트트가르트 국립미술관
- 🛾 1층평면도
 - 본 국립미술관을 위한 String 의 계획안은 불가피하게 배물린에 위치한 Schinkel의 옛 박물관과 비교하게 된다. 즉 String 의 원통형건물은 하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데 반하여 Schinkel의 원통형건물은 내부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Schinkel의 박물관은 String의 계획안에서 생략된 특징증의 하나인 형식적인 건물의 정면성을 지나고 있다.
- ③ Stiring 과 Willord 의 국립미술관의 개략적 도면 경사대지를 가로지르는 보행자통로 계획은 현상성계 지침서에 명시된 요구조건이었다. 계획된 보행자통로는 박물관 중심에 위치한 원통형건물을 관통하여 램프를 통하여 반대편 도로밀으로 연결되어 있다.







- Nordrhein Westfalen
 주립미술관 평면도(계획안),
 뒤셆도르프, 1975
- **6** Wallraf Richartz 박물관, 활른, 1974
- 옛 박물관 계획안,Scrinkel의 옛 박물관, 베를린
- 국립미술관 1층평면도(입구부분)
- 생 갤러리부분 1층평면도
- ⑤ 보행자 통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원통형 건물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tirling 은 기존의 건축적 흐름으로부터 아이러니한 이탈을 주장했으며 지리하며 의미없는 무표정의 건축적 유연성에 대하여 병들고 지쳤음을 고백하였고, 오늘날 건축의 보편적인 종말을 시인했다. 본 설계안을 공격하는 더욱 욕설적인 편지의 일부 사본이 박물관 기초밑에 묻혀있는 한 캡슐속에서 Stirling 의 상징물중의 하나, 즉 큰 사이즈의 푸른색 셔츠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항간의 야유적이며 비유적인 소문도 있었다.

그러나 1984년까지 이같은 논박은 지속되었으며 Stirling 은 그의 반대자를 생각하는 변질된 근대주의 건축가가 아니었음이 명백히 되었다.

오히려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건축역사의 끊임없는 전통내에서 근대주의의 재 통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의 건축작품으로서 본 국립미술관은 각기 다른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미술관은 매우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었으며 더욱 전통적인 공공 공간과 공공의 삶에 대한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체험하게 해주는 기회부여를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했다. 많은 이용객수는 본 미술관의 성패를 결정하였으며, 개관이후 첫 6개월 동안 거의 백만명을 육박하는 이용객수는 슈트트가르트 국립미술관을 전독일 박물관 이용순위 52위에서 당당 1위로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다소 유연하며 권위적인 무대장치에 대한 관장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은 가운데 성취되었다. 차례로 갤러리개관의 종사와 더불어 미술관의 내부장치는 부분적으로 19세기 박물관의 우아한 감정적 고취를 부여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대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보행자통로의 중심인 갤러리의 기념비적인 원통형 건물은 슈트트가르트 시를 위한 자석과도 같은 새로운 공공 공간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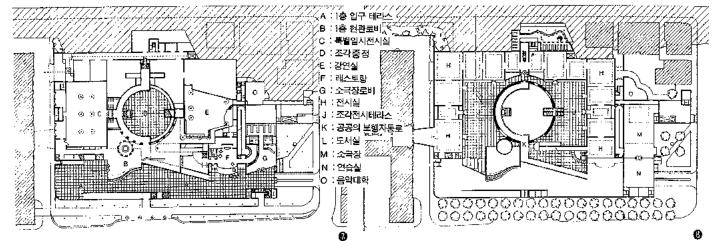
James Stirling 은 미술관의 상부골조 완공 기념식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전쟁의 파괴후에 전후재건을 통하여 형성된 슈트트가르트의 한 모퉁이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록 기념비적인 본 건물이 한 도시에 있어 근본적인 요소임을 믿는다할지라도 일부사람들은 이 건물이 너무 기념비적이라고 생각한다. 기념비적 건물이 없는 도시는 전혀 도시라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은 Eugen 도로의 옛 건물들을 보존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건물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 요구조건들의 절충과 타험은 건축에 있어 매우 필요하며 특히 대지 또는 이용자요구, 비용, 기술과의 절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Stirling 의 건축은 일반대중뿐아니라 전문건축가및 비평가에게까지 호소한다.

그는 공공석상에서 논쟁적인 화제를 피해왔으며 대신 슈트트가르트 자체는 학식과 재치와 폭넓은 유우머가 포함된 건축논평의 주제로써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본 미술박물판은 슈트트가르트의 독특한 맥락가운데 건물의 위치 또는 박물판으로써의 건물에 보다 적절하고 발전적인 것으로 믿고 있는 방법속에서 Stirling 에 의해 설정된 여러 상이한 시대로부터의 다양한 요소의 끌라쥐인 것이다.

도시근교에 위치한 근대주의 건축가장들에 의해 계획된 Weissenhofsiedlung 의 백파사전적인 작품목록과도 같은 주거단지계획은 Mies van der Rohe 와 Le Corbusier, 네덜란드의 J.J.P.Qud 외다수인의 유럽건축가들의 협조속에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은 이곳 국립미술관의 맥락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인 것이다. Stirling 은 슈트트가르트의 옛 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고전적인 19세기 박물관 계획을 다시 이곳에서 재생하였으며 이에 다소 변형을 가했다.

원통형의 중심공간에 계획안의 촛점을 맞추는 대신에 Stirling 은 건물벽의부 영역과 조화되지 못하고 떠있는 듯한 박물관 외부에 원통형건물을 배치하여 동선체계와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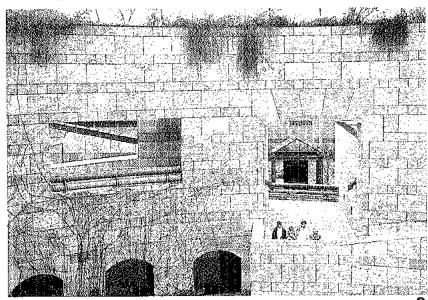


상설미술관으로써의 규칙성은 꼬르뷰지에의 건축특성과 유사하게 임시특별전시공간의 자유로운 평면과 상호 결합하여 균형을 이룬다.

박물관 정면에 계획된 강철트러스 창문틀에 의한 유리벽체 구성은 미술박물관이 지난 근본적으로 다른 건축디테일 요소로써 그 같은 구조는 Stirling 자신에 의해 고안된 재료의 이용을 위한 문법과도 같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로써 건물입구는 강철과 유리에 의한 구성주외적인 캐노피에 의해 형성되었다. 다시금 엄격한 규칙은 그들 외부설비의스케일에 적용되었다. 즉 갤러리입구 상부에 3개의트러스형 모듈, 극장입구 상부에 2개외 트러스형모듈, 박물관 직원입구상부에 1개의 트러스형모듈 등을 각각 배치했다. 또 다른 위계가 창문구조에까지 적용되었는데, 즉 직원입구 상부에 부관장을 위한 조그마한 창문과 바로 그 위에는 박물관장을 위한 큰 창문을 배치했다.

건물자체는 건축박물관과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즉 고대이집트로부터 러시아의 구성주의에 이르는 요소들의 집합과 Beaubourg 로부터 고대 시실리점에 이르는 영역까지의 폭넓은 인용을 들 수 있다. 본 국립미술관을 Stirling 자신의 기억할 만한 사물들로부터 이루어진 개인 박물관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로마의 Nolli 계획에 대한 그의 재계획은 그의 자신의 건물로만 구성된 도시를 요구했다. 많은 시간동안의 이같은 내용의 반영노력은 도면상의 수많은 계획을 야기시켰는데 예를들어 한 현관부분에서 Surrey에 있는 Olivetti 수련센타의 독특한 밝은 노란색의 버섯같은 모양의 기둥은 마치 유리로써 이루어진 상자내에 진열되어 있는것 같이 보인다.

국림미술관건물은 현대미술의 상설전시를 위한 전시실과 임시특별전시를 위한 전시공간, 극장, 도서관, 사무실, 레스토랑, 반지하층 구조의 지하주차장시설을 포함한 공간 Complex 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은 Georg Gottlob Barth 에 의해 계획된 1838년의 초기박물관건물과 연관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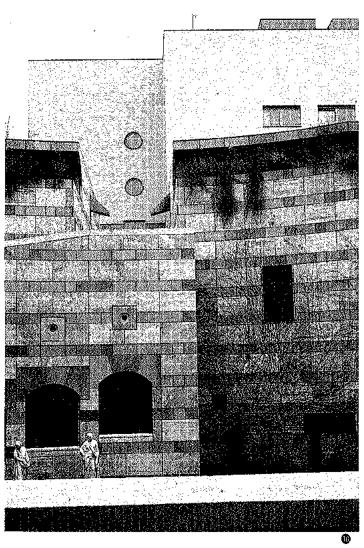
슈트트가르트의 중심지로부터 약간 경사진 구릉지대에 세워졌다. 건물대지는 전후도시계획 정책의 더욱 비참한 혁신중의 하나인 나무구조의 도로망을 도시고속로망으로 개조시킨 도시의 역사적 중심부분과 분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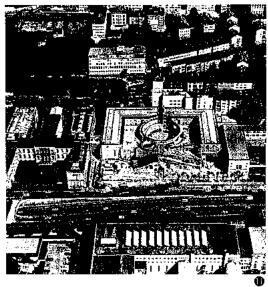
Stirling 은 대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경사를 넓은 전면도로를 향하여 계단식의 일련의 테라스구조로 바꾸어 놓았으며, 박물관은 새로이 형성된 레벨상에서 계획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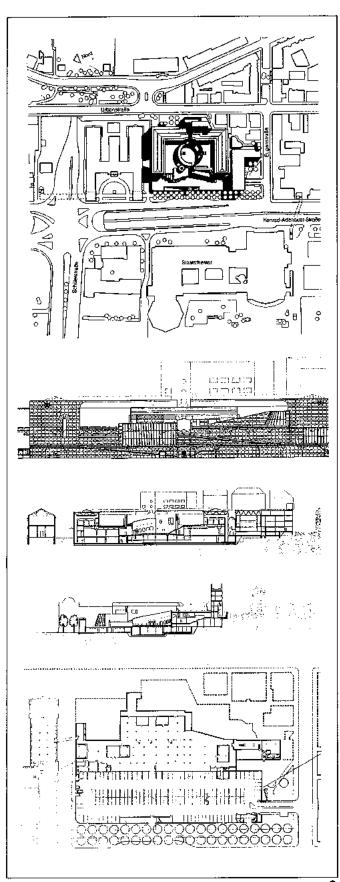
다시 이는 그곳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보행자통로에 의해 다시 세분된다.

건물은 옛 박물관건물의 형태구성에서 비롯된 U 자형의 중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정중심에 우뚝솟은 원통형건물은 창문개구부와 갤러리내부의 공간형태속에 벽체의 형상을 서로 변화시켜주며, 박물관 자체로부터 또는 이를 넘어서 가시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전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된 Void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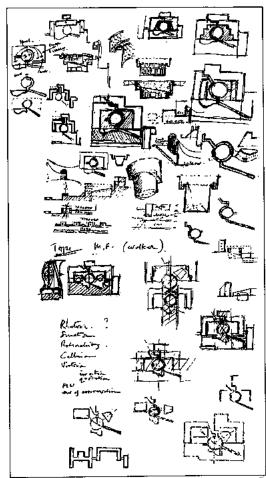
원통형 건물부분의 한쪽부분은 곡선을 이루며 굽이치는 듯한 유리창문으로 구성된 벽체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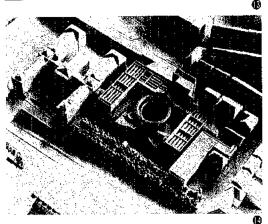






유도되는 특별전시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입구가 배치되었다. 건물테라스의 맑은 자홍색과 하늘색의 파이프 모양의 손잡이난간과 더불어 건물정면벽의 초록색 창살은 석회석과 사석의 밴드로 구성된 말끔한 표면을 지닌 석벽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변형주의의 거절과 공간의 위계 및 질서, 형식적인 도면계획의 과제로서의 건축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본 국립미술판 건물은 일면 근대주의 성격을 지닌 건축으로써도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경시에 대한 전형적인 영국적 시도—자체의 조롱(경멸)에 대한 특별한 익살로 맞서는—는 본 박물관 건물의 설계에서는 매우 전지한 건축적 시도로써 그 모습을 달리했다.

3. Ungers, Oswald Mathias

1926년 독일 Kaiseresch 에서 출생하여 칼스루에 공파대학 교수인 Egon Eiermann 밑에서 수확하고 1950년 쾰른에서 개인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963년부터 68년까지 배를란공과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1969년 아후부터 뉴욕 Itaca Correll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다. 1959년 쾰른의 자택설계와 1964~1966년 베를린의 국경지역에 주거블록설계등을 포함한 수많은 주거용건물을 설계한후 60년대 중반에 들어서 그의 실제적인 건축활동은 불운의 중단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에 대한 그의 지속적 활동은 한동안 도면상으로만 계속되었으며 결국, 수많은 중요한 현상설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Euschede 의 기숙사현상설계(1964), 베를린 Tiergarten 지역의 국립박물관(1965), 도시재정비계획 현상설계(1973), 쾰른의 유명한 Wallraf - Richartz 박물관(1975), 마부르크 Ritter 도로의 주거지구 상세계획(1976) 등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에 해당한다. 70년대 후반경에 Ungers 는 베를린 쾌테공원의 주맥(1980~82), 프랑크푸르트의 대형전시장(1980), 칼스루에 주립박물관(1980) 등의 작품을 통하여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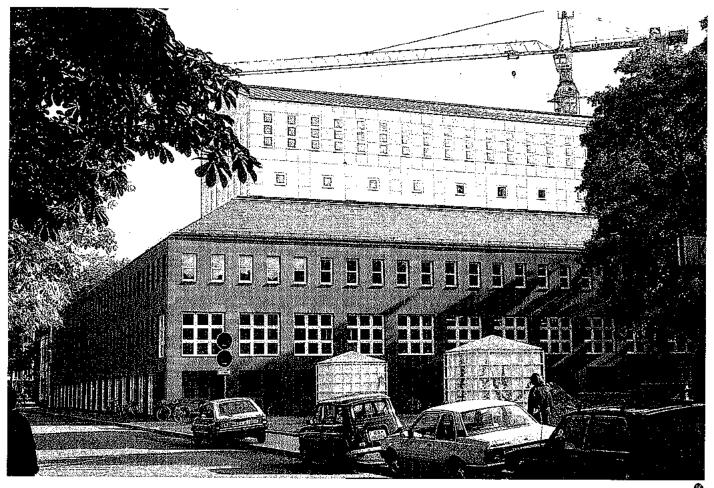
현재 독일 건축가인 Josef Paul Kleihues 와 더불어 Ungers 는 독일의 신합리주의 건축의 대표적 작가이며 그의 건축적 경향은 이탈리아 건축가인 Aldo Rossi 의 낭만주의 건축과 독일건축가 Karl Friedrich Schinkel 의 건축적 특성과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으며 그 가운데 강한 건축적 조형성의 추구는 그의 건축적 특성을 대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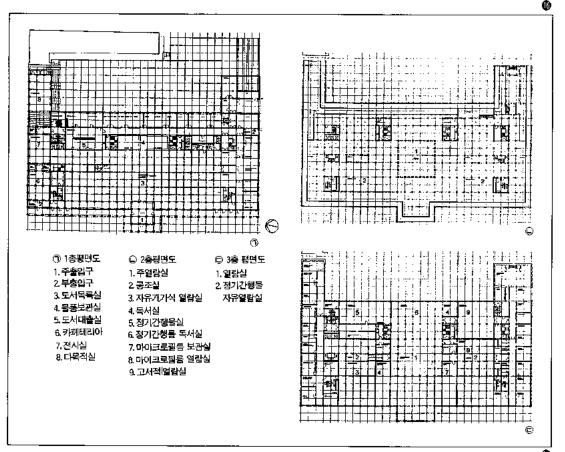
4. 서독 칼스루에의 주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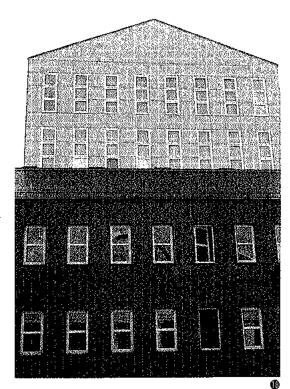
본 설계작품은 1980년에 행해졌던 현상설계공모전에서부터 비롯된다. 당시 공모전에서 O.M.Ungers 는 1등상을 받았으며 특히 Ungers 의 도시계획적인 기본구상은 삼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즉 본 설계건물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기존 건물 스테판 교회가 지니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전체적 상황을 19세기 말엽에 칼스루에 도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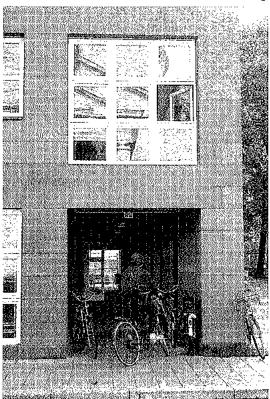


- 🚯 조각물이 전시되어 있는 중정부
- 전경
- 위로부터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1,2,
 차고 및 공조설비실 평면도
- ♠ James Stirling 의 초기스케치, 1977
- ◆ 국립미술관의 확장 및 소극장신축, 슈트트기르트, 1979~1984
- 추면도로에 면한 도서실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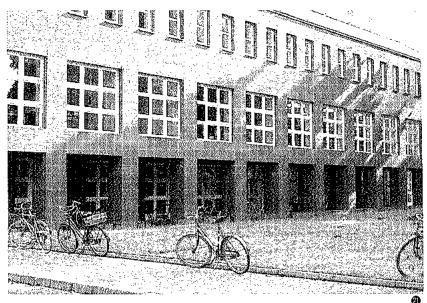








Ø



기본패턴을 설계했던 건축가이며 당시 도시계획가였던 Weinbrenner 의 기본구상에 입각하여 새로운 공간질서로 승화시킨 작품이었다고 설계논평을 하였다.

맞은 편 스테판 교회의 상부지붕 입면을 본 도서판 건물은 도시계획적 맥락에서 발췌하여 본 설계의 입면에 재 적용하였으며 양 건물은 동일한 Portikus 와 또한 동시에 독특한 평면형태를 지니고 있다.

1. 건축가 O.M.Ungers 의 기본구상

본 도서관건물의 매스는 붉은 색의 건물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 하부기본구조와 그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내부공간의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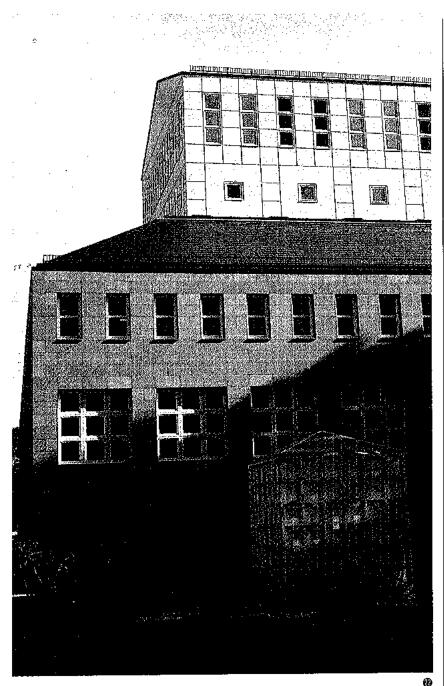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평면은 기존의 블록 기본설계패턴, 즉 토지담당관청과 Ritter 도로에 위치한 옛 건물로부터의 스케일을 적용하였으며 건물의 하부기본구조로부터 부상한 건물의 중심핵부분은 스테판 교회의 입면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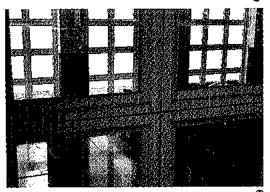
건물재료도 이같은 건축적 기본구상과 일치하여 선택되었다. 즉 건물의 외부하부 부분은 표면이 거친 돌과 슬레이트 지붕미감이며 상부의 중심핵 부분은 보다 섬세한 외부마감에 스테판 교회와의 도시계획적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판마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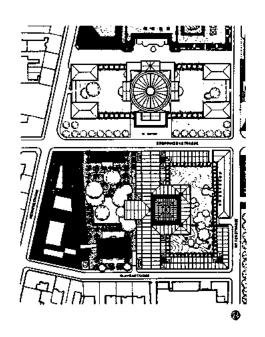
마주보고 서있는 뚜렷한 두 건물의 일치되는 공간개념을 다시금 내부공간에도 연장하여 부여했다. 즉 건물중부분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건물메스를 유리마감된 연결부분과 부분적으로 1층부분에서 형성된 보이드(void)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사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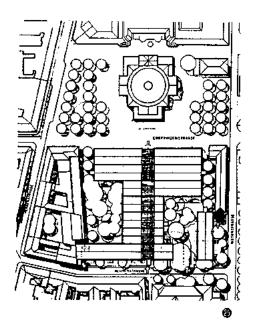
건물의 외부형태구성과 사용된 재료는 형식적이

- ① 각층평면도
- 건물의 하부기본구조와 중심부분
- ② 주출입구
- @ 입면도
- 🐠 서측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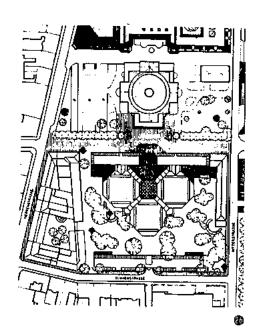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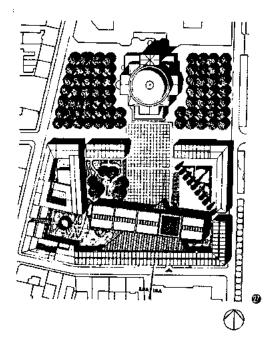




아닌 건축기본구상의 구체화라는 목적하에 이루어졌다. 이같은 기본구상은 도시계획적 맥락속에서 결정되었으며 건물의 용도와도 일치한다.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외부구조는 주로 커피숍과 같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 부수적인 용도 내지 행정실과 같은 자체내부용도로 쓰이며 도서관 중심핵 부분은 이용자공간 및 잡지열람실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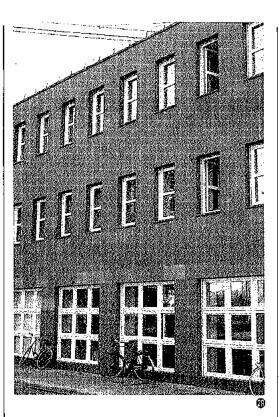
기능과 건물매스 구조외의 상호연관성을 통하여 도서관 사적영역 및 이용자영역이 공간적으로 세분되어 있다. 중심핵 부분과 중심부분을 싸고 있는





외곽부분의 분리부분, 즉 Void 부분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있어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실내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내부공간은 공간형성요소, 즉 벽체, 기둥, 천정, 바닥 등에 의해 다시금 세분되었다. 기술적인 설비부분은 공간의 정의를 위해서는 계획되지 않았으므로 가능한한 노출시키지는 않았다. 건물의 규모 및 건물의 정확한 배치 그리고 바닥마감처리형태등은 정방형의 틀 위에 이루어진 모듈형성에 따라 결정되어 졌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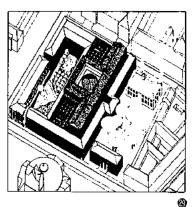
이상적인 비례감과 내부의 조용한 공간감은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써 본 설계 작품의 적절한 공간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2. 설계상의 변경

현상설계공모전 출품시의 설계내용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내용은 다소 변경되어졌다. 본 설계에 있어 주요 요소인 건물을 가로지르는 건물축이 전면 수정되었거나 일부 변경되어 졌다. 또한 내부의 오픈스페이스는 본래의 자체 상위성을 포기했다. 형태와 매우 금욕적인 엄격함과 연결되어 있는 다태일에 있어 완전함에까지 이르고 있는 공간적 억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전체 건물 면적은 13,800㎡에 이른다.

현재의 내부공간에 대강연실(원형의 지붕하부구조를 지닌 정방형의 평면부분)이 빠져있으나, 건물의 북동축 모서라에 있는 다목적 강연실에서 어떻게 공간볼륨과 건물외부분이 건물내부에서 공간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본 도서관 건물과 인접되어 있는 고전적인 주거건물과 스테판교회건물이 본 도서관건물의 딱딱한 형태제한과 그들이 지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로운 조회속에 상호연관되어 있는 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파악되어질 수 있다.



- 🕏 주립도서관 외벽모서리 상세
- ② 다목적 강연실
- 현상설계 1등작 배치도. Oswald Mathias Ungers, 필른
- 🕸 현상설계 2등작
- p 면이날에 28억 Gerhard Assem, 칼스루에(서록)
- ② 현상설계 3등작
- R.Hoinkis, D.Stahi, 칼스루에
- 🐠 현상설계 4등작
- Hans Stadler, Gregor Kuner, 칼스루에
- 🐠 주립도서관 북측임면
- 🐠 공모작품의 엑소노메트릭

亭子建築의 實例와 -현대적인 응용요소 -

Example of Arbour Architecture and ——
It's Contemperary Application ——



1 . 머리말

관광지와 휴양지를 개발하려는 정책에 힘입어 여러곳에서 한국적인 멋과 분위기를 나타내려는 기본의도에 반하여 실재로 세워지는 건물은 천편일율적으로 틀에 박힌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관광지의 토산품매점이라든가 경관이 적당한 곳에서 팔각정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이라도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정자라면 당연히 팔각정이어야 한다는 통속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것 같다. "때로는 대지에 여유가 있는 전원주택을 확보한 계층에서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한국적인 정자를 건축하려면 어떤 건물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식건축의 면적당 공사비가 호화주택 공사비 이상으로 높은 현실을 간과하였기에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지만, 공사비를 제처놓고라도 상대방이 예상하는 정자의 모습은 으레히 팔각정인 경우가 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팔각정은 황제가 지을 수 있으며 君主인 임금은 육각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불문률이 있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조시대의 궁궐내에서도 팔각정을 구경할 수가 없다. 극히 이례적으로 창덕궁에 사각평면에 지붕틀은 팔각형으로 구성한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기본은 사각형 평면인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옛제도가 무의미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습의 틀속에서도 한국적인 멋을 조화시켜 나간 조상들의 지혜로 이루어진 몇개이 정자를 살펴보고 계획의 의도와 구성기법들을 되새겨 봄으로써 현대적인 감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허다한 정자건축증 필자가 확보된 자료중에서 선택한 것이므로 여기에 소개된 정자가 정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 글에서 건물에 대한 평가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필자의 주판적인 견해라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2. 창경궁 함인정(瀬仁亭)

창경궁에서 명정전 뒷편인 서측에 위치한 함인정은 內殿에 속하는 건물로서 政事를 다루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하겠다. 원래는 성종15년(1484)에 仁陽殿을 이자리에 세웠는데 임진왜란때 소실되고 광해8년(1616)에 중건하였으나 인조2년 이팔의 난에 다시 소실되었고 인조11년(1633)에 중건된다.

궁궐지에서는 인조11년에 仁慶宮의 極仁堂을 창경궁에 이건하여 함인정으로 改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인조11년의 ≪昌慶宮修理所儀軌≫에 의하면

"涵仁亭 一間四面退九間(慶壽殿 後行閣 五間移造 四間新造)"라 하여 인경공의 경수전 행각건물을 이건하고 부족한 목재를 보충하여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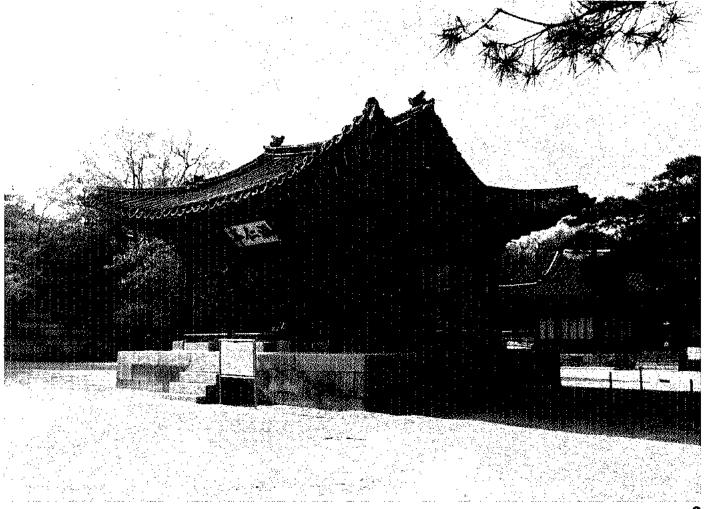
그리고 인경궁의 함인당 건물을 철거하여 통명전 西册房과 東行閣 남변5間 등을 건립한 가록이 있으므로 인경궁의 함인당을 철거하여 창경궁 중수에 사용된 사실과 인양전 터에 건립한 건물명칭을 함인정으로 개명한 사실때문에 후세에 궁궐지를 기록하면서 와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효종3년(1652)에는 창경궁 건물을 보수할 때에 함인정도 보수공사가 있었으나 순조30년(1830)의 화재로 또다시 소실된 것을 순조34년에 중건하였다.

張順籬

종합견축사사무소 삼성 · 탑 by Chang, Soon-Yong





따라서 현존하는 함인정은 그 후 수차례의 보수공사를 겪기는 하였지만 주요구조부는 순조代에 이륙된 건물이다.

특히 영조는 文武의 파거에서 장원급제한 사람들을 접견하는 장소로 함인정을 이용하였으며, 창덕궁의 映花堂은 試官이 임석하여 파거를 차르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장원급제한 사람을 축하하는 장소로는 함인정을 사용하는 등 공식적인 행사에도 이용되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건물은 세벌대의 장대석 기단위에 네모기등을 사용한 정면3간, 측면3간의 이익공 겹치마 팔작지붕이며 용마루 양끝에는 용두를 설치하고 사래 마구리에는 吐首로 치장하였다.

남측면에 걸린 현관은 흰바탕에 먹글씨로 양각되어 있으며, 英祖御製의 함인정小序 기록에 의하면 함인이란 의미는 "海東의 萬物이 仁義에 젖는다"라는 뜻으로 유교의 주요사상을 건물명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함인정 전경오른편에 환경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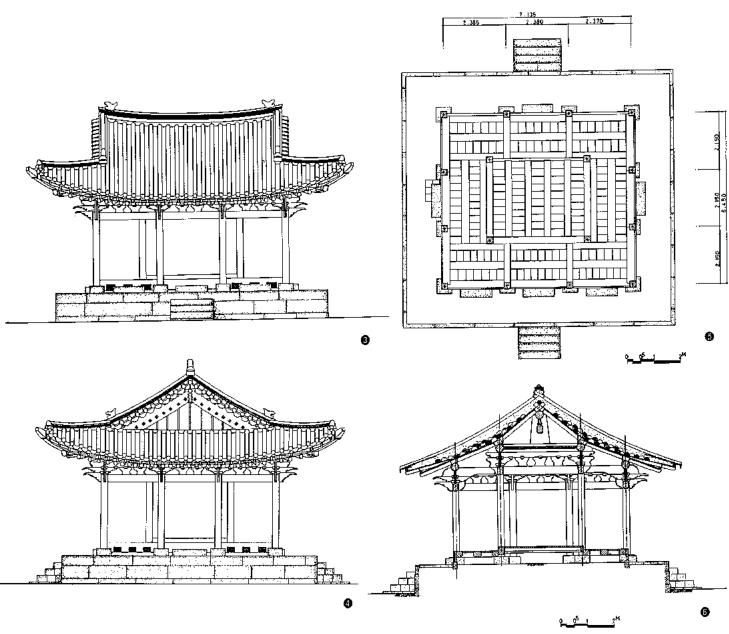
② 주변정비공사시의 함인전 정면

涵仁亭銘 幷小序는 함인정 高柱의 동측외벽에 걸려있는데 영조6년(1730)에 쓴 것으로 함인정이 건립된 역사와 위치 그리고 愛國愛民의 취지를 銘으로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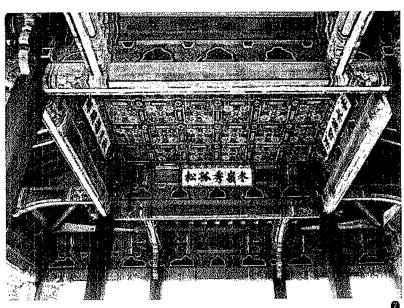
궁궐자에서는 이익공에 柱高 9尺에 정면의 어칸만 8尺이고 기타는 모두 7尺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황의 柱高는 2.75m이고 측면3간은 모두 2.15m로서 기록과 일치하나 정면의 3간은 모두 2.38m(약 8尺)로 기록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건물면적은 46㎡(약 14평)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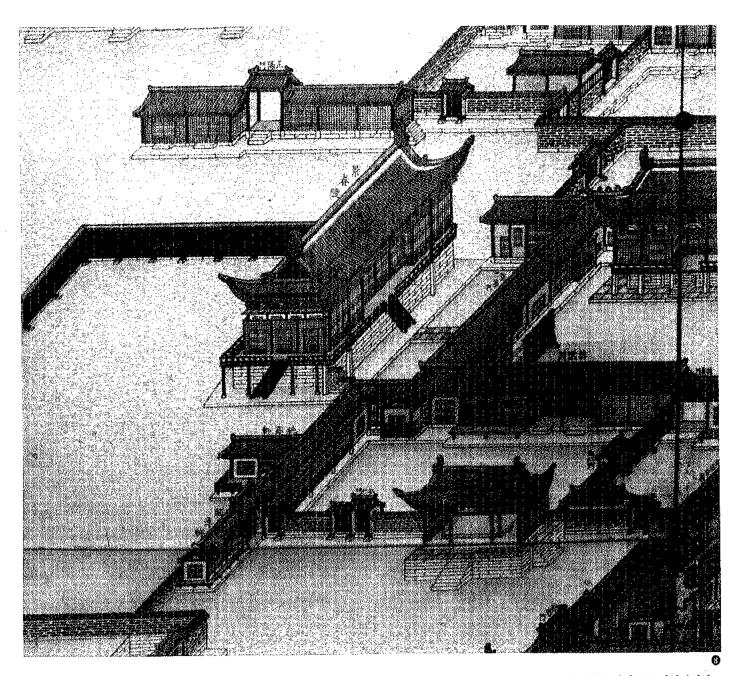
내부 고주의 배치는 외부 주칸의 간격과는 다르게 하여 정면부 간사이가 3.69 m (약 12자)에 측면이 3.064 m (약 10자)로 중앙칸을 넓게 잡고 있어 외진기등위의 퇴량이 고주위의 창방에 걸터앉게 되어 있으며, 바닥은 전부 우물마루로 깔았으나 중앙칸만은 바닥을 15cm정도 높이 설치하였다.

純祖代에 창경궁에 큰 화재로 건물들이 소설되기 전인 1826년에서 1830년 사이에



- ❸ 정면도
- 🚱 측면도
- 🗗 평면도
- ⑤ 종단면도
- 한자와 지붕구조
- 東網圈의 험안정 부분 正陽門행각 아래로 景春殿이 보이고 오른쪽에 환경전과 그 남쪽 행각에 恭慰閣이 있으며 마당 남축의 담장앞에 함인정이 보인다. 함안정 왼편으로는 經亦軒이 돌출되고 그 이래로 風淳軒이 있다.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東闕圖에서는 함인정의 북측기둥에서 담장이 좌우로 연속되어 함인정 앞으로는 넓직한 뜰이 형성되고 이 뜰 동편에는 賓陽門이 있어 正殿인 明政殿으로 통하게 되어있다. 또한 이 건물은 현재로는 사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으나 동궐도와 순조代의 창경궁 영건도감의궤의 기록을 살펴보면 남측면을 제외한 삼면에는 井字살 분합문이 설치되었던 건물로서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소규모 행사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하도록 건물의 배치나 구성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함인정 뒤편의 담장이 철거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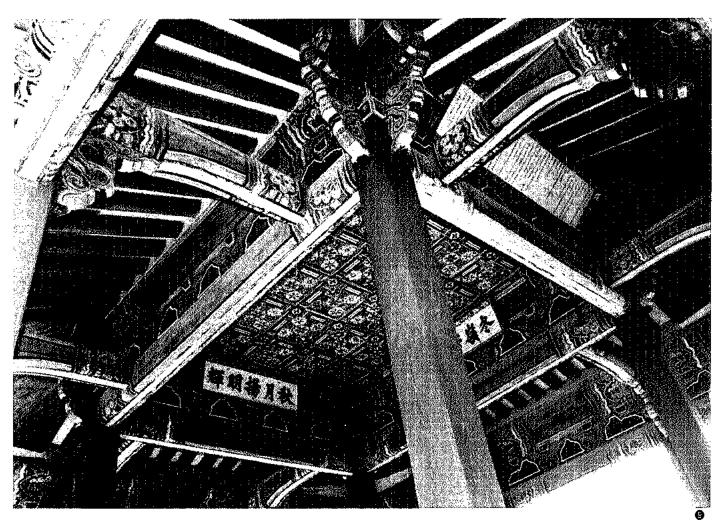
행각들도 제거되어 없으므로 평지에 세운 단순한 정자건물처럼 보이지만 함인정 뒤편은 환경전 남행각의 뜰이 되어 그 뒤의 환경전과 통하게 된다.

따라서 궁중의 연회가 이곳에서 거행된다면 왕은 內殿인 환경전에서 곧바로 함인정의 단상에 임석할 수 있도록 된것이다.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서는 그러한 목적에 사용될 "一間巨里 五案障子 一隻"을 중앙칸의 북측면에 설치하여 御座의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단에는 남측면과 북측면에 4단의 장대석 계단이 설치되고 기단위로는 남측면에 디딤돌을 매칸마다 설치하고 나머지 삼면에는 중앙칸에만 다딤돌을 설치하였다. 북측면을 제외한 삼면에는 고막이돌 위로 마루귀틀에 덧붙인 판이 있으며 여기에

마루귀들에 덧붙인 판이 ᆻ으며 역가에 마루밑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를 교살창 모습으로 투각하고 있다. 이 부재를 同儀軌에서는 腫隅라 기록하고 있다. 목수들의 말로는 여모판이라 하는 것 같은데 여모를 한문으로 기록하면서 音이 비슷한 한자를 차용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 양식의 외진칸에는 화반을 두개씩 설치하고 내진칸에는 전후면에 화반을 4개씩, 측면에는 3개씩 설치하였고 사면의 퇴칸부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이고 중앙칸만은 굴도리 높이로



소란반자를 설치한역 메칸마다 五色의 꽃이 만발한 단청으로 치장하였다. 이 반자의 이래쪽 벽에는 동서남북편에 각각 春秋夏冬이 첫글자로 들어간 五言詩를 액자에 담아 걸어놓았다.

추녀의 안쪽길이에 비해 처마 밖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추녀의 內端部가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녀를 동여맨 띠쇠가 고주의 중도라에서 창망까지 길게 늘이고 못으로 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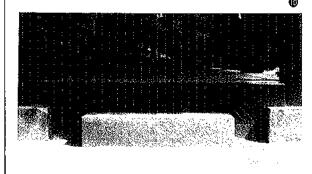
이 건물의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처마의 추녀부분이 유난히 솟구쳐 올라 있는 점이며 궁궐의 건물로서는 이색적인 모습인 것이다. 중앙부의 처마끝과 사례부분의 부연평고대의 높이차는 1m 정도로서 소규모 건물에서의 보편적인 높이차이 보다 크게되어 선자부분의 부연은 外端部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며 그런 결과로 추녀마루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처마가 이와같이 추녀부분에서 과하게 치켜진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國政에서 잠시 벗어나 이 건물

- ④ 내부구조
 - 高柱 창방과 퇴랑의 결구와 중도리 밑의 초각된 모습이 조화롭다.
- 중앙칸에서 본 동편 화계
- 마무구성과 환기공 초석사이로 다딤돌을 놓고 마루 밑의 환기를 위하여 널판에 무각하였다.
- 약 익공 상세 익공 위로 탁량의 머리가 초각되어 굴도리를 받는다.
- 🚯 익공상세도





내부에서 휴식을 취할 때에 주변의 서편과 남편의 높은 석축위의 지형에 벌여진 수목의 경관을 올려보기 위해서는 추녀를 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주변의 지형을 고려한 의도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는 연화장소로 사용될 때에는 건물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극적인 효과를 주어 궁궐의 장엄함을 보여주기 위한 배려로도 생각할 수 있다.

생께로는 위의 두가지 이유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지면에서 반사된 부드러운 광선이 처마와 실내로 더밝게 유입되도록 하여 陽明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부에서 보는 사람과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 다같이 和樂하는 분위기로 만들려는 배려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건물에는 현대적인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부드러운 반사광선을 처마와 건물내부로 밝게 유입시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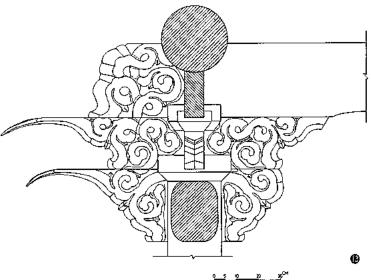
② 외부의 경치를 기둥과 창방, 마루귀틀로 구성되는 액자로 구획시켜 연속되는 주변경관을 선택적으로 분할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여기에 주변의 창호를 여닫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내부이용에서의 경관변화의 다양성.

③ 정자건축의 한가지 특성이기도 한것으로서 건물 그자체를 하나의 조형예술로 만들어 외부에서 건물의 감상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내부로 진입하고 싶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건물내외간의 심리적인 연결기법.

④ 건물의 내부를 다시 소규모로 분할하여 고주를 세움으로써 내부에 앉아있을 때에 느껴지는 심리적인 편안함을 창출하는 기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건물의 색채구성과 재료의 질감, 디테일 처리등의 방법에서도 음미해야할 요소들이 많지만 사각형의 정자건물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예로서 함인정을 다시 찾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美觀地區 制度와 運營에 關한 調査硏究

一6大都市 建築士 및 關聯公務員 설문조시결과를 中心으로ー

1. 서 론

地域地區制는 토지어용규제의 한 수단으로서 도시내 커뮤니티의 개발단계에서 선택되어지는바 각 토지이용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주고 토지이용 공간들이 합리적인 관계에 놓여 있게끔 유도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며 그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이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 구체화된다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지역지구제는 위의 指定目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즉 대상지역의 廣域性으로 소규모 지구내의 용통성있는 계획이 어렵고 양적인 면에 치중하여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규제로 일관하여 토지이용의 구성요소간에 질적환경개선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동이 그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관리체제에서는 指示的인 규제방식인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용도지역제와 더불어 미사적인 규제수단인 건축규제에 따른 건축행위의 규제를 함께 사용하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규제와 관리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美觀地區制度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도시의 일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도시구조와의 조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보완제도의 하나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은 평면적인 규제뿐만아니라 형태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건축행위의 규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미관지구제도는 도시계획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규제와 함께 도시공간의 조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이어야 하는데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주로 운영인력의 전문적 지식 이해의 결여와 운영방식의 未熟知둥 근시안적 시각에서의 제도운영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관지구제도의 운용방침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기초연구로 대략 아래와 같은 두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로, 미관지구제도의 관련전문가인 공무원과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첫째로, 우리나라 6대도시 미관지구의 지정 의의와

건축사를 대상으로 미관지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미관지구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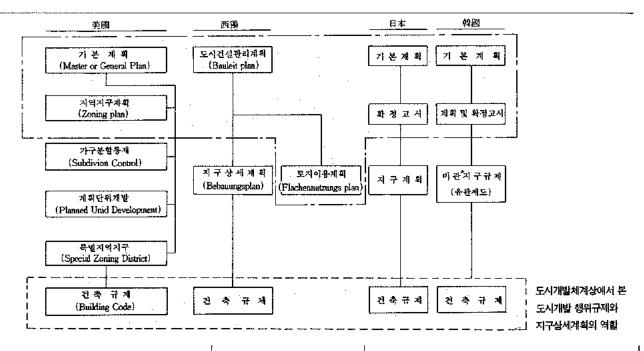
2. 지역지구제의 한계성과 미관지구 지정의 의의

일반적으로 지역지구제는 건강, 안녕, 편의 및 일반의 복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의 토지 및 건축물을 통제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역지구제는 適住性의 확보 및 각 지역지구의 활동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며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크게 대별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용도규제(Use Regulation)로서 개발된 토지 및 건물이 지정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으로서 규제상의 융통성이 결여되기 싶다. 이를 보완키 위해 미국 등 서구지역의 지역지구제는 토지나 건물의 사용규제물 경작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의 잦은 변경을 수반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地域細分類인데 이것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용도에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지정된 지구내에서는 허용된 용도만을 열거하고 있다.

둘째, 밀도규제(Density Control)로서 地地 이용규제 및 주거지역의 적주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도시에서는 건물의 높이, 건물의 전면 · 측면 · 후면의 최소폭, 대지최소면적, 대지의 최소공지율 및 노외주차장 등을 규제해 왔으며 최근에는 신축성있는 설계를 위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도입시킬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宋昇鎮 종합건축사사무소 세원



세째, 환경규제(Per Formance Standand)는 주로 주택지구와 인접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를 규제하는 것으로 행위(또는 환경) 기준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3가지의 규제범위를 중심으로 지역지구제에서 수용하고 있는 규제의 세부내용을 열거해 보면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다.

- 토지 및 건물의 용도규제
- 구조물 및 표식의 규제
- 고도(Height) 규제
- 건물 형태규제
- 환경규제
- 대지면적규제
- 정원규제 및 공지율
- 노외주차장 및 하역장과 지역지구 채분의 서행을 규제하는 세부조항

한편, 현행의 국내 지역지구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는 도시설계지역 전체를 단일 대상으로 하여 그 토지이용을 평면적으로 분리하여 활동의 효율화 균절화를 꾀함으로써 도시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몇가지의 기본적 한계성을 지닌다.

첫째로, 현행의 농도지역제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 규제수단이라는데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으로서 축 도시를 몇개의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내의 소규모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에 융통성있게 적응할 수 없다.

둘째로 규제방식이 평면적 규제수단이라는데 한계성이 노출되는 바, 개별토지의 용도만을 규제하는 수단이어서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는 3차원적 환경에 대해서는 관계할 수 없다.

세째로, 현행제도와 도시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몇개의 용도로 묶어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심업무 상업지와 같은 기성 시가지에서의 복합적인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없다. 내째로, 용도지역에 따른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모든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각 도시의 투수한 여건에 적합한 도시 환경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행의 용도지역제에 의한 규제 제도는 거시적 규제수단인 용도지역제를 미시적 규제수단인 건축규제에 직접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제가 갖고 있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兩者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규제 수단으로서의 제도인 地區詳細計劃(District Detailsplan)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행제도에도 그와 같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적이나마 몇개의

유사관련제도(토지구확정리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도사재개발사업, 특정가구정비지구 등)가 마련되어 왔다.

기존의 지역지구제내에 명기되어 있는 여러 지역, 지구 및 구역의 규제방식증 지역상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로 미판지구내의 건축물의 규제방식이 있다.

지역지구제도상 미관이라는 개념은 건축물의 설계와 형태, 외적 모양의 통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지역상세계획의 필요성중 두번째 항목과 일치하게 되는 바 도시계획 실현 체제, 도시미관의 보존 및 관리와 도시계획과 집행계획간의 연계수단인 것이다.

예컨데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지구를 지정하고 외관을 통제·제한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구조설비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게 된다.

3. 국내 미관지구의 운영현황

1. 주요규제내용

한국의 6대도시 비관지구에 관한 운용지침은 建築條例에 명기되어 법제화되고 있는 바 전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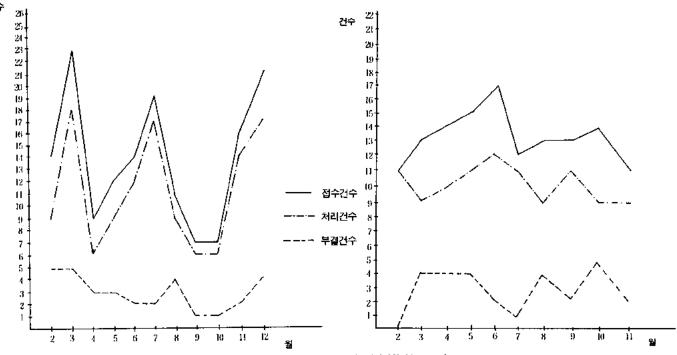


그림1 미관심의 운영 현황, 대전직할시(1987~88)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지구의 세분, 건축심의, 용도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모양,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제사항을 연계되는 관련조항별로 그룹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관지구의 종별 : 지구의 세분. 둘째, 지구별 용도의 제한

세째, 지구별 건축물의 밀도와 행위규제에 관한 사항. 이상의 관련조항을 기반으로 국내 미관지구의 규제내용과 특성을 종합정리 해보면 미관지구의 종류를 5종류로서 세분하여 그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중에서 엄격한 미관지구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심외가 이루어지는 곳은 1종 및 2종 미관지구이며 토지용도상 상업지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를 통한 개별건축행위의 조정을 통해 도시미관의 조정 및 보완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항목을 정리해 보면 미관지구 종별에 따라 건축용도와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규모(건축물의 앞·옆면길이), 부속건축물 및 부수시설 등 기타 건축물의 모양에 대한 미관상의 규제내용을 명기함에 따라 구체적인 미관지구내 건축행위에 대한 조정지침을 설정해 주고 있다. 특히, 도시설계 차원에서의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상호조화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시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의 기술없이 대략 몇층 이상 몇m 이상 등으로 규모의 최소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축되어진 건축물끼리의 조화나 연계관계의 설정에 많은 무리가 뒤따른다. 다만 대지안의 공지의 조항에서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 규정은 가능한 도로변에 접근시켜 많은 容積을 확보하려는 건축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볼 때 미관도로변상의 건축물의 지정선이 일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많은 효과를 거두는 사항이다.

도시외관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건축물의 모양에 대한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색체, 외관 및 기타 부설물에 대한 제한 및 규제의 가능성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는 사항이 명기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 지구별 특성에 따라 매우 相異한 내용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려가 불비되어 있는 실정에 처해있다.

이상과 같은 미관지구내 규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내의 미관지구제도는 도시설계차원에서 고래해야 할 미관지구내 건축물 상호간의 연계성과 기존 도시구조와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상세계확의 내용 등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관지구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인 것이다.

2. 미관심의제도의 운영현황

미관지구에 판한 건축조례와 더불어 미관지구제도의 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미관지구내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와 건축허가 관련이다. 따라서 현행 미관지구운영의 실태를 파악키 위해 미관지구 건축설계의 인가처리와 부결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해 보기로 한다.

대전시 중심으로 미관 심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그림1)와 같이 심의통과와 부결의 구성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월별 많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1987, 1988년 2년간의 미관지구내 건축설계허가 상황을 살펴보면 1987년 153건의 설계가 접수되어 그중의 약 20%인 30건이 부결되었고 88년에는 133건 접수에 28건이 부결된바 있다. 두해만을 단순비교하면 무결된 설계안의 수는 비슷하나 부결되는 사안의 구성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별의 통과 및 부결사안의 구성비율 역시 뚜렷한 경향 특성을 발견할수 없다. 부결된 설계안을 대상으로 부결된 이유를 조사해 보았는데 많은경우 도시 설계 차원의 건축행위규제라는 기존의 미관지구 운영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들이 부결의 이유들로 명시되어 있었다(표1). 구체적으로 평면설계의 내용과 입면이상이해서 설계도의 작성에 잘못이 있다던가. 구조안전상의 불합리, 주차배치가 주차조례에 불합리하다는 등의 경우들이 지적되었다.

한편 건축물의 외관과 주변건물과의 조화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관점에서 부결된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판단기준하에서 정확히 어느 부위가 미관상 적당치 못하다는 심의내용이 아니라 입면계획이 미흡하다든가 기존부분과 중축부분의 조화성이 부족하다는 등, 상당히 모호한 지적내용이 심의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도시설계지침이 마련되어 정확히 그 지침의 준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유성지역일원의 도시설계지역은 입면계획의 미흡에 창문위치와 처마선 배열의 문제점, 지붕처리 등의 사항에서 개선 조항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인접부분과 신축건물의 연계화 추구라는 도시설계의 주요접근내용을 취급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미관지구 운영상에서 감안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4. 미관지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대도시 건축사 및 관련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분석

現行 국내 미관지구의 운영방향 전반에 대해 조사 분석키 위해 本節에서는 국내 6대도시의 미관지구운영에 대해 사용자 및 규제자의 의식조시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요구수준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본 조사는 규제자측으로서 미관지구의 운영주체인 행정당국의 관계 공무원, 사용자측으로는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당해 건축주(Client)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서 구체적인 미관지구운영방침에 대해 답변자로서 건축사를 선택한 것이다.

본 조사를 위해 미국의 6대도시의 건축사 및 공무원들에게 1천때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도시의 건축사협회를 통해 수합도록 하였는 바건축사의 경우 624부를 발송하여 186부가 화신되어 39.8%의 회수율을 보였다. 각 도시별 설문지 배부와 회수의 통계는 표2와 같다.

2. 미관지구의 운영방향과 개선점

미관지구의 운영에 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질의하였는 바 주요한 질의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관지구의 운영과 관련된 공무원 건축사들의 애로사항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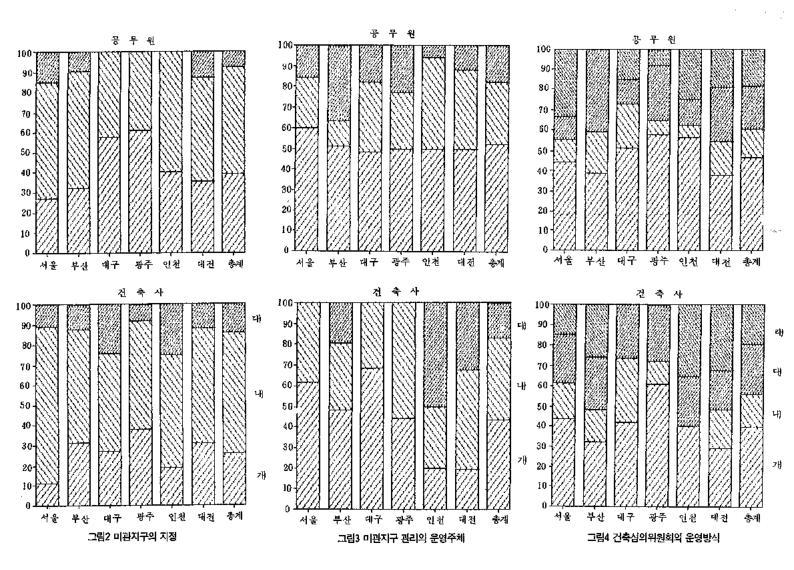
둘째, 미관지구의 지정과 운영주체에 관한 의견 세째,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중점적으로 질의 · 응답되었다.

표1. 미관심의 부결지적사항

년 도				1	9	8	7							1	9	8	8				
지적사항 월별	2	3	4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9	10	11	12
도시미관 부적합		•	•								٠	•	-								
기존건물과의 조화	Ţ	Π		٠						٠	•	•									•
도시설계 지킴 불이행		Γ			•				•			•	•								
배치와 진입. 주차장 처리	Т	٠							•			•				•		•			
평면계획과 입면처리 부조화		•	٠	٠		٠	٠				•			•	•	•	•		•	•	•
구조상 부적합	Τ	•		•	•			•	•			•	•	•	•						
외장 색체 처리		•		Г	Г	Γ			•		•					•					•
도면 불일치			•	Г	Ī			•											l		
신청 서식 불비																	•	•			
기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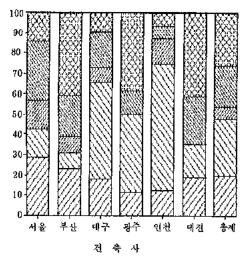
표2 설문지 배포 및 회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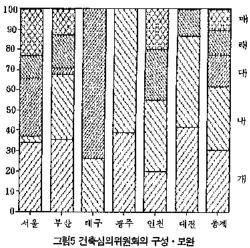
116	서		욻	釜		Щ	大		邱	光		州	仁		Щ	大		Ħ	-
地域	發信	回信	%	發信	回信	V/a	發信		%		回信	%		回信	%	發 信	回信	%	
建築士	200	45	22.5	80	25	31.3	80	33	41.3	80	26	32.5	50	15	3 0.3	132	42	31.3	624 발송 186 회신 29.8%
公務員	86	30	34.9	50	31	62.0	50	19	38.0	50	19	38.5	70	20	28.6	70	31	44.3	376 발송 150 희신 39.8%



- 그렇2) 현행 미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그 과정이나 내용중에서 교실점이 있다면 개선지점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가) 미판지구 제정시 해당 도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청화나 설명회등이 필요하다.()
 - 나) 건축가나 해당 전문가들의 심의나 의견수합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 해야 한다.()
 - 다) 현행의 해당도시 건축조례로 충분하며 시의 미관지구지정은 합리적이다.()
- 그림 3) 필요하다면 어디로 바뀌어야 할까요?
 - 가) 건축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구청단위로 이첩하여 해당지역의 자율적 복성을 갖추도록함이 유리하다.()
 - 나) 현행의 미판 심외대상범위를 일부 개선하되 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 다) 시의 해당부서가 확장되어 전체를 모두 관찰해야 한다.()
- 그림4) 현행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개선할 항목은?
 - 가) 심의지침을 구체적으로 병기하고 일반에 공개하므로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나) 건축심의결과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 수정 및 보관에 될 수 있도록 한다.()
 - 다) 심의위원의 구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도시미관 중간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의 최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져야 한다.()
 - 라) 미관심의시 설계안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건축사의 설계방향 설명등이 필요하다.()







1)현행 미관지구운영상의 애로사항

관계 공무원과 건축사들에 대해 별도로 미관지구의 인·허가시의 어려웠던 점과 설계진행에서 곤란했던 점을 질의하였는바 대체적으로 운영방침에 대한 미숙지와 모호한 심의규정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설계허가업무에서 어려웠던 사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미관심의 부결 또는 조건부통과에 따라 건축사에게 설계심의를 수정토록 지시해야할 경우 심의내용의 전달에 어려움이 컸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미관지구내의 건축행위에 대해 본조항이 건축법에 지정되어 있는 규정이외에 별도의 규제사항으로 파악하여 건축주들이 항외할 경우 체계적인 답변이 어려웠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미관지구지정의 의의와 도시설계차원에서 본 일부지역 건축물간의 조화와 도시공간확보의 그림 5)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전문가는 ?

가) 조정천문가 () 나)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 () 다) 역사학자 () 라) 당해지역 도시주민대표 () 마) 기타 ()

관점등을 당해 공무원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들은 무엇보다도 건축미관심의가 지연될 경우 설계완료후 건축착공의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그 이외에 건축물의 크기나 색채등에 관한 규제사항이 모호하여 설계작업진행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결과 설계완료후 재수정되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운 점이 지적되었다.

2)미관지구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현행의 미관지구지정이 합리적인기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그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축 건축사의 14.4%, 공무원의 7%만이 합리적이라고 대답하였을 뿐 대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도시재정비계획시 일률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이나,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미관지구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도시에 따라서는 광주시의 경우 7.7%로서 타도시(11.9%)에 비해 도시내 미관지구지정의 합리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그림2 참조)

한편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미관지구의 운영주체를 시당국에서 타부처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5%가 찬동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해당구청등으로 이첩하여 해당지역의 자율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무원 43.8% 건축사 52.4%가 찬성하고 있다. (그림3참조) 3)건축심의위원회

미판지구의 실제적 관리의 핵심을 담당하는 주체는 當該 地域에 지어질 건축물의 미관에 대해 판단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축심의위원회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왜냐하면 미관지구의 해당건축조례를 만족시켜서 당해 市의 행정당국에 설계 여건을 접수시켰다 할지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미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지시할 경우 당해 건축사는 개선지시사항을 수정하여 재차 심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건축물을 시공토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규정이나 기준에 대해 건축사들의 가지는 구체적인 의문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건축심의이원회에서 건축물의 설계내용을 심의해 나아가는 심외지침을 구체적으로 미관지구의 실제적 관리의 핵심을 담당하는 주체는 當該 地域에 지어질 건축들의 미관에 대해 판단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축심의위원회에 달려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따끈지구상의 건축행위에 대한 도시설계차원의 규제 내용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인 대지안의 变地, 미관도로번의 시설물 설치제한 규정 및 건축물의 용적한계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도시치원의 규제에 대해 건축시나 공무원들 모두 궁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명기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건축사의 46.5%, 공무원의 39.9%가 같은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그림4 참조)

한편 도시미관의 增進이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이행키 위해서는 현행의 심의위원회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위원회의 구성인원으로는 교통전문가와 조경전문가가 지적되었다. 특히 교통관련 전문가와 보완 필요성을 공무원 30.5%, 건축사 28.2%가 찬성하고 있다.(그림5 참조)

3. 건축 및 건물형태 규제

1) 형태규제의 개선

미관지구상의 건축행위에 대한 도시설계차원의 규제 내용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인 대지안의 空地, 미관도로변의 시설물 설치제한 규정 및 건축물의 용적 한계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도시차원의 규제에 대해 건축사나 공무원들 모두 궁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미관지구의 운영중에서 건축주측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사적권리제한으로 여겨지기 쉬운 미관지구내 미관도로변의 후퇴규정 즉 대지안의 공지규제에 대해서 규제자측인 관계공무원(47.7%) 뿐만이 아니라 시행자측인 건축사들도 (설문조사자의 39.6%) 이 규정을 지켜나감으로써 미관도로변의 건물외벽선이 일관성있게 배열될 수 있으므로 도시설계차원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들의 36.9%가 사유재산권침해이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하고 있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후퇴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림6 참조)

미관도로변의 開放感 확보를 위해 시설불의 설치를 제한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시설물설치가능 항목을 도시 공공 목적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건에 찬성하고 있으며(57.9%) 건축사의 경우 현행의 일부 시설물제한 정도를 적합하다는 견해(38%)와 좀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32.6%)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그림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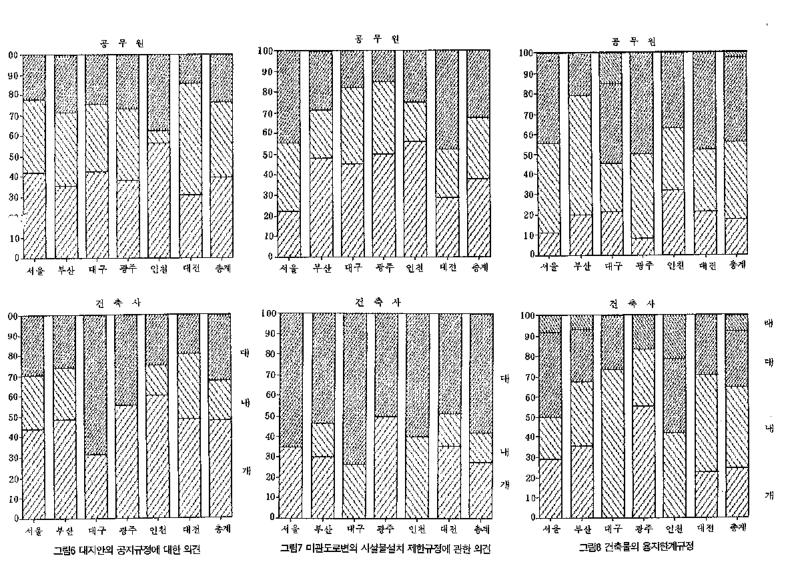
건축물의 용적한계에 대해서는 높이 앞면 및 옆면길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촌수한계('몇층 혹은 몇m 이상 또는 이하')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의 규제방식에 대해 공무원(40.1%), 건축사(38.5%) 모두 지역여건에 따라 명확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방식으로는 '몇층 혹은 몇m'로 정확히 寸數(Dimension)를 지정하여 주변건물과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적극적인 도시설계의 개념을 실제상황에 수용키 위해서는 구체적인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촌수제한의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개선보완의견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림8 참조) 2)형태규제상의 규제항목 첨가

현행의 형태규제로는 미관지구의 효율적 운용과 도시미관 중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기타 보완되어야 할 관련항목의 규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미관변의 간관설치, 색채의 조정,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장식규정이 언급되었다.

첫째, 반드시 보완 첨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공무원(58.4%), 건축사(41.2%) 모두 미관도로변의 간판 배치를 치수와 모양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개구부의 위치에 대해서도 각기 18.7%와 24%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배열된 진입구와 창문등 개구부의 위치설정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그림9 참조)

한편 도시미관중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색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칠해질 건축색채의 내용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실제로 칠해질 도로나 외장재료를 느낄수 있도록 채색한 투시도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을 통해 심의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았다.(공무원 52.9%, 건축사 25.1%) 다만 이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설문결과는 건축사의 경우 34.5%가 현행의 '지정색 표기'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서 여기에서 미관지구의 규제를 설계작업의 번거로움을 주는 점으로서 여기에서 미관지구의 규제를 설계작업의 번거로움을 주는 대용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일부 건축사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그림10 참조)

현행 서울과 대전에서 조례로 채택되어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ㆍ건축물의 건축장식을 위해 일정액을 투입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74.0%), 건축사(60.4%)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본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견해인 바, 건축물과 미술장식품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당해 건축사가 장식물의 내용 선택이나 제작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무원(41.8%), 건축사(47.1%)가 찬성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장식을 위한 미술품의 내용에 관해서도 회화보다는 야외조각이나 진입 Hall 의 벽화(조소), 혹은 분수 등이 적합하다는 외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림11 참조)



3. 有關制度 도입의 가능성 검토

끝으로 현행의 미관지구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을 위해 3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외국 유관제도 혹은 도시설계 규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였는 바 여러 국가의 제도 중 미국의 특별지역제(Special Zoning), 특히 Incentive Zoning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방식은 도시미관의 증진이나 도시내 Open Space 의 확보를 위해 시행정당국이 유도하는 방향대로 따랐을 경우 용적률에 보너스를 부여함으로써 그결과 행정당국에서는 도시계획차원에서의 바람직한 건축행위를 이끌어 내고 건축주를 법상의 사적권리(토지이용화율에 관한)를 최대한 보장받는 이점이 있다. 본제도의 방식을 미관지구의 관리제도에 도입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무원의 44.4%, 건축사의 43.3%가 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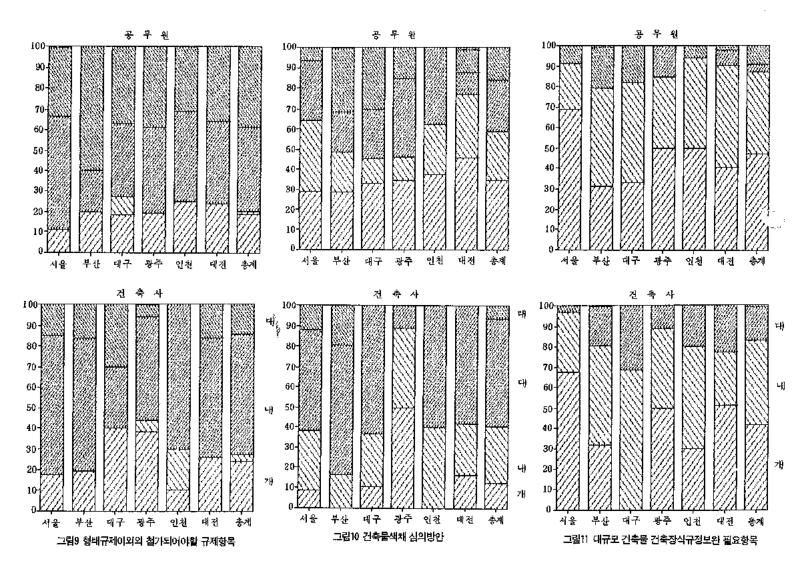
- 그림 6)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중에서 귀하의 의견에 합당한 것은 ?
 - 가)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건축선의 후퇴를 통해 미관도로번의 건축물외벽선이 일관성있게 배열되므로 도시설계차원에서 바람직하며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 나) 미관로로빈 공지확정규정은 사유제산의 침해이므로 완화되어야 한다. ()
 - 다) 2~3m 후퇴규정을 강화하여 미관도로변의 공지를 더욱 확충하고 조경등의 공간으로 사용토목함이 바람식하다. ()

그림 7) 미관도로변의 개방감확보를 위해 시설물 설치의 제한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적합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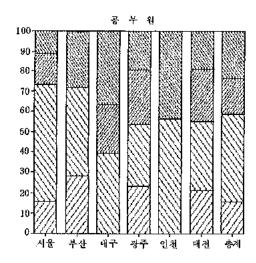
- 가) 현행의 일부 시설물만을 제한하는 정도가 적합하다. ()
- 나) 건물진면의 이용을 선축주의 개인 기호에 따라 맡겨두어야 한다. ()
- 다) 시설율의 개한항목을 도시공공목적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개한하되 그 높이도 일정치수 야하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연격히 재한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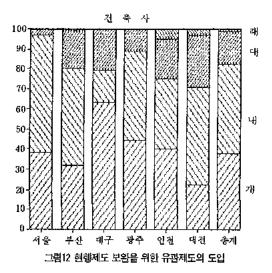
그림용) 건축물의 용적한제를 지위기위한 현행의 건축물 높이, 앞면 몇 옆만길이의 규제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적합한 것은? 가) 현행의 최소한도(예 "6"층이하 "0·m"이상)반응 규제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 나) 지역의 여전에 따라 구체적으로(에 ""0"중 혹은 ""0m") 지정하여 혹은 지어진 혹은 지어진 건축물끼리의 연계성을 주어야 한다. ()
- 다) 현행의 규제는 건축법과 미관지구 관계조례의 이중규제이므로 건축법규상의 규정(용적을, 전쾌을)만을 지키도록 완화해야 한다.
- 라) 건축물의 충수 및 앞면, 옆면 길이의 규제와 더불어 별도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그림 9) 건축물 형태에 관한 규채이외에 관련된 다른 항목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가) 미관도로변의 개구부의 위치
                            ( )
    나) 미관도로면의 창의 크기와 폭
                            ( )
    다) 미관도로변의 간판등이 배치에 관한 사항 ( )
    라) 기타
그림 10 ) 도시미관 중진을 위해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규제사항으로 추천할 만한 것은 ?
    가) 현행의 지정색 표기로 충분하다. ( )
    나) 입면도상에 색견표를 첨부한다. ( )
    다) 비관심약위원회에서 실제 칠해질 책제에 의한 투시도와 모형을 통해 심의한다. ( )
    라) 기타
그림 11) 보완되어야 할 경우 그 집행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가) 건축물과 마술장식품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건축가가 그 내용의 선택과 제작에 참여하거나 심의할 수 있어야
    나) 미술장식품으로는 회화보다 야외조각, 진입Hall 외 벽화, 분수동이 적합하다. ( )
    다) 미술장식품의 선정에 대해 당해서의 미관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 )
    라) 기타
```





한편 미관지구내에 지어질 건축물들의 모양, 색채, 공지의 위치, 개구부의 배열 등에 관한 지구단위의 종합적인

설계(일명: 지구상세계획: Bebauungsplan)를 작성하고 그 방안대로 개별건물의 건축시 그 설계내용을 규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구단위의 도시설계내용이 기존의 도시설계안대로 완성될 수 있는 독일식 지구상세계획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제1종 및 2종 미관지구에 도입할 수 있을것이라는 데에 공무원의 38.2%가 찬성하고 있으나 건축사의 경우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15.5%만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림12 참조)

현재 서울의 일부 지역과 과거 대전의 신시가지조성구역에서 사용된 바 있는 도시설계지구의 규제방식을 미관지구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도시설계지역의 제도 집행에

그림 12) 미완시구 운용의 개선을 위해 다른나라의 유관제도의 도망이 필요한 경우 추천할 만한 사항은 ? 가) 저역상세계획(지구내의 구체적인 형태를 설계하고 그 형태로 건축물이 자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바침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미관지구의 규제가 구체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나) 특별지역제(시외 유도방침에 따름 경우 건폐율, 용적율에 보너스를 부여하여 지구내 건축물끼리의 조화를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자발적인 미관지구의 형태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지구계확재도(소규모 지구의 건축물 형태 및 용도, 시설의 배치등에 대해 도시계획을 정해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에 의해 헌행의 미약한 규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

라) 현행의 규제방식으로 충분하며 다른 유관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

있어서 당해개념의 불충분한 이해로 실제로는 충실하 시행되지 못했으므로 이 방식을 미관지구의 운영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끝으로 유관지구도입과 미관지구의 제도 및 운영개선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질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누가지의 사항이 지적되었다.

첫째로 해당전문가(건축사, 도시계획가) 및 행정담당자에 대해 미관지구의 도시계획적 외외와 운영방식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도시설계차원의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영방향에 대해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미관지구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키 위해서 행정당국의 장기적인 관리 및 참여가 필요하다.(그림4.11 참조)

상기의 두가지 항목은 미관지구 운영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자금까지의 단기적이고 졸속처리에 치우쳤던 건축행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내용인 것이다.

5. 결 론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자구제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볼때 도시내 일부지구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존의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규제 이외에 도시설계차원에서 본 형태 및 색채 그리고 지역내에 지어질 주변건축물과의 연계성을 지워주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방식의 도입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현행 미관지구제도는 그 운영을 통해 조화있는 도시의 구성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룰수 있는 규별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미관지구의 의의와 운영방침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채 대부분의 경우 단기적이고 상황윤리적인 방식으로 미관지구제도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 건축주(Client)의 거부반응, 설계시의 혼란 등여러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키 위해서 첫 단계로 이론적인 배경을 종합화하는

미관지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시당국의 적절한 규제방침과 더불어 미관지구제도를 단순히 건축주 자신의 사유권침해로만 생각하고 있는 현상황의 개선이며

목적에서 작성되었는 바 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미관지구의 의의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보았다. 이와 함께 당해제도와 관련된 건축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관지구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미관지구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된 문제점과 현행제도의 난점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사항이 파악되었다.

첫째, 현행 미관지구제도와 관련하여 규제자축(공무원)과 사용자축(건축사) 모두 당해제도의 도시계획적 의의와 지정목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건축주의 단순항의나 설계변경지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건축사축에서는 건축심의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해서 재심에 따른 건물착공지연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둘째, 미관심의에서 건축설계의 내용이 부결된 이유들을 조사한 결과 부결사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도시미관상 부적합'이라는 포괄적인 이유를 내절고 있으나 실제의 변경요구 항목은 건축설계의 문제점의 지적이 많았으며 도시설계차원의 형태조화와 공간확보와 관련된 규제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세째, 현행의 도시내 미관지구지정에 관해서는 대부분 지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바 개선을 위해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른 일률적인 미관지구의 지정보다는 당해지역의 실정을 최대한으로 감안하고 당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지구의 지정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키위해 개선될 내용으로 건축사,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다음 네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건축심의는 현행의 심의지침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의 외판과 관련하여 건축물 색채와 모양, 개구부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 • 규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축물의 형태규제와 판련하여 현행의 미판도로변 공지확보나 시설물 제한규정은 도시미관증진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용적규제는 정확히 寸數(층수, 건축 Dimension)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현행 미관지구내 건축 및 형태규제항목에 부가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무질서한 간판의 배치를 지양하기 위하여 간판의 위치와 규격에 대해 규제해야 할 것이고, 서울 등 일부도시의 대규모 건축물의 미술장식규정이 건축물과 연계된 내용으로 보완 되어야 한다.

끝으로 장차 미판지구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시당국의 적절한 규제방침과 더불어 미관지구제도를 단순히 건축주 자신의 사유권침해로만 생각하고 있는 현상황의 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에게 적절한 타협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본인의 조사에서 파악된 것은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당해지구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밀도(건폐율, 용적률)의 손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으로서 市의 유도 방침에 따를 경우 건축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인 용적률에 적절한 보너스를 주는 일명 인센티브 죠닝(Incentive Zoning)인 이 현행제도에 첨가되어질 수 있는 유관제도로서 건축사나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있었다. 참고무허

- 1. 국토개발연구소, 지역지구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81
- 2 국토개발연구원, 토지이용효율화를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80.
- 3. 권태준, 최상철, 우리나라 도시개발규제의 문제와 지구계획제도 도입의 필요성,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1982.
- 4. 반금환, 서울시 용도지역지구제의 적극적 활용방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9.
- 5. 이영석,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지역지구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 David Rhind & Hudson, Land Use, Methuen & Co. Ltd. 1980
- F.S. Chapin & Kaiser, Urban Land Use Planning. University of Illionis Press, 1979.
- 8 Richard F. Badcock,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Planning, ICMA, 1979.
- T. William Patterson, Land Use Planning. Van Nostrand Reinhold. 1979.

땅에 글을쓰다

하늘 푸르고 강산 맑아도 우리 가난하였을 때 어떠하였던고~~~ 날이면 날마다 허리 굽혀 고개 숙여 땅에 글을 쓰다.

땅에 글을 쓰다 삐저린 뼈를 줍고 피 어린 피를 씨 뿌려 누더기를 깁다 가난을 깁다 하아얀 白紙위에 맹물을 떠 놓으며 사람마다 땅에 글을 쓰다.

햇빛 눈 부시고 달빛 고와도 우리 가난하였을 때 어떠하였던고—— 날마다 밤마다 소쩍새 울음같은 걱정 부엉이 울음같은 먼길 사람마다 등점지고 땅에 글을 쓰다.

땅에 글을 쓰다 이제는 허리 굽혀 고개 숙여 오, 등짐까지 지고서 먼길 갈 수 없다고—— 엎드리 땅위에 글을 쓸 수 없다고—— 허나 그게 아닐세 마음은 그 언제나 삐져렸던 흰뼈를 줍고 아리고 찌린 피 씨 뿌렸던 땅 가깝게——

땅에 글을 쓰다. 사람들 우리네 사람들 땅에 글을 쓰다.

銀孔乐



海外建築通信

1. 序

우리 건축계에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중국계의 화교 건축가 I.M.Pei (중국식이름은 具聿銘; 베이뤼밍)가 최근 홍콩(중국식으로는 香港임)의 中環區 핵심지대에 중국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中國銀行 빌딩을 설계하여 1989년에 실내장식과 조경부분을 제외한 전 공정의 준공을 보았다. 이 건물은 세계에서 50번째로 높고 뉴욕과 시카고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고로 높은 건물로서 일약 홍콩의 새로운 Skyline 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콩민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I.M.Pei 의 완벽주의 설계태도와 중국인물 특유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따른 이 건물에 대한 논쟁이 또다른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충분한 흥미와 새로운 각도에서의 I.M.Pei 에 대한 평가에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어 그것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이 건물의 건설을 위해서 주어진 부지는 고속도로의 고가도로에 둘러쌓여 있고 쿨라이언트의 주요한 요구사항으로는 1백만평방피트 이상의 바닥면적과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독특하고 높은 구조였다.

그 결과 건물의 거의 모든 중량은 경사선을 통해서 4개의 모서리 기둥으로 전달하는 수직공간 트러스(Vertical Space Truss)로 해결하였다. 이 트러스는 각 면이 170퍼트인 사각형의 바닥으로 유도되고 25층, 38층, 51층에서 점차 변화하여 가늘게된다. 그 면들은 4개의 삼각형 프리즘으로 분할되고 태풍에 대해서는 143- mph 의바람에도 건될 수 있도록 실제되었다.

4각형의 바닥구조는 2개의 출입구를 갖고 있는데 경사진 부지로 인해서 서로 다른 Level 을 유지한다. 에스컬레이터는 제일 밑의 로비에서부터 은행매장까지 연결되고 있다.

2、三角造形의 論爭

홍콩의 중국은행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2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진통적 사고방식에 의한 풍수(風水)적인 논쟁이고 또하나는 이 건물의 조형에 대한 예술적인 측면의 논쟁이다.

먼저 풍수론적 측면의 논쟁을 살펴보면,

衛奕信도 정원에 버드나무를 심기만 하니 소문에 들리는 불길한 영향을 약간 피할 수 있는 뿐이라고 여긴다.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반적인 의견은 대부분 이 건물이 위풍당당하고 홍콩의 수많은 고충 건물 중에서 높이와 조형, 입면에서의 독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홍콩의 건축가

> 陳俊豪는 이 삼각조형의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凱悅 Hotel 의 살내 장식가는 이 건물의 실내가 45°의 예리한 각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심지어 30°의 뾰족한 각도를 갖고 있으며 공간의 이용과 청절유지에 대해서 모두 곤란함은 갖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은 이미 홍콩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재 건축가 I.M.Pei 의 기발한 조형감각에 의해서 창출된 새로운 건축조형의 일면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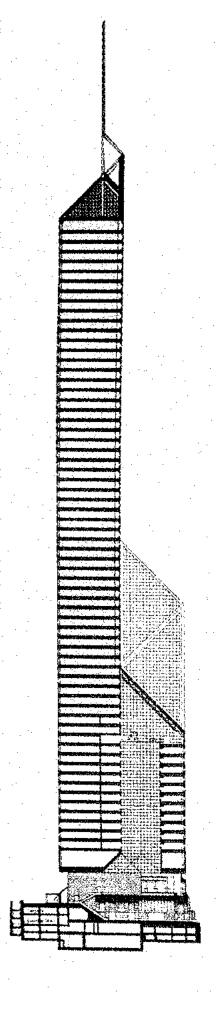
3. 具聿銘과 朱銘의 結合

- 중국은행 전경
- ② 북쪽 Enterance 평면도
- 6 주단면도

이 건축물의 예리한 삼각 절단면은 홍콩주민이 여기기에 조형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적지않은 운명론자들은 73층의 이 건물이 마치 키다란 칼을 홍콩의 中環區域 핵심부를 찌르고 있는 듯하여, 그 칼날의 한 면은 1910년에 지어진 立法局을 또 한 면은 總督府를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어떤 주민들은 전임 총독 尤德이 북경방문시에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것도 이러한 것과 부합되고, 현재의 총독 I.M.Pei 는 台灣의 저명한 조각가 朱銘의 조각작품을 자신이 설계한 이 中國銀行 홍콩지점 안에 설치하기로 확정을 지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홍콩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작품의 형식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Pei 는 朱銘에게 자신의 최신 작품인 이 건물과 그 정원의 배치개념을 이해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사람들은 雙銘의 회담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이름 끝자가 모두 銘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I.M.Pei 가 朱銘을 초청하여 그의 작품을 이 건물 안에 배치하는 일은 그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나름대로 2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그가 잘아는 조각가의 추천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하나는 주명의 과거작품이 그의 마음을 사로 잡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회합이 있기전에 6·4 천안문사건(六四天安門事件)이 발생하여



홍콩의 각계각층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지만 이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사건과는 무관하게 예술적인 창작에만 열중하여 단지 하나의 훌륭한 건축가와 하나의 훌륭한 조각가가 하나의 훌륭한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었다.

Pei 는 이 은행 직원들과 함께 朱銘의 작품유치문제를 논의하여, 주명의 작품을 최소한 1점 이상 배치하며 가능하다면 건물의 동서 측면의 정원과 40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바꾸어 다는 홀의 세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였다.

朱銘은 Pei 와 첫 대면이후 그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온화하고 따사로움을 느꼈으며 그의 건축작품에 대한 조금도 소홀하지 않는 태도에 감탄과 존경을 한다."

朱銘은 이미 홍콩에 있는 4개의 대형건축물 옥외조각에 자신의 작품을 진열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규모가 10퍼트 높이에 18퍼트의 폭인「太極」이란 제목의 작품을 홍콩에서 가장 비싼 오퍼스빌딩지역에 있는 中環 交易廣場의 앞에 설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中文大學에 있으며, 다른 2개의 작품은 香港演藝學院에 대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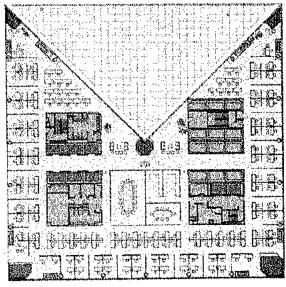
4. 完美主義의 具聿銘

최후의 외관장식과 내부장식의 손질단계에 있는 이 건축물은 Pei 가 최근 홍콩에 도착하여 이 공사 현장에 다시 나타남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바꾸거나 새로이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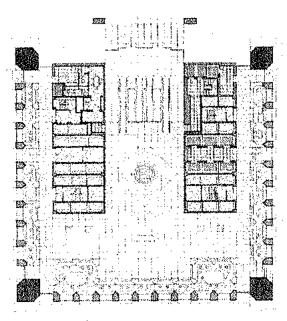
그는 1989년 들어서 몇개의 대형 건축물의 준공을 보았는데 이들은 전세계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미국의 NewsWeek 지는 Texas 의 Dalas 에 있는 Mayerson 交響樂中心의 준공에 즈음하여 그에 대하여 「完美主義者」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다. 이로부터 며칠뒤 그는 홍콩에서 뉴스위크의 이러한 설명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실증하였는데 홍콩의 이 건축물을 위하여 1989년 5월 그는 자신의 설계사무소에 있는 미국국적의 화교 건축가 黃悪生을 데리고 대륙으로 날아가서 昆明市 부근에서 대형의 樹石을 골라 빠른 시간내에 홍콩으로 실어오도록 주문하였다. 이 수석은 지극히 천연적인 자태를 갖추고 있는데 Pei 의 지휘하에 수석을 묻는 위치, 방향까지도 일일이 지적받았다. 역시 대만의 조각가 朱銘의 작품을 배치하는 것도 훌륭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이처럼 그는 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그의 손을 거쳐 창조되고 조작되는 완벽한 건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금년 73세의 Pei 는 예술가적 태도로서 도시와 향촌(鄉村) 사이에 대형의 조각작품을 창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기념비적인 듯한 창작와도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그는 "이 나이에도 나는 반드시 선택을 하여 건축작품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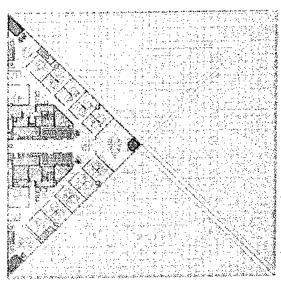
그는 많은 것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좋은 것을 요구하고, 불완전한 美보다는 완벽한 美를 추구하는 완벽주의 건축가이다. 그가 건축계의 정점에서 갈수록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그의 명성도 날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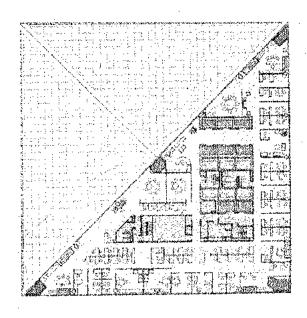
20~37쑴 평면도



남쪽 Entrance 평면도



51~70층 평면도



38~50층 평면도

ontribution

共同社會를 위한 建築

Community Architecture

李廷根/건축사 사무소 우리계획 by Lee, Jeong-Keun

1. 생활공동체의 재발견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사회는 서구문화의 수용과정에서 각각의 사회에서 이제까지 유지되어 오던 전통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이미 공업화 과정을 거쳐 소비사회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각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따라 서구문화 수용의 양태는 달라도 이들 사회는 모두 그들의 전통사회를 받치고 있던 생활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속에서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해오던 생활환경은 재구성되어야만 했고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해체와 더불어 전통적 공동사회의 가치관의 붕괴는 사람과 생활환경을 물과 기름처럼 상호 소외시켜왔다. 아시아의 각 사회가 당면하고있는 인간과 생활환경간의 괴리현상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해체에따른 건축이데올로기의 혼돈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생활공동체 성원들은 현대 도시산업 사회에서 보다는 자연과의 합일상태에서 생활을 영위 했으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함께하고 있었으며 사회구성원간에는 지연과 혈연으로 겸겸이 관계가 맺어져 있고 생업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아 생활의 물질적인 측면뿐아니라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상당한 부분이 상호 교차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삶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사회에서의 건축행위는 그 사회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관에 연결된 규범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개체로서의 가치관을 추구했다기보다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관을 강화해가는 한에서 규범의 해석을 구현했다. 생활공동체의 규범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합의된 척도에따라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의 결과로 창조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으며 밖의 세계와 대응하여 조화를 이루는 소우주를 이룬다.

건축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사회에 불어닥친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급격한 변모와 해체이다 오늘의 건축인은 전통사회의 규범이란 굴레에서 해방되었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현대 도시산업사회의 각종 이익집단 또는 계층을 대변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시각화하는데 얽매이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개성의 추구와 표현의 자유라는 허구속에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적 이태올로기에 경쟁적으로 편승하게 되었다. 전통적 삶의 양식이 붕괴되어 공동체적 가치관의 규범야 사라진 상황에서 오늘의 건축인이 과연 그의 전문적인 건축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적 삶의 가치판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된다. 한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은 어떤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고 사회성원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인 한 사람이 모여사는 양태는 어느 개인의 의지나 구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다. 분명히 전통사회를 모형으로한 생활공동체는 오늘의 사회에 인위적으로 재현할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 생활공동체가 도시산업사회의 새로운 집합적 삶의 양태로 이행하는 과정이 후술할 '강남현상'에서 정점에 도달한 감을 주며 이것은 계속되어오던 변화과정의 종막을 알리는 가시적 표출로 이해된다.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해체과정의 종말은 새로운 집단적 삶의 양태의 출현을 의미하며 새로운 생활공간의 질서체계로서의 대체를 암시해준다. 전통사회의 가치관에서 본다면 그것을 담고 있던 생활공동체는 이미 붕괴되어 없어졌다. 그러나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해체과정속에 새로운 집합적 삶의 양태가 배태되고 있었음을 감지해야한다. 사회라는 잡합적 삶의 양태가 인간 생존 형식의 불가피성이라면 생활공동체는 어떤 형태로든 존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시해야하는 것은 바로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해체와 더불어 다시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생활공동체이며 이것이 담고자하는 새로운 생활공간의 질서체계이다.

1988년 11월 8일에서 10일사이에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의 학술토론회의 주제인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은 위에서 언급한 아시아의 각사회가 당면하고있는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해체와 이에따른 건축 이데을로기의 혼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주제의 내용은 '강남현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해체와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출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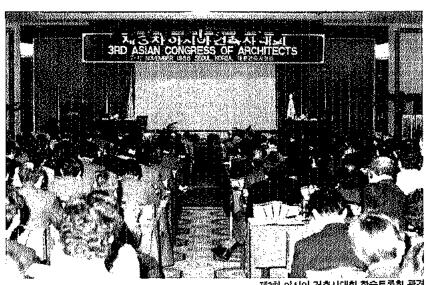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생각의 불을 제시해준다. 이 글에서는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고 이를 발단으로하여 강남현상을 파악하고자하며 우리에게 확연히 모습을 들어내지않고 있는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윤곽을 가늠하여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삶을 담게될 생활공간의 질서체계를 감지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한다.

2. 과정과 문화적 동의

제 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학술토론회에는 국내외 6명의 연사와 12명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3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고 제4부 종합토론회에는 모든 연사와 토론자 및 청중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 각 연사의 강연요지는 대회전에 건축사지 1988년 7, 8, 9월호에 연재되었으며 발표문과 기조연설문은 제 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발표문 모음잡(영문)에 실려있다나, 이 장에서는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발표문들과 토론인사들 및 청중들의 토론 내용을 '제 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발표문 초록집'(영문), '제 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발표문 모음집'(영문) 및 학술강연회 진행 수록 녹음을 토대로하여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설정의 배경에 비추어 집약해 보고자 한다.

토론자들과 청중이 함께 참여한 토론의 진행과정에서는 참석자들이 주제를 어떤 방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가 하는 생각의 흐름이 강하게 드러났는데 공동사회 또는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건축의 보편적인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도시에서의 주거단지의 문제 등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관심도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아래 논의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적합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지류에만 머물고 주제가 지향하는 보편성에 귀의하지 못한다면 논의의 전개가 국부적이고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 본원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란 건축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소위 'Community Architecture '의 의미로 축소될 수 없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사회주택(housing) 문제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도 아닐것이다.

발표된 논물들은 각 연사들의 관심영역과 현재의 활동영역을 고려할때 주제를 대하는 시각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의 관심과 논의의 전개방법에 차이가 있어도 모든 논의들은 꿰뚫는 줄기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논의를 한 두개의 개념속에 일률적으로 포함시킬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학술토론회 광경

수는 없지만 논의들의 내용 전반을 포괄하는 큰 흐름을 집약할 수 있는 개념은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고 보여진다. 어떤 생활집단 모두에게 의미를 가지며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축자체를 하나의 물리적 결과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생활공동체 안에서 영위되는 삶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의 창조는 생활공동체 구성원간의 문화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는 것은 생활공동체 구성원의 현재의 삶과 연속된 과거와 앞으로의 진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생활공간을 고정된 물질적 측면에서만 볼때 우리는 생동하는 생활공동체의 생활과 유리된 껍질을 보게되며 이에 기반을 둔 건축에 대한 이해는 추상적 수준에서의 자의적 허구이기가 쉽상이다. 또한 이 건축에 대한 이해가 생활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적 동질성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한 만들어진 생활공간은 그 사회 구성원에게 의미를 가지는 건축이 될 수 없다. 발표자들의 논의를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라는 주재가 내포하는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는 개념안에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Wilson 교수의 논지는 전통사회에서 건축행위가 그 삶이 추구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성원간을 묶어주고 있는 전통이라는 문화적 동의를 파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건축행위의 목적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리적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세계속에서 넓은 의미의 집에 있는 듯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생활공동체 구성원간에 안정되고 통용되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건축행위를 절제함으로서 공감대를 유지한다. 개체의

註)

1) ACA - 3 행사일정 과 주 제 및 학술토론회 발표자 소개와 발표문 초록은 대한 건축사협화, 건축사, 1988 년 3, 7, 8, 9, 10월호에 실 려있다.

학술토론회 발표문 및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ed), The Collection of ACA-3 Conference Papers, 1988.

건축사협회에 보관 ACA - 3 학술토론회 진행수록 녹음 참조.

75

의사 반영은 이 규범의 범위안에서 이루지기 때문에 사회성원 서로간에 공통의 공간언어를 공유하며 이로써 공간적인 삶 자체를 서로 나누는 것이 되며 이것이 바로 전통사회의 성원들이 내적인 심리적 균형과 조화되는 삶을 영위하는 연유이다. 그들의 삶의 공간과 개체간의 서로 다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교감하는 삶의 공감대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규범화된 삶을 계속 견지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반면 Habraken 교수는 전통사회의 규범속에서 결과로 나타난 정형(type)을 오늘의 건축에 적용하는 것은 모방이 아니고 어제와 오늘사회의 문화적 연계이며 사회성원간에 나누어질 수 있는 가치들을 새롭게 재현하는 것임을 확신 시키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전통사회의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형(type)은 현대사회의 건축가들이 오늘의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더없이 좋은 전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형은 한 생활공동체의 오랜동안의 삶을 통해서 가꾸어져 온 규범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회구성원의 생활과 유리되지 않으며 그들간에 뿐만아니라 그들 선대의 구성원들과도 공유하는 가치관이 생활공간 (물적체계)을 통해서 형식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생활공동체의 공간적, 물리적, 혹은 유형적(stylistic)정형을 발견하여 충분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하여 이를 적절히 건축설계에 응용한다면 이는 결코 모방이 아니며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에 접근하는 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인은 그의 건축행위에 있어 그 생활공동체와 동일한 입지에 서게되며 건축인들이 범하기 쉬운 매우 한정되고 특수한 계층의 가치체계에 편승하는 우를 피하게 해준다. 단 정형의 선택은 개인적인 취향에 좌우되기보다는 생활공동체 구성원간에 공유하는 가치들을 지켜가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Shigemura 씨는 설계행위의 방법을 대상이 되는 사회의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공간의 현장에서 공간구성의 원리를 찾아내어 이에 바탕을 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살아있는 생활공동체의 종합적 삶의 과정으로서의 건축 및 문화적 동의로서의 건축을 실현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는 그 생활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생활공간의 지역적 내용, 공간사용의 방법 및 그 공간들이 그들의 생활속에 무엇을 외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인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경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생활공동체의 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해 깊이 관찰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환경을 계획할 수 있는 단서를 잡게된다. 따라서 한 생활공동체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생활환경과 사람들의 그에 대한 사용방법 자체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생활공간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건축인은 생활공동체의 사회성원들 사이에 뿌리내린 문화적 동의가 무엇인가 정확히 읽어내고 이를 적절히 건축적으로 현실화하는데에 있어 그 생활공동체가 필요로하는 생활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Hackney 씨는 사회성원들이 직접 그들의 필요로하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기위한 기획, 계획, 및 시공에 참여하여 그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삶의 환경을 창조해내는 건축행위의 과정 쟈체를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의 예로서 내어 놓았다. 과정으로서의 건축을문화적 동의안에서 실현시키는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직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이 원하는 생활환경의 계획에 참여하고 스스로 목수, 미장이, 석수, 조적공 등이 되어 시공을 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은 생산물로서의 물리적 구성체가 아니고 생활공동체 성원의 지속되는 생활활동의 일부이며 삶의 전체를 포용하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진다. 건축이 그들의 삶의 과정 자체이며 그들이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문화 그 자체이다. 사회성원들이 건축의 계획 및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공간간의 소외현상은 극소화 될 수 밖에 없다.

Daly 신부는 물질적인 기득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들의 삶 속에서 물질세계의 해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인간문화의 본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가지지않은 자들의 생활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건축문화의 건전한 싹을 키울수 있다고 보았다. 지식 엘리트의 상류문화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와 도그마가 지배하는 건축행위의 환경속에서는 진정으로 생활공동체 성원들간의 문화적 동의가 기본이 되는 건축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들의 사고는 인간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 밖에 쌓아 올려진 가치체계와 의도들로 꽉 차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한게안에 머물고 있는 가지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퇴색하거나 윤색되지 않은 인간문화의 본래적인 모습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가들은 이러한 생활공동체로부터 자연에 맞닿아 있는 인간의건축문화의 본령을 볼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이 만들고 소유하고자 하는 생활공간의 물리적 구성체는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고 이어서 문화의 건전성 자체에 암적 요소가 될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문화는 '신어 입고있는 옷'이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되새겨. 준다.

강흥빈씨는 한국 건축계에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공동의 이슈를 같이 풀어나가는 광장이 없는한 건축에 관한 모든 논의가 일시적이고 단발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말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건축인들이 건축행위의 자족적인 고립된 영역에 안주하려 하거나. 건축외적인 사회 세력을 건축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사회결정론에 빠진다면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는 건축을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면 한국의 건축계에서는 생활공동체의 삶의 과정을 중시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의를 바탕으로하는 건축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과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과정으로서의 건축이 추구되고 문화적 동의에 관한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던 한국의 전통적 건축환경과 전통적 생활공동체가 도시화 및 산업화와 더불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외 발전적 계승과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성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건축인들이 동기야 전문성의 미숙이던 도덕성의 결여년간에 생활공동체의 파괴쪽으로 가담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이 앞서게 된다. 이 주제를 추구하기위한 전문가집단으로서 건축인의 자격은 뒤로 미루더라도 공동적인 관심사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건축인들의 건축행원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공동적 노력을 위한 가능성과 성장을 축적해 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게 더욱 문제시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건축이 기술적인 면이던 미적인 면이던 혹은 직능적인 면이던 간에 고립된 홀로의 영역으로 안주하여 하는한 자가축소의 뒤안길로 퇴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건축을 사회적인 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관심의 초점을 위치시켜야 할 과정으로서의 건축과 문화적 동의보다는 건축외적인 사회제력의 결정론에 치우칠 때 건축인의 역할 또한 애메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

한태동씨는 서구문화와 동양문화의 인식재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들어서 동양사회가 맞고있는 서구의 이원적 논리를 극복해야만 다차원적인 전래의 삶의 공간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공통으로 제기되는 문재처럼 한국건축의 당면한 과제들의 원류가 서구의 과학기술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전통적 생활공동체가 헤체되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서구문화의 물결속에 표류하는 미아가 되었기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밖에 있지않고 우리 안에 있다 할 것이다. 모든 범주의 상보적 짝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서구문화의 사고의 돌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원적 체계의 삼차원직 전개를 기본으로

하는 6개 원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수역에서처럼 삼분법적 논리를 따르는 것이 한국문화가 몸담은 동양의 논리체계라 볼 수 있다. 동양적 논리체계로 다시 돌아갈때 우리는 경직된 대립적 모순의 추구가 아닌 자기와 다름의 가능성과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과 포괄성을 되찾을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가고있던 우리 생활공간의

한국의 전통적 건축현경과 조작을 유지하고 있던 건축한경의 전통적 생합공동제가 도시와 및 신입의의 다물이 용괴되는 과정에서 이의 발전적 계승과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성립을 위한 대원을 제시하거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생활공동체의 짜리쪽으로 가당하지 않았는다 하는 반성이 앞서게 된다.

다차원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를 논의한 7인의 발표문을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여 보았다. 논문 발표자들이 미리 합의하여 논의의 내용을 분닦한 것은 아니지만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는 개념에 관한한 Wilson 교수는 전통사회에서 행하여지는 건축행위를 모형으로하여 현대 도시산업사회에서 추구해야할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제시했으며 Habraken, Shigemura, Hackney, 한태동 교수 등은 한 생활공동체의 생활과정으로의 건축 및 생활공동체 구성원간에 문화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을 어떻게 성취해야 하느냐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반면 Daly 신부와 강홍빈 박사는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보다는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 무엇이던간에 그것을 성취하기위한 건축인의 자세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

위의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는 개념안에서 이해된 건축은 대상화된 물적 존재가 아니며 삶속에 혼용되어 있는 과정임을 확인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회성원들이 공동으로 인지하는 문화적 틀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한 건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건축이라는 실체에 대한 이해가 건축행위의 준거가 되어야 함을 피할수 없다.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는 건축적 함의가 충만한 생활공동체를 공동사회(Community)라 보았을때 우리는 앞선 논의로부터 공동사회가 가지는 세가지 속성을 간파할 수 있다. 첫째, 공시적인 공동사회는 포괄성을 가진다. 공동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분류의 대상이 아니고 온전한 일체성을 이루는 생활공동체의 주인이다. 따라서 공동사회는 구성원의 사회적 범주를 뛰어넘어 공통의 삶을 추구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둘째, 통시적인 판점에서 공동사회는 연속성을 가진다.

공동사회에서는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공동체적 삶의 축적과 집단적 의식과 기억에 의해 그들의 오늘의 삶의 방식이 어느 정도 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앞으로의 그들의 삶의 방식은 현재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연속선상에서 변모를 계속하리라는 것이다.

셋째, 공동사회는 다차원성을 가진다.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은 현상계 넘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까지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조상들의 세계가 삶속에 침투되어 있고 뭇 신들과 악귀의 세계가 현실의 삶과 겹쳐져 있기도 하다. 현대 도시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속성의 회석되고 변질되어 삶의 깊이가 얕아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통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 대체되어 공동체적 삶을 구성한다 할 수 있다.

3. 강남현상

과정과 문화적 동의라는 건축적 함의가 충만한 생활공동체를 공동사회라고 보아서 그 속성을 포괄성, 연속성, 다차원성이라 할 수 있다면 이에 비추어 우리사회의 현실에 실현되고 있는 공동사회는 어떤 것인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추석절이나 민속의 날이 되면 서울 대도시 지역과 농촌간에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교통혼잡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통소통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생활상에 아직은 농촌에 기반을 둔 전통적 생활공동체와 도시산업사회라는 두 사회의 모습이 병존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공동체적 기반이 이중성을 띄어서 전통사회로부터 도시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완결되지. 않은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은 인구 구성의 성분을 바꾸어 놓았고 국토상의 인구분포의 재편성을 낳았다. 전통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이행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의 전국적인 재배치를 결과했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해체와 생활공간체계의 변환을 초래했다. 이 변화의 전국적인 양상을 조감하면 거시적인 틀이 보이지만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아있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생활양식의 변모와 생활공간의 새로운 경험인 것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서로 맞물려서 생활공간체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도시주민의 대단지 아파트 정주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 거주가구의 반이 이미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거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방도시에까지 점점 공동주택의 정주형식이 파급되고 있다. 생산인구의 소개와 부락의 공동화를 경험한 농촌지역에서는 거주공간의 부분적인 개조를 시발로하여 생활공간의 재구성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방도시와 농촌의 생활공간 변화의 모형이 되고 있는 파급의 진원지는 거대도시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일고있는 생활공간체계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4대문안 지역으로 상징되던 전통적인 서울의 모습은 산업도시화의 초기에는 강북지역이 교외 단독 주거 지역으로 수평적인 팽창이 만연되었었고 고도 산업사회의 진입이 본격화된 최근 10년간에는 아파트 형식이 대단위 주거단지들이 확장된 강남 전역을 꽉 채우며 너도 나도 강남으로의 대탈출이 전개되었다. ?' 이런 현상은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지방도시와 위성도시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속화되는 새로운 주거형식에 대한 수요의 압박은 드디어 서울 인근에 다시 대단위 공동주거 단지를 위주로한 위성도시를 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지난 10여년간 강남지역에 성립한 도시화와 공동주거 정주형식의 급팽창은 가히 전통적인 생활공간 형식으로부터의 탈피가 일반화되는 계기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해체과정의 종막을 보여주는 한국에 있어서의 정주형식 변화의 대폭발이었다. 이 현상은 서울지역에 국한된 생활양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사회 저변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압축된 모습이고 상징적 돌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모듬살이 양식의 가속적인 변화와 생활공간 체계의 변혁을 '강남현상'이라 이름 한다면 소위 '강남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진행되어 있던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해체파정이 극에 달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해주는 결정적 단서로 여겨진다. 강남현상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해체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며 그들의 생활공간체계의 변혁을 의미한다.

'강남현상'이 보여주는 물리적 특징은 주거단위의 대단위 집합과 단위주거 집합형식의 단독주거의 집합으로부터 공동주거 형식으로의 변호이다. 여기에 보이는 모돔살이는 전통사회에서처럼 단위주거의

2) 서울시가 주관하는 대한주 택공사가 사업을 집행한 1988년에 열렸던 제 17회 밀라노 세계 국제도사 전시 회 서울 전시관의 테마는 '거대도시 서울의 생성'. 교차하는 변혁의 협과 역사 적 관성'이었다. 여가에서 는 전통적인 도시구조와 최 근 30년간 벌여진 도시산 업사회로의 변모가 복합 중 첩된 서울의 모습을 역사의 관성과 변혁의 힘이 갈등구 조로 해석하였다.

서울특별사, 서울:거대도 시 서울의 생성, 교차하는 변혁의 힘과 역사의 관성, 1988. 참조 구성원들간에 지연과 혈연으로 맺어지고 생산활동과 믿음의 세계등을 공유하는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않다. 이들의 모임은 무기물의 집합처럼 서로 아무 공통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원자적 단위의 집합이다. 전통사회의 척도에서 보면 '강남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는 공동사회가 없고 사람들이 무기적 집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동사회에 대한 이해를 동태적으로 파악한다면 전통사회의 생활공동체가 변모하거나 사회가치 기준이 달라졌다해서 우리사회에서 생활공동체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닐 것이다.

> 지난 10여년간 김남지역에 성립한 도시회와 공통주가 정주형식의 급행장은 가히 전통적인 생활공간 형식으로부터의 탈피가 임반화되는 계기였다.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해체파정의 종막을 보여주는 한국에 있어서의 정주형식 변화의 대적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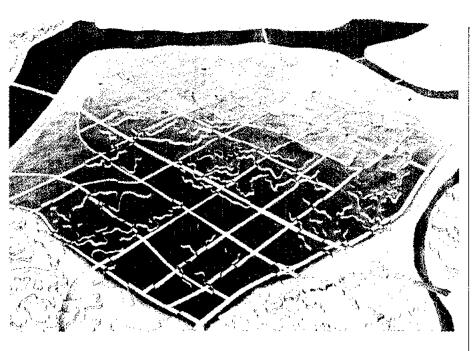
더불어 사는 것이 삶의 조건이라면 단지 전통사회에서 유지되었던 유형의 생활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을 뿐이다. 전통사회의 생활을 담던 생활동체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새로운 삶의 가치와 삶의 양식을 담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둘은 어떤 형태로든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강남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샐활공동체를 발견하려면 이의 물리적 징후 즉 무기적 원자단위로서의 단위주거의 대단위 집합 및 이외 전국적 확산이라는 외양적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한다. 여기에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의 특성과 그들의 생활공간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넘현사의 중심에 놓여있는 사회구서원들이 생활공도체를 형성하는 사회 결속력의 골간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그들의 삶과 결부된 생활공간의 실질적 기능과 의미를 찾아내야한다. 생활공동체라 하면 지리적으로 한정된 동일지역에 삶으로서 통합된 삶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집단을 말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는 서로의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직업, 종교, 교육, 혈연 등 공통된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생활의 단위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전통사회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산업화 및 전국적인 도시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모여지는 양태가 대체적으로 지리적인 생활의 영역과 생활상의 제 기능이 발휘되는 영역이 통합된 공동생활공권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및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진 도시산업사회에서는 정주공동체라는 것이 지리적으로 공동생활권을 이룬다는 점 이외에는 기능적인 면에서 그 성원간에 공동적 유대가 희박해지고 덜 중요하게 되었다. 나외 이웃은 이제 동일한 주거지역에서 서로 가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생업상에서나 믿음에서나 서로 공동의 관심사 혹은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다. 지리적인 정주공동체를 구성하는 물적요소로서의 단위주거들은 비교적 오랜기간 통합된 단위로서 존속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거주하는 단위 거주자들은 짧은 기간안에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구성원간에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도시산업사회와 전통사회 생활집단이 각각 뭉쳐진 하나의 사회이게끔하는 그 구성원간의 결속력의 원형은 인류사회 초기의 이동생활집단인 사냥-채집 경제사회와 초기 정착 농경사회에 대조적인 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전자에서는 각 개인간에 영속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인 목적(여기서는 공동으로 일정기간동안 먹이를 찾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모이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서 개인간의 대상적 의무도 없으며 집단의 목적을 위해 분담되었던 임무가 끝나면 개인으로 돌아가므로 결속이 일시적이고 시한적이다. 여기서 개인들간의 사회관계는 자발적이고 비영구적이며 역전이 가능하다. 반면 후자의 초기 정착농경사회에서는 생활집단의 개인상호간의 서로의 관계에 따라 대상적 의무가 설정되며 이는 또다른 개인과의 관계를 구속하는 연쇄적 대상의무관계를 결정한다. 초기 농업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생산활동이 요구되므로 동일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요구되며 개인들간의 관계는 오랜 정착생활에서 형성된 개인간에 차등을 가지는 비대칭의 대상적 의무관계가 영속된다. 이 경우의 사회관계는 개인간의 대상적 의무관계가 지속적이고 개인성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여되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 관계를 쉽게 고칠 수 없다. 전자의 사회결속력을 임의결속이라하고 후자의 결속력을 결연결속이라 한다면 어떠한 생활공동체이든 이 두 결속력의 적절한 조합으로 하나의 공동생활관을 이룬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사회 결속력의 상보적 두 짝의 원형적 모형을 이루는 초기 농경사회와 사냥—채집 경제사회의 삶의 3) 자연과 문화의 두 영역을 구분하는 발단이라 볼 수 있는 석기시대의 사냥-채 집자들과 초기농업사회에 대한 인류학과 고고학의 연 구는 사회결속력의 원형을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근 거를 제시한다. 이들 사화 의 구성원과 사회자체의 존 속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원을 확보하기위해 이들이 차용하였던 생산양식은 두 계의 사회조직의 표준적 형 태룔 특징지운다. 이 두 사 회는 사회결속력의 속성을 그 순수한 원시상태로 드러 낸다. 고고학자들은 일반 적으로 전사시대의 사회를 기동력과 정착성을 특징으 로하는 두개의 범주로 분류 사냥-채집사회의 생산단위는 농업경제로 전 환되기 이전에 일종의 가사 경영의 체제로 발전할 때까 지 자발적이고 비항구적인 기초에서 하나의 무리를 형 성하는 구성원들로 짜여진 다. 사냥-채집자들이 초 기 농업자들과 구분되는 정 온 그들의 생산양식의 차이 에 있다. 그들이 에너지원 을 확보하기위해 자연을 이 용하는 방법에서 전자에게 는 자연이 노동의 주체이고 후자에게는 자연이 노동의 도구이다. 농업에서는 인 간의 에너지가 수확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는데 투자되 지만 사냥과 채집은 생산의 과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적당히 편리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체집과 사냥에 의한 수확이 감소함에 따라 사냥 -채집자들은 다른 장소를 찿아 움직인다. 기동성은 그들의 생산양식의 필요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며 의 러한 필요성은 생활용품 또 는 부의 축적을 최소로 유 지하도록 제재한다.



사냥-채집자들이 집단에 있어 개인간의 사회관계는 전 세대로부터 전수된 제도 화된 기준에 의하지 않고 하나의 개체 구성원으로서 의 활동력을 통해서 얻어진 다. 여기서 개인들간의 사 회관계는 자발적이고 비영 구적이며 역전이 가능하 다. Meillasoux 는 이러한 사회결속력을 임의적 결속 (adhesion)이라 칭헸으며 이에 따로면 개인들은 전수 되는 위계적 신분으로부터 무관하며 절연(filiation) 의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영구적이고 대상적인 의무 로부터도 무관하다. 사냥 -채집 사회의 기동적 경제 에서의 임의적 사회결속과 대비해서 초기 농업사회의 정착성 경제에서는 개인들 간의 사회관계가 나면서부 터 그들의 공동의 조상에서 부터 연유하는 형식적 쪽보 (혈연관계)에 따른 경연관 계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그들의 쪽보체계의 친족개 념으로 정의된다. 이 결연 에 의한 결속력은 정착적 경제를 가지는 사회에서의 원형적 생산형식으로 상징

되는 가내생산형식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결과이다. Sahlins 가 생산과 소비의 가사경영(Houshold management)초기 농업사회에 서의 가내생산 형식과 동일 시하는데 대해 Meillassoux 는 곡물경작이 발전하 기 이전에 발전한 식재농업 (Planting agriculture)사 회에서 이러한 형식의 초기 형태를 찾는다. 농업생산 과정에서 지연되는 수확은 에너지의 주기적, 반복적 그리고 계속적인 투입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생산과 정의 특수성은 사람들을 상 당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같이 있게한다. 결과적으 로 사냥-체집 사회에 대비 해서 초기 농업사회에서는 안정된 사회조직이 사회재 생산의 독립된 단위로서 가 계(Houshold)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비록 사회응접력의 원형 측 임의결속과 결연결속이 주 로 각각 사냥—채집 경제사 회와 초기 농업사회에서 찾 아졌지만 이들은 특정한 시 기의 특정한 사회에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 회에 작용하는 사회결속의 상보적인 두 면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응집력의 원 형이하는 관점에서 이혜했 을때 임의결속은 고려대상 이 되는 사회조직의 수준에 서 그 조직의 목적밖에 있 는 이와 동등한 타 조직에 대해 보상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 기본적 사회관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의 기 본적 단위집단들 간의 관계 는 영속적이 아니고 가역적 이며 자발적이다. 결연결 속의 측면에서는 사회의 기 본 단위집단들 간의 관계는 이 단위들 간에 보상적 기 준에 의해 정의된 기준에 의해 정의된 기준에 따라 좌우된다.

Claude Meillassoux, Maidens, Meals and Money,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81(c/1975) part 1. Chap. 1. Marshall Sahlins, Stone Age Economics, Tavistock Publication, London, 1981(c/1972), Chaps. 1~3. 褂圣.

공간적 특성은 전자가 한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의 공간적 근거를 이룬다는 것이고 후자는 계속적인 공간상의 이동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생산양식과 깊이 관계된 것이다. 전자에서는 사회 결속력의 원천이 지속적인 동일공간의 점유를 매개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에서는 구성원의 분담된 기능의 조합이 하나의 공동사회 구성원이게 하는 것이다. 어떤 생활공동체이든 결연결속과 임의결속이 어떤 형태로든 복합. 중첩되어 사회관계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의 전통사회는 결연결속이 지배적인 사회이고 오늘의 도시산업 사회는 임의 결속이 사회관계의 주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혈연과 지연관계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회관계의 폐쇄적 긴밀성이 공고했고 대를 물려가며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오늘의 도시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이동 뿐아니라 삶의 공간적 이동성도 매우 강해졌다. 생산자체가 농업처럼 한 지역의 땅에 얽매여서 오랫동안 한 생활집단이 동일한 장소에 같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게 되었다. 생산지와 주거지는 완전히 분리되고 동일한 장소에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생기는 지연에 의한 사회적관계는 회석되었다. 혈연관계도 여러 이익사회집단의 사회관계가 중첩되고 강화되는 상태에서 그 중요도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혈연관계나 지연관계는 도시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유리하게 하기위해 유지되는 경우는 많아졌지만 여들이 생활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생활내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전통사회에서 중요시되던 결연결속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생활상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확대가족 내지 친지들간의 공동행사는 최소화되고 동네 사람들간에 생활은 나누는 기회도 축소되어 이들 결연속의 의미는 도시산업사회에서 우세하게 중첩 강화되는 여러 임의결속에 종속적으로 되었다. 단위 핵가족만이 혈연관계를 사회관계에 존속시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회관계를 가지개는 되어도 이웃 사람들을 한테 묶은 공동체적 집합으로서의 이웃과 그 속에 포함된 나 라는 관계로서의 사회관계는 오늘의 각 생활집단 구성원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직업상의 일이나 종교적인 모임, 학교에 다니는 일, 교우를 위한 각종 모임 등 삶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함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회관계가 사람들의 생활내용에 큰 버중을 차지한다. 오늘의 도시산업 사회에서의 사회관계는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개인간에 대상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상 생활집단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한시적인 것이다.

전통사회의 사회적 결집력은 결연속에 기반을 두는 반면 오늘의 도시산업사회는 다양한 임외결속이 중첩되는 사회결속의 특징을 가지며 이 임외결속을 결연속의 속성처럼 영구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수 있다.

강남현상의 와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표준적인 사람 '갂'과 그외 가정의 생활사를 상정해 보자. 그의 생활의 대부분은 직장 또는 직업과 관계된 여러가지 모임과 행사에 할애된다. 그 이외의 여가시간은 동호인이나 친구들의 모임 또는 가족단위의 나들이 등이 차지한다. 부모나 형제, 친척과의 만남은 연례적인 명절이나 집안의 결휴사시에 이루어진다. 동에사는 이웃들과의 만남은 출근시간에 마주치는 몇몇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집인 경우가 소수를 차지하고 대부분은 공공의 또는 상업적인 장소가 대종을 이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 결연결속의 사회관계보다는 서로 압도적인 비중을 갖지않는 다기한 임의결속이 중첩된 속에서 이루어진다. 임의결속에 의한 공동체적 생활공간은 항상 대체가 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전통사회의 결연결속을 상징한던 행사들중 제사를 빼놓고는 결혼, 장례, 생일잔치 등이 벌어지는 장소도 편리성과 경제성에 따라 가지중립적인 대처가 가능한 일회적인 장소로 치환되고 있다. 집은 단위 핵가족의 잠자리이며 휴식의 공간이지만 사정이 허락하는한 학군사정이나 투자효과에 따라 미련없이 옮길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활거점에 불과하다. 단위가족 뿐만아니라 확대가족 및 동네의 구성원들의 생활내용이 펼쳐지는 공간적 위상은 집보다는 대체가 가능한 일회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이느 곳이다.

강남현상이 일반화된 도시산업사회의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일원인 도시인 '갑'의 생활사는 그 세부에 있어 많은 사람의 생활내용과 동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갑'의 생활내용이 새로운 생활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대표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활이 그의 생활과 유사하다는 통계적인 동질성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형의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잠재적 가치지향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는 농촌대로 많은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고 마을내에 잔존하는 구성원의 상당수가 인근지역의 산업체 또는 도시적인 취업기회에 편입되고 있다. 이 곳이 우리의 전통사회적 유제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통적 생활 공동체의 붕괴가 가장 절실히 체험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공동체적 생활의 기반이었던 결연결속은 약화되고

도시산업사회의 가치기준이 떠받치는 임의결속이. 공동체적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동인구가 주된 구성원인 소위 달동네와 그외의 도시 불량주거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내용은 강남현상에서 묘사되는 표준적인 도시산업사회의 그것과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다. 1) 소위 달동네에서는 전통사회에서 유지되던 결연결속의 모습이 잔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주민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도시산업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농인구가 도시생활에 적응하기위해 모여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과거 생활습성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이해이머 강남현상이 일고있는 세력권의 주변부에 속한 이들 구성원들은 전통적 생활공동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생활공동체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유형에 적응하는 노력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생활조건에서 아직 그들이 임의결속에 의한 사회망으로 새로운 도시생활에 편입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임의결속을 결연속의 속성을 가지는 형태로 공동체적 생화속에 유지한다. 종촌지역에서는 전통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속에 해체되어가는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잔영을 볼 수 있다면 달동네에서는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삶이 새로운 생활공동체적 삶으로 변환하는 적응의 생태를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를 기준하면 결연속이 지배적인 전통적 생활공동체에서는 동일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지역의 생활공간을 점유하여 삶으로써 생활공간의 권역과 구성원의 사회적 범주가 대응하는 관계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임의결속이 우세하게 중첩되어 이루어지는 오늘의 도시산업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지역으로 인지되는 생활공간 구역에 복수의 사회적 범주예 속하는 구성원들이 혼재한다. 주거지역은 이미 전통사회에서처럼 그들의 생활공동체의 공간적 위상이 아니며 단지 구서원 각자에 결부된 임의 결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첩된 여러 유형의 생활공동체에 귀속하는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한 영역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생활공간과 구성원들간의 사회적 관계는 아무 대응하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생활공간과 사회적 범주는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물적으로 이해를 구한다면은 그들은 무슨 고을 무슨 마을의 아무개 성씨를 가진사람이 아니라 ××건설회사 ××차 ××평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중의 하나로 분류가 가능할 뿐이다.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지 아니면 밀접 단독주거 지역이나 소위 달동네에 사는가에 따라

- 4) 소위 달동네에서는 도시나 농촌의 여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취업구조, 사고방 식과 사회관계가 그 곳 사 람들의 생활을 지탱해 주고 있다.
- 김형국(편), 불량촌과 재개 발, 도서출판 나남, 서울, 1989.

5) 개별성(paryticular)이라 는 것은 가능한 경험의 시 공적 흐름속에서 개별적인 통일된 공간적 영역에 의해 식별되어 다른 것과 구분되 는 것을 말한다. 공간적 통 함에 의해 대상물들이 통일 될 때 개별적인 실체가 인 식되고 이름지어질 수 있 다. 시공적인 자리메김에 관계없이 대상물들이 하나 의 통합체로 구성될때 법공 간적인(transpatial) 통합 이 이루어지며 이에 일반개 념(universal term)이 결 과한다. 범공간적인 관계 라는 것은 요소와 그 관계 의 준거기준이 그 체계안에 있지않고 공간을 건너뛰어 이와 비교되는 다른 체계에 있을 때의 관계를 말하며 이 범공간적 관계는 인식되 어지는 대상의 체계와 이의 공간적 관계에 범주(catergory)의 도입을 의미한다. 만약에 개체들의 무작위적 집합이 있어서 이것이 공간 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개체의 집합 X, Y로 나누 어지고 이 개체들이 두개의 구분되는 A, B는 범주안 에 속한다 하면 2개의 공간 적 모음 X, Y 가 모두 서로 구분되는 A또는 B중 하 나에 속하는 범주의 개체를 🖡

거시적인 사회계층으로 분류되는 한에서만 동일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생활공간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범주의 분류는 우리가 앞서 정의한 공동사회는 개념의 생활공동체적 범주에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강남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도시산업사회에서는 결연결속이 복수의 임의결속에 종속되는 생활공동체가 공동사회의 실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남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의 공동사회는 지속적으로 공동점유되는 공동주거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채집 경제사회에서처럼 임의결속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한 한시적인 공간의 점유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오늘의 사회에서는 공동사회가 공간을 매개로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함에는 그리 큰 비중이 두어지지 않으며 공간적 배개는 일시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임의결속에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매겨지는 그 사람의 기능적 범주가 공동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좌우하게 된다. 공간적인 매개가 한시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는 임의결속의 공동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생활공간이 그들 공동사회의 정해진 위치가 아니다. 구성원의 기능적 범주의 유기적인 결합이 고정된 공간적 좌표와 시간적인 구속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아닌한 오늘의 공동사회는 열려진 추상적 실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결속에 의한 공동사회에서의 생활공동체적 속성은 영구적인 유청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공간적인 필연성을 동반하지도 않는다. 오늘의 공동사회는 구성원의 공간적 포치와 그들의 생활공동체에서의 사회적 범주가 고정적으로 일치 대응하지 않는 범공간적 속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51

소위 '강남현상'이 만연하는 오늘 사회에서의 생활공동체의 존재는 임의결속에 따라 변화는 무정형의 속성을 가지며 임외결속의 목적 달성의 시한을 넘지않는 한시적인 성격을 띄우며 일회적 일 수도 있다. 새로운 임의적 결속이 얼마던지 가능하며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닌한 이 결속이 낳을 생활공동체의 내용은 앞으로 열려있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임의결속에 따라 짜여지는 생활공동체의 공간적 위상은 따라서 무정형하고 개방적이며 시간적으로 한시적이라 할 수 있고 장소적으로 한 곳에 매여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대치가 |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립성을 띄우며 범 공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도시산업사회에서의 생활공동체를 임의적 공동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현상은 우리 사회에서의 생활공동체적 삶의 형식이 임의적 공동사회의 속성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임의적 공동사회와 생활공간

우리는 앞서의 논의를 통해서 오늘의 도시산업사회에서 모듬살이의 생활공동체적 속성을 임의적 공동사회를 이룬다고 보았다. 임의적 공동사회의 생활공간은 전통사회의 생활공간과는 배우 다른 사회적 의미와 기능적 요구를 담게되며 그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용 오늘사회의 생활공동체적 속성을 간과한 체 건축을 이해하고 논의하며 건축행위를 계속하는 관성에 매여있다. 이것이 오늘의 건축 이데올로기의 혼돈을 유발하고 있는 주 원인이 하나라고 보여진다. 오늘을 살고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직시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는한 그 관성은 사라자지 않을 것이다.

오늘을 살고있는 사람들의 삶과 생활공간을 건축인들이 정확히 읽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삶과 생활공간의 물성에만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활공간의 물성을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데서 연유한다. 생활공간의 물리적 구성체는 사람들의 생활내용을 한정하기도 하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구속적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적응력과 창의력은 생활공간의 물성을 삶속에 흡수한다. 물리적 구성체는 삶에 종속적이며 삶의 전체성에 대한 일부분이며 일시적이다. 지속적인 것은 물리적 구성체가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인 것이다.

건축은 그것을 구성하는 물성만큼 사람들의 삶에 관계된 과정으로 보아져야한다. 삶의 과정속에 구현되는 생활공간의 물성은 생활공동체 구성원간의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한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을 과정으로 보는 것과 건축행위의 출발을 문화적 동의에 근거한다는 것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개념이다. 문화적 동외에 기반을 두지 않는 한 과정으로서의 건축행위가 실현될 수 없으며 과정으로서의 건축을 전제하지 않는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 문화적 동의는 찾아질 수 없다. 문화적 동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편숭하는 소수 엘리트의 선도에 의해서 구해지거나 일시적 이해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 성원들의 합목적 담합에 의해서 생기지도 않는다. 생활공동체 성원간에 교감하는 가치의식의 공감대 형성과 그들의 문화의 뿌리 즉 시간적으로 연속되어오고 지속되어지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공감없이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삶의 실현은 복수의 사람들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문화적 동의는 생활공동체 성원간의 합의이며 이들의 공동체적 삶의 과정의 일부로서 생활공간의 물적 구성체는 실현되는 것이다. 오늘 도시산업사회에서의 공통체적 속성은 사회성원간에 중첩된 임외적 사회결속의 그들을 통합된 하나의 사회성원이게 하며 그들의 생활 공간의 체계는 범공간적인 속성에 따라 구성되어진다. 오늘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특징지우는 입의적 공동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서처럼 공간이 구성원의 공동체적 결속을 위한 결정적 매개체가 아니다. 공간의 공동적 점유는 오늘사회에서 생활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 수단에 머문다. 임의적 공동사회의 공동체적 결속관계가 영구적이 아니고 공간적인 필연성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건축의 과정이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보지않는한 생활공간의 실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인의 건축행위는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물적 구성체를 생산하는데 두기보다는 생활공동체의 성원들이 실현하게 될 가능상태로서의 실체를 목표로 해야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물성이라는 허깨비에 가려서는 과정으로서의 건축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건축행위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오늘사회와 전통사회의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임의적 공동사회의 생활공간의 실채는 전문 건축인의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공동체 구성원이 실현하게 될 삶속에 배태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생활공동체의 생활내용과 생활방식은 항상 변하고 있다. 오늘의 생활공동체는 이미 어제의 생활공동체가 아니다. 전통사회에 대한 이해는 오늘의 도시산업사회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이미 사라져간 전통사회의 생활공동체라는 허상에서 건축행위의 준거를 찾는다면 오히려 오늘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막을 수도 있다. 오늘의 우리 전문 건축인들이 혼돈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건축환경이 전통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모호한 발상에 있다. 오늘의 건축환경이 우리 전통사회의 건축환경과는 아무 연관성을 가지지 않은채 서구문화의 껍떼기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밖에 드러나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간과되지 말아야 함 것은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 전통사회의 그것으로부터 오늘의 도시산업사회의 그것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오늘의 우리 건축환경이 병리현상을 보이고 있다면 그 원인은 전통의 단절과 서구 문화의 표피적 수용에 있다기보다는 전통사회에서는 그들의 삶에 연결된 생활공간에 대한 파라다임(문화적 동의)이 있었는데 반해 오늘 우리* 사회에는 오늘의 공동체적 삶의 내용과 상응하는 생활공간의 전형에 대한 문화적 동의(파라디임)가 없다는 데 있다.

생활공동체의 생활내용과 생활방식은 항상 변하고 있다. 오늘의 생활공동체는 이미 어제의 생활공동체가 아니다. 전통사회에 대한 이해는 오늘의 도시산업사회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듣는다. 그러나 이미 사라져간 진통사회의 생활공동체라는 허상에서 건축됐위의 준거를 찾는다면 오히려 오늘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막을 수도 있다.

오늘의 건축인들이 그들의 건축행위를 위해 가정하고 있는 공동체적 삶의 양식은 오늘 도시산업사회의 실상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 속에 지워지지않는 전통사회의 삶의 막연한 연상이기가 쉽상이다. 문제시 되어야 할 것은 서구문화의 모방으로 질타되고 있는 생활공간의 껍떼기가 아니고 건축행위의 근본이 되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가정인 것이다. 생활공간의 물성을 전통사회의 전형으로 돌리자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에서 다시 살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옛날이 그림고 앞날이 불확실해도 새로운 도시산업사회의 공동체적 삶에 조응하는 새로운 생활공간의 전형을 찾는 것이 우리한테 어울리는 집에 살게되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집에 산다는 것은 남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조상들이 살던 집에 사는 것과는 다르다. 남들도 넓혀진 우리에 포함될 수 있고 조상도 이미 사라진 우리의 전신으로 차원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라는 실체가 개체화 될 때 우리도 있고 남도 있고 조상도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식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생활공동제의 문화적 동의에 좌우된다. 문화적 동의가 지향하는 바는 어떠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같이 집에 있는 듯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은 임의적 공동사회의 속성을 가진다할 때 우리가 집에 있는 듯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임의적 공동사회의 실상과 공간의 의미에 대용하는 생활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오늘의 생활공동체는 어떤 것이며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은 어떠하여야 하겠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동사회를 위한 생활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는 전문건축인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

로만 구성되는 경우와 A B의 두 범주가 섞인 개체 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전자는 공간적 관 계와 범공간적 관계가 대용 일치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공간적 관계와 범공 간적 관계가 비대용 불일치 하는 경우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 만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도 예를 돌면 지연과 혈연이 일치하는 동족부탁이 있었 고 이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성부락이 있었다. 사회 적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보 자면 결연결속이 지배적인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생 활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공 간적 및 범공간적 관계가 대용 일치하는데 가깝다 할 수 있다. 오늘의 임의결속 이 주도하는 도시산업사회 에서는 생활공동체 성원들 의 공간적 및 범공간적 관 계가 비대용 불일치하는 경 향을 보인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ill Hillier Julienne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 press, Combridge, 1984, pp. 1~25 참조.

1990년 3 월분 도서신고 현황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89년도	1990년도	중 • 감	비율(%)
	서울지부	2,058,500	3,082,641	1,024,141	49.75%
	대구지부	237, 618	585, 790	348, 172	146.53%
	인천지부	548, 143	980, 422	432,279	78. 86%
증가지역	광주지부	373, 261	483, 459	110,198	29.52%
	대전지부	105, 604	304,778	199,174	188.60%
	경기지부	1,153,555	2,566,012	1,412,457	122.44%
	강원지부	327, 387	551,272	223,885	68.39%
	충북지부	239, 065	464,724	225,659	94.39%
	충남지부	291,365	458, 527	167,162	57.37%
	전북지부	181, 326	472,061	290,735	160.34%
	전남지부	202, 447	645, 483	443,036	218.84%
	경북지부	697,001	706, 207	9,206	1,32%
	경남지부	725,360	1, 163, 114	437,754	60.35%
	제주지부	59,677	88,803	29, 126	48.81%
감소지역	부산자부	1, 545, 735	1,105,994	(439, 741)	-28. 45%
합	계	8,746,044	13,659,287	4,913,243	56.18%

종	함	평	7	ŀ

0 D O · I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3월분 8백74만6천44㎡보다 56.
	18%(4백91만3천2백43㎡)증가 한 1천3
	백65만9천2백87㎡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3월분 누계한 2천34만2천9
	백48㎡보다 44.46%증가(9백4만3천8백
	60m²)한 2천9백38만8백8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지난 2월분 9백70만5백71㎡보다 40.
	81%증가(3백95만8천7백16㎡)한 1천3
	백65만9천2백87㎡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m²)

(ME TE TE TE TE TE				
종 별	'89년 2월분	'89년 3월분	증 ㆍ 감	비율(%)
단 독 주 택	1,592,360	2,445,127	852,767	53, 55%
다세대주택	441, 381	765,864	324, 483	73.52%
연립주택	99, 698	229,551	129, 853	130, 25%
아 파 트	2,959,229	3,729,446	770, 217	26.03%
근린생활시설	2, 375, 322	3, 199, 581	824, 259	34.70%
종 교 시 설	62, 285	95,749	33, 464	53.73%
의 료 시 설	36,145	35,124	(1,021)	-2.82%
교육연구시설	140, 409	314,857	174, 448	124,24%
업 무 시 설	404,736	803,695	398, 959	98.57%
숙 박 시 설	300, 367	381,427	81,060	26,99%
공 장	876, 041	1,165,362	286, 321	32.57%
기 타	378, 957	493,504	114,547	30.23%
계	9,669,930	13,659,287	3, 989, 357	41,26%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3月分)

군		 신축 • 개축	· 재축		증 축		대수	선 및 용	E변경		합 계	
지부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똥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7,550	7,647	2, 962, 277	183	190	120,364	. 0	0	0	7,733	7,837	3,082,641
<u></u> 부산지부	1,470	1,720	968,887	325	347	95,936	72	80	41, 171	1,867	2,147	1, 105, 994
대구지부	1,367	1,409	507, 217	348	363	68, 166	40	40	10,407	1,755	1,812	585, 790
인천지부	1,105	1,298	940,149	77	128	24,885	32	43	15, 388	1,214	1,469	980, 422
광주지부	532	610	437,952	228	245	36,743	14	14	8, 764	774	869	483, 459
대전지부	844	860	259,742	96	96	26,104	94	94	18,932	1,034	1,050	304,778
경기지부	4,751	5,063	2,407,614	350	380	98,606	97	97	59, 792	5,198	5,540	2,566,012
강원지부	685	746	468,555	186	207	78,415	15	15	4, 302	886	968	551,272
충북지부	952	1,056	309,805	145	154	142,112	40	40	12,807	1,137	1,250	464,724
충남지부	719	750	376,834	150	150	74,750	21	21	6,943	890	921	458,527
전북지부	547	624	436,900	131	140	30,561	28	28	4,600	706	792	645, 483
전남지부	712	847	564,287	196	221	76, 954	14	14	4, 242	922	1,082	472,061
경북지부	1,090	1,233	531,477	365	398	142,921	35	35	31,809	1,490	1,666	706, 207
경남지부	1,769	1,968	1,017,432	513	553	116,884	49	49	28,798	2,331	2,570	1, 163, 114
제주지부	271	297	76,652	61	63	12, 151	0	0	0	332	360	88,803
합계	24,364	26,128	12,265,780	3,354	3,635	1,145,552	551	570	247, 955	28,269	30, 333	13,659,287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3月 合計分)

구분		신축•개축	· 재축		중 축		대수	-선 및 용5	도변경 -		합 계	
지부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15,642	15,843	6,306,855	300	314	178,019	0	0	0	15,942	16,157	6, 484, 874
부산지부	3, 101	3,832	3,040,381	614	680	163, 779	168	178	145,965	3,883	4,690	3,350,125
대구지부	2,610	2,724	1,129,974	756	801	135, 382	93	93	27, 173	3, 459	3,618	1,292,529
인천지부	2,088	2,428	1,596,766	140	205	55, 587	74	89	27,695	2,302	2,722	1,680,048
광주지부	1,066	1,231	984, 836	363	393	58, 950	47	47	18,879	1,476	1,671	1,062,665
대전지부	1,432	1,448	605, 128	144	144	36, 811	183	183	49,632	1,759	1,775	691,571
경기지부	9,880	10,532	5,085,619	670	749	307, 598	239	239	190,088	10,789	11,520	5,583,305
강원지부	1,219	1,444	1,013,657	296	346	108, 134	49	53	12,713	1,564	1,843	1,134,504
충북지부	1,176	1,983	635, 973	267	310	210, 318	86	91	27,311	2,129	2,384	873,602
충남지부	1,243	1,297	781,102	257	263	107, 284	61	61	16,173	1,561	1,621	904,559
전북지부	1,042	1,176	704, 714	252	285	82, 420	75	75	14,048	1,369	1,536	801,182
전남지부	1,344	1,595	925, 898	440	517	150,863	42	42	15,061	1,826	2,154	1,091,822
경북자부	2,121	2,462	1,116,363	570	631	262, 598	79	79	81,106	2,770	3,172	1,460,067
경남지부	3, 457	3,954	2, 385, 981	963	1,065	271,606	111	111	104, 162	4,531	5,130	2,761,749
제주지부	601	677	199, 737	102	104	14, 469	0	0	0	703	781	214,206
합 계	48,622	52,626	26,512,984	6,134	6,807	2,143,818	1,307	1,341	730,006	56,063	60,774	29, 386, 808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3月分)

구분	·····	신축ㆍ개축	·재축		충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용도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13, 265	13,386	2,309,577	1,644	1,675	129,897	63	63	5,653	14,972	15,124	2, 445, 127
다세대주택	2,747	2,878	749, 322	204	206	15,769	6	6	773	2,957	3,090	765, 864
연립주택	112	195	229, 329	1	2	222	1	1	0	114	198	229,551
아 파 트	230	908	3,624,191	14	16	95, 448	2	2	9,807	246	926	3,729,446
근린생활시설	6,236	6,361	2,973,533	655	671	133, 254	277	281	92,794	7, 168	7,313	3, 199, 581
종 교 시 설	102	115	67, 863	68	75	27, 497	5	5	389	175	195	95,749
의 료 시 설	10	10	24, 932	8	10	6, 234	5	5	3,958	23	25	35, 124
교육연구시설	44	69	149, 224	55	76	154, 295	36	41	11,338	135	186	314,857
업 무 시 설	217	225	712, 997	63	67	83, 882	8	8	6,816	2B8	300	803,695
숙 박 시 설	130	143	334, 579	31	33	1 4 , 584	19	19	32, 264	180	195	381,427
공 장	562	941	754,052	274	397	350, 225	57	61	61,085	893	1,399	1,165,362
기 타	709	897	336, 181	337	407	134,245	72	78	23, 078	1,118	1,382	493,504
합 계	24,364	26, 128	12, 265, 780	3, 354	3,635	1,145,552	551	570	247, 955	28, 269	30,333	13, 659, 28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3月 合計分)

구분		신축ㆍ개축	• 재축		증 축		대수	-선 및 용 <u></u>	E변경		합 계	
용도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똥 수	연면적	건 수	동·수	연면적	건 수	통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5,683	25, 997	4,534,600	2,697	2,749	206, 785	105	105	7,979	28,485	28,851	4, 749, 364
다세대주택	5,243	5,511	1,408,008	355	357	28, 053	13	13	1,267	5,611	5,881	1,437,328
연립주택	225	368	406,554	4	5	1,614	2	. 2	154	231	375	408, 322
아 파 트	565	2,130	8,541,613	37	51	126,719	7	7	12, 256	609	2,188	8,680,588
근린생활시설	12,984	13,227	6,341,732	1,293	1,325	280, 822	652	659	222, 133	14,929	15,211	6,844,687
종 교 시 설	233	267	157,266	124	145	52,016	13	13	1,529	370	425	210,811
의 료 시 설	24	28	53, 193	18	21	21,313	11	11	10,137	53	60	84,643
교육연구시설	93	147	265, 118	112	146	226, 336	92	98	34, 891	297	391	526, 345
업 무 시 설	464	478	1,435,310	123	128	117,599	27	27	16,643	614	633	1,569,552
숙 박 시 설	309	341	662, 695	70	72	26, 125	36	36	131,759	415	449	820, 579
공 장	1,262	2,125	1,824,633	650	1,009	776, 345	153	164	222, 554	2,065	3, 298	2,823,532
기 타	1,537	2,007	882, 262	651	799	280, 091	196	206	68, 704	2,384	3,012	1, 231, 057
합 계	48,622	52,626	26, 512, 984	6, 134	6,807	2,143,818	1,307	1,341	730,006	56,063	60,774	29, 386, 808

주차장법중 개정법률

1990. 4. 7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도시의 주차난이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이용 하는 路外주차장의 설치를 간편하게 하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도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설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하는 등 관련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종전에는 건축물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에 골프연습장등과 같이 주차수요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소규모 공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정비지구내에 주차 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기준 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일정규모(40대)이상의 노외주 차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외주차장 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 간의 주차장설치를 촉진함.

4 부설주차장을 점포나 오락실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장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 의 장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함.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 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및 도시계 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 로를 말한다.

제3조중 "도심상업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 안 의"를 "상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서"로, "구역"을 "지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 2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장정비계획)①건설부장관은 주차 장정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 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 획"이라 한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 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차장정비계획은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路外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이하 "路外주차장설치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路外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차장정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토지이용 현황
- 2.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황
- 3. 주차실태

④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 2. 주차장의 개략적 위치
- 3. 路外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의

배분

4. 투자계획

⑤路外주차장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 2. 노외주차장의 형태(건축물 또는 공작물 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주차방 식)
- 3. 노외주차장의 유치권 및 주차용량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 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신청
- 2 주차장정비계획의 입안
- 3.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①노상주 차장은 시장·군수가 이를 설치한다. 이 경 [

우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시장·군수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차장 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주차로 인하여 대충교통수 단의 운행장에 가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 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단서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 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노외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정비계획이 결정되 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와 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된 계획서가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주차장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는 일 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나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주택지개발사업・산업기지개발사업・도시 재개발사업 기타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하는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 및 제5항중 "제3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 공하기 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제19조 내지 제19조의4)을 다음과 같 이 한다.

제5장 부설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 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 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 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 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 용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 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소 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노외주차장사용권을 승계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와2(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①시장·군수는 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로 인하여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외에따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설치하게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장소·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받아야 한다.

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 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일반의 이 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2조제5항·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 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채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상회 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 행범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 물로 보아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로・광장・공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사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확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확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도시공원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제3항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중 "제19조제4항"을 "제 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영업정지등) ①시장·군수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이 제6조제1 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2. 제15조제2항(제19조의3 제3항에서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아·정하는 바에의하여 미리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가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①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의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증 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증 "제12조제2항단서"를 "제12조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 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제5항(제19조의3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3. 제15조제2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제3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 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제18조제1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식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7월1일부터 시행 한다.

②(路外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 올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택지소유실태의 신고에 관한 안내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 연말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금년 3월 2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질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택지는 처분하거나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도가 실시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동 6대도시내에서 가구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200평이 넘게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택지를 소유한 법인으로 하여금 택지소유현황을 사, 군, 구에 새로 설치된 토지관리과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확대도입되었음을 감안하여 이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고대상이 되는 택지를 소유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고기간내에 택지소유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 권영각

新入會員



趙炯溶(50年) 서울산업대 건축 준원건축 서울 서초 양제 6-34 577-7991



金後珍(47年) 조선대 건축공 한진·반선·대호(종합) 광주 동구 금남 5 99-8 22-5111



李中源(54年) 서울산업대 건축 주・공간(종합) 서울 종로 원서 219 763-0771



金東煥(56年) 철도고 건축 동남건축 충남 천안 문화 136-4 565-6238



安熙相(52年) 전남대 건축공 주·천일(종합) 서울 강남 논현 91 - 20 546 - 1001



崔珖植(55年) 울산공대 건축 성우건축 울산 남구 신청 700-3 69-3891



徐鍾律(54年) 경주공고 건축 주·영남(종합) 경북 경주 동천 771-4 3-3638



宋柱奉(49年) 영남대 건축공 성림·송건축 서울 마포 성산 56-1 338-7121



金泰祚(49年) 경주공고 건축 우라건축 경주 노동18 42-8800



李延旭(56年) 삼칙공전 건축 새움건축 강원 동례 천곡 855 33-7472



金承峰(57年) 계명대 건축공 남중건축 경남 울산 반구 57-15 92-5130



金東珍(55年) 영남전문대 건축 세종건축 대구 복구 고성 38-10 352-4422



權五永(50年) 인하대 건축공 다원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606-3 563-8082



金龍駿(55年) 계명대 건축공 우석건축 경북 포항 죽도2 52-3 81-2330



崔源英(31年) 영남대 건축공 삼영건축 대구 중구 대봉 25-7 423-9178



郭京瑞 경기전문대 건축 영・우진(종합) 인천 남구 주안4 1543 423-4700



金仁洙(45年) 한양대 건축공 그룹조형(종합) 서울 강남 도곡 551 - 19 561 - 1811



金康洙(60年) 전북대 건축공 연우건축 전남 동광양 중마 22-3 761-2205



李相永(52年) 경북산업대 건축 마천건축 대구 동구 효목2 497-1 753-0001



孫信圓(56年) 홍익대 건축공 한국조형(종합) 서울 강남 논현 272~31 546~7902



徐恒玖(55年) 청주대 건축공 공간건축 충북 청주 봉명 1052 67-5949



金秀吉(55年) 국립대전공업대 건축 화인건축 대전 서구 갈마 363-6 527-5537



朴泰成(57年) 서울대 건축공 세보건축 서울 영등포 여의도 43 782-7338

89

N 신입회원 ewly Admitted Member



姜佶求(55年) 유한공고 건축 명성건축 경기 수원 권선 인계 102-3 39-1130



林根培(57年) 연세대 건축공 (주)동우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13-5 783-4011



金珠錫(54年) 울산공대 건축 (주)일신건축 서울 종로 동승 1-5 741-5019



黄吉顯(50年) 한양대 건축공 나라건축 경기 부천 중구 원미 92-1 612-1534



權奇卓(54年) 국민대 건축학 범진·두손(종합) 서울 송파 신천 11-9 417-9430



尹張燮(25年) 서울대 건축공 주·동우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13-5 783-4011



張明仁(58年) 서울시립대 건축공 장인(총합) 서울 마포 성산 239-2 333-8677



池承俊(57年) 서울대 건축공 (주)서울-종합 서울 영등포 여외도 35-4 783-7563



李貞宗(39年) 전남대 건축공 예일건축 전남 여천 학 11-9 9-6101



金龍根(58年) 서울시립대 건축공 장인(종합) 서울 마포 성산 239-2 333-8677



李東昊(54年) 제주전문대 건축 이동호건축 제주 이도2 1176-30 22-4393



金寬錫(55年) 서울대 건축용 기산건축 서울 중구 장충 2-21 275-7144



愼銘善(58年) 경남전문대 건축 장인(종합) 서울 마포 성산 239-2 333-8677



姜明雄(57年) 고려대 건축공 주영건축 경기 부천 중구 원미 111-2 665-4429



韓道成(59年) 경기대 건축공 세진건축 서울 강남 삼성 8-1 545-1097



鄭美玉(62年) 충북대 진축공 제·원(종합) 충북 청주 수 355-4 56-4870



李南蓮(59年) 서울대 건축학 오건건축 경기 부천 원미1 91-3 612-6800



柳基桓(52年) 전주공고 건축 류기환건축 대전 중구 대홍 509-7 257-5620



權革周(56年) 동도공고 건축 약성건축 서울 동대문 신설 98-27 922-8811



李鶴洙(49年) 인하대 건축공 (주)동인-종합 서울 강남 역삼 747-19 555-2935



李炳敬(56年) 한양대 건축공 성은건축 서울 구로구 구로 136-83 868-9966



鄭鎭德(54年) 원광대 건축공 성동,대원,성수,유창(종합) 서울 성동 자양 220—149 444—7749



任鶴彬(56年) 철도고 건축 예도건축 서울 마포 망원2 482-3 338-4777



白承天(54年) 수원전문대 건축 백건축 경기 수원 세류 531-2 39-9005



梁榮植(54年) 경남전문대 건축 대륙건축 부산 부산진 부전2 232-24 807-7717



李元善(56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음성건축 충북 음성 읍내 640-1 72-3685



金煥星(54年) 홍익대 건축학 (주)대흥-종합 서울 서초 방배 795-25 534-6322



李受相(57年) 부산동고 건축 이수건축 부산 동래 명륜1 344-1 556-7877



嚴重植(55年) 경북전문대 건축 동아건축 내구 중구 동안2 52-4 424-8098



李龍德(59年) 서해진문대 건축 대우건축 전주 덕진 서노송 560-5 81-0222



金龍南(56年) 인천전문대 건축 (주)부천건축 경기 부천 중구 원미 91-2 62-6969



韓性洙(55年) 전주공고 건축 한성건축 전주 완산 중노송 2497-6 87-9585



朴龍吉(55年) 인천공고 건축 인석건축 인천 남동 만수 947-15 433-0075



金在後(52年) 국민대 건축학 삼성, 황, 신문화(종합) 경남 진주 동성 I3-14 2-7304



郭殿永(60年) 인천전문대 건축 영일건축 인찬 서구 심곡 84-7 511-1198



曹永達(57年) 계명대 건축공 (주)남양-종합 대구 수성 범어 3-19 751-3513



金榮浩(60年) 울산공대 건축 성우, 건우, 거인(종합) 경남 울산 남구 신정 694-7 76-5229



金吉洙(57年) 전국대 전축공 삼평, 비전, 자유그룹(종합) 서울 강남 논현 212-2 540-6754



李在誠(59年) 경북공고 건축 도고건축 대구 중구 삼덕1 63-11 422-5445



裵基業(54年) 울산공고 건축 명신, 정림, 창조(종합) 경남 울산 남구 신정 586-10 68-3333



許棟鈗(59年) 동아내 건축공 상지(종합) 부산 중구 남포5 92 247-0208



文鍾伯(57年) 전남공고 건축 서해건축 전북 군산 신창 45-1 43-1441



金鍾澤(58年) 울산공고 건축 명신, 정림, 창조(종합) 경남 울산 남구 신정 586-10 68-6222



崔允植(58年) 부산대 건축공 상지(종합) 부산 중구 남포5 92 247-0208



許圭容(34年) 서울대 건축공 성실건축 서울 성동 자양 220-1 481-9526



李景雨(53年) 동아대학교 건축공 우성건축 서울 중랑 묵동 122-194 976-1250



全永哲(55年) 서울산업대 건축 우신건축 경기 구리 수택 428 551-6355



李浩萬(52年) 성균관대 건축공 이호건축 서울 서초 방배 2104 591-0625



吳長興(56年) 흥익대 건축공 (주)예청-종합 서울 강남 논현 60-7 542-2137



李喆鎬(55年) 충남대 건축공 (주)청전-종합 대전 대덕 오정 295-2 626-9077



黃時煥(55年) 계명대 건축공 원건축 대구 중구 동문 9~4 425~0019



申 勳(55年) 건국대 건축공 극동건축 서울 서초 방배 922-15 582-6444



朴性澈(57年) 충남대 건축공 씨앤유건축 대전 중구 대흥1 251-5 253-1456

KIRA NEWS

제3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 運營委員會

제3회 지부회장회의 및 건축 사연금운영위원회가 지난 8일 본협회 全南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를 받는 한편,협회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全 南지부(회장 金仁模)가 본부에 서만 개최되었던 회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부를 순회하며 협회 📗

의 현안문제의 협의는 물론 직 부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상 을 소개하며 본부 임원과 지부 회장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유치,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 들은 도지사를 방문하고 연근 산업시설을 시찰하였으며 지부 에서 마련한 기념품 증정도 있 었다.



본협회는 지난 20일 포항 선 프린스호텔에서 임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경남지부 직할분소 설 치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 협의 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은 다 음과 같다.

- ◆경남지부 직할분소 설치 협
- 경남 창원시내에 경남지부 직할분소를 설치할 것을 서면 결의함.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종별적 용 협의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는 건축법령상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산출을 위한 종별적용기준을 세대당 165㎡ 미만을 2종, 165㎡야 상은 3종으로 할 것을 서면결 의합.

- ◆재건축진단위원회 구성 협의 - 기존의 노후, 불량주택의 제 건축진단 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건축진단위 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서면 결의함.
- ◆회원포상에 관한 혐의
- 협회(광주지부)와 건축계 발 선에 공헌한 金泰萬회원의 퇴임(영구폐업) 행사시 회 " 표창을 수여키로 서면결의

감리전문회사협의회 創立總會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대표들이 모

지난 25일 본협회 회외실에서 | 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윤리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회장에 (주)천일종합건축사사무 여 한국건축감리전문회사협의 🕴 소의 한규봉회원을 선출하였다.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인에 대한 건의서 제출

본협회는 90.4.7(대통령령 제4230호)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부섭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 는 주차장법시행령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은 좌석수, 병상수, 객석수등 가변적인 요소를 배제 하고 면적단위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범 위를 축소, 주거용 건축물은 현

행과 같이 하여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 며,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 차장 규모에 관계없이 재개발사 업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 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본협회 건의(안)을 건설부에 제출하였

특별전형시험대비 연수 실시

특별전형대책위원회는 '90년 도 건축사특별전형시험에 대비 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 까지 1주일간 인천시내 건설기 술교육원에서 2급회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회원 59명과 준회원 6명이 참석하여 구조역 학, 계획각론 등 5개과목의 강 외를 수강하였으며 모의시험을 통해 특별전형시험에 만전을 기 하였다.

우루과이리운드 대책회의 참석

지난 30일부터 2일간 해외건 설협회 회의실에서 정부주관으 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대책 회의에 本協會는 우루과이라운 드대책위원회 강기세위원장이 참석하여 설계감리비 요율의 선 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방안(국 제경쟁력에 대비한 부실경영 방 지, 기술축적, 자본축적), 국내 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 사만이 건축허가를 독할수 있도 록 법률상 보호방안, 공동 참여 로써 외국의 설계를 의존할 경 우에는 반도시 국내사무소와 공 동계약을 하도록 관계법 개정방 안 강구, 건축사사무소의 법인 화 유도 및 종합사무소제 폐지 및 건축사 고용제 도입등을 위 한 건축사법 개정방안, 교육과 정의 국제화 및 외국어 교육 강 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光州直轄市支部(會長 宋良淅)-영·호남 친선낚시대회 개최^{....}

光州지부(회장 宋良淅)는 지 난 20일 전북 임실 운암지에서 동서 지역간의 화합과 회원 상 기 위해 영·호남 친선낚시대회 를 개최하였다.

광주, 전북, 경남지부 소속회 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친선 낚시대회에서 1등상은 慶南지 호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 🕴 부와 김성일회원이 차지하였으 🖟 며 '91년도 대회는 경남지부에 나서 주최키로 하였다.

남도학숙 건립기금 전달 -

光州지부 宋良淅회장은 지난 25일 광주시청을 방문하고 가정 사정이 어려워 안정되게 숙식하 며 학업에 정진할 수 없는 광 주 · 전남출신 서울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발 전을 위한 이 지방 인재양성의 요람이될 남도학숙거립기금 1백 만원을 전달하였다.





濟州道支部(會長 李世院) 故 康奇汀 회원 永訣式。

제주도지부 제1,2대 지부장과 제5대 지부장을 역임한바 있는 원로 康奇汀 회원이 지난 4월 9 일 제주시 2도1동 소재 자택에 서 숙환으로(향년 77세) 별세하 여 영결식이 지부주관으로 엄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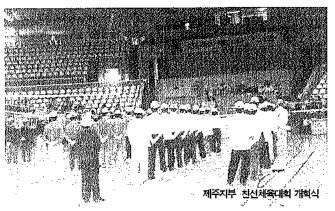
4월 11일 고인의 자택앞에 바 련된 영결식장에서 유가족들의 1 진행되었다.

오열속에 엄수된 영결식은 지부 소속 전회원과 주요 인사등 200 여명이 참석가운데 개최되어 康 堯俊 역대지부장으로 부터 고 인의 약력 소개가 있었고 李世 曉 지부화장의 고별사와 지역인 사의 추도사가 계속되었으며 유 가족 및 일반조객의 분향순으로

친선체육대회 개최

濟州지부(회장 李世院)는 지 규 난 4월 14일 제주종합경기장 한 라 체육관에서 회원 및 보조원 전원과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 고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제주지부 회원 사무소 소재자 를 기준으로 동, 서, 남, 북부 4 개 선수단과 서귀포 등 5개 선 수단으로 편성하여 배구, 족구, 농구공 넣기, 노래자랑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북경심포지엄 참가 안내

금번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건축학회에서는 '스포츠 건축'에 관한 심포지엄을 제11차 북경아시 안게임 장소인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중국건설성, 정부체육위원회 및 북경시의 후원하에 '스포 츠 건축과 공동사회'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제11차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하여 최근 3년동안 건립된 통신시설과 도시개발 뿐만아니라 스포츠 시설물, 숙박시설, 위략시설 등 북경의 새로운 변모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스포츠 시설물의 설계, 건축,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기술 및 그로인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 등이 토론되어질 것이며 연합행사로서 스포츠 건축, 엔지니어링 혁신, 신건축자재 및 컴퓨터 이용에 관한 전시회가 동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본 협회에서는 세계건축가협회(UIA)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가 적극 후원하고 있는 동 심 포지엄에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근도시의 유명건축물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 런하였아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 관: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여행기간 : '90. 11. 4~11. 14(10박 11일)

이방문도시 : 홍콩, 북경, 서안, 항주, 소주, 상해

○참가인원: 15명이상 ○참가자격: 전 회원

○여행경비: 2,210,000원(대회 등록비 별도, 여권인지대 및 소양교육비 별도)

○신 청 금:500,000원(여행경비의 일부금으로 반환치 않음)

○신청마감: '90, 8, 31(본 협회 총무부: 581-5711~4)

일 정 표

구 분	일 자	행 선 지	방문	도시	숙박 호텔
제1일	11. 4	서울 출발-홍콩 도착	홍	콩	메트로폴
	(일)	해양공원, 선상야경등 관광			호 텔
제2일	11. 5	홍콩 출발-북경 도착	북	경	인터콘티
	(원)	호텔 Check in			넨탈호텔
제3일	11. 6	'스포츠 건축'에 관한 심포지엄 참관			
	(화)	고궁, 박물판, 천안문 광장 등 관광			
제4일	11. 7	만리장성, 명13능 등 관광			
	(수)				
제5일	11. 8	천단, 이화원등 관광	북	경	가든호텔
	(목)	북경 출발-서안 도착. 종루	서	안	
		대자온사 등 관광			
제6일	11. 9(급)	화청지, 온천욕, 진시황제능 등 판광	서	안	
제7일	11.10	병마용 박물관 등 관광	서	안	
	(토)	서안 출발-항주 도착	항	주	杭州飯店
		서호 유람, 영은사 등 관광			
제8일	11.11	항주 출발-상해 도착	상	하	華亭支型
	(일)	황포강 유람, 상해항구 관광			
제9일	11.12	상해출발-소주 도착	상	해	
	(월)	굴정원, 한산사 등 관광	소	주	
		상해 귀환	상_	해	
세10일	11.13	상해 박물관, 손중산 주거, 소년관, 용화사,	상	해	
	(화)	예원, 노신기님관 등 관광			
제11일	11.14	상해공업 박물관, 고의원, 임정청사, 독립투	상	하	
	(수)	사묘지 참배	서	윷	
		상해출발—서울 도착			